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FAQ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I. 인도네시아 개황	14
II. 인도네시아 경제지표	15
Part 1. 무역 FAQ	17
[통관]	19
Q1. 기본적인 수입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9
Q2. 중고품 수입이 가능한가요?	20
Q3. 수출 희망 물품이 인도네시아 수입 제한 품목인지	21
알 수 있을까요?	
Q4. 중국에서 제품 제조 후 인도네시아로 직수출 시	21
통관상의 문제가 있나요?	
Q5. 섬유 제품 가공 후 남은 원단을 한국으로 재수출할 경우	21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Q6. 샘플은 인허가가 없이도 통관이 가능한가요?	22
Q7. 통관 지연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22
Q8. 세관에서 통관 중 수입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23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9. 인도네시아로 제품 수출 후 불량으로 반품 받을	23
시 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Q10. 수입 통관 절차를 수입업체가 아닌 수출업체가	23
진행할 수 있나요?	
Q11. 선적 전 검사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24
Q12. 인도네시아에도 수입 쿼터제가 있나요?	25
Q13. 검역 대상 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6
검역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Q14. 보세업체가 아닌 인도네시아 현지 제조 법인에서	28
수출을 위해 원부자재 수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수입제세 및 인허가 면제가 가능할까요?	
Q15. 현지 법인에서 인프라 관련 설비를 수입해 참여	29
중인 인프라 사업에 활용하려 합니다.	

추후 한국으로 반출 예정인 자본재인데 수입세와 인허가 면제가 가능할까요?	
Q16. 전시회에서 사용할 용도로 샘플 몇 개를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운반하려고 하는데 제품의 부피가 커서 핸디캐리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1
Q17. 수입, 유통 관련 인허가가 필요한 제품을 해당 인허가 없이 핸디 캐리하여 들고 올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32
Q18. 보세구역으로 물품이 수입될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33
Q19. 인도네시아로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 절차를 알려주세요.	35
Q20. CBT 란 무엇입니까?	37
[FTA 활용 방법 및 관세율]	38
Q21. 인도네시아 수입 관세율을 조회하고 싶습니다.	38
Q22. 최근 탁송화물에 대한 관세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물품도 해당되나요?	39
Q23. 인도네시아에서 반출하는 제품에 수출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42
Q24. 한-아세안 FTA 활용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42
Q25. FTA 특혜 세율보다 기본 세율이 낮은 경우, 원산지 증명 제출을 안 하면 될까요?	43
Q26. 한-인니 CEPA의 수혜 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43
Q27. 한-인니 CEPA의 타결, 체결, 발효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4
Q28. 원산지 증명 발급 방법 및 제출 시기를 알려주세요. (한-아세안, 한-인니 비교)	45
Q29. 제품의 원산지 표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원산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46
Q30. 관세 환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48
[수출 금융 및 대 바이어 애로사항]	49
Q31. 위탁 판매 수출을 진행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요?	49
Q32. 인도네시아 내륙 공급시 외환 수취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50
Q33. 한국 수출업체가 인도네시아 보세구역 공장으로 수출한 후,	51

- 한국 수출업체와 보세공장이 선 결제를 하고, 인도네시아 내국 바이어가 보세공장으로 대금 납부를 할 수 있나요?
- Q34. 바이어의 수출 대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1
- Q35. 알리바바를 통해 한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거래를 제의합니다. 무역 사기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52
- Q36. 인도네시아 업체와 처음 거래해봅니다. 무역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53
- Q37. 금형수출을 계획 하고 있는 수출업체입니다. 물품대금 수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바이어를 상대로 신용장 개설을 요구할 계획인데 인니에서는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하나요? 54
- Q38. 인도네시아 업체와 무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업체입니다. 대금 수령시, 인도네시아 업체에서 한국 당사로 루피아(IDR) 송금을 진행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55
- Q39. 이번에 신규 거래하는 바이어가 T/T거래 방식을 요구 했는데, 괜찮을까요? 55
- Q40. 무역 사기 업체한테 송금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6

[인증] 57

- Q41. BPOM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정보를 알아야 하나요? 57
- Q42. SNI 인증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63
- Q43. 의료기기 유통허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65
- Q44. 신 할랄 인증 제도(기존 MUI 인증 유효 여부, 발급 절차 등)에 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68
- Q45. TKDN 개념, 적용 대상, 산정 방식, 미준수 시 패널티 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72

[바이어 발굴 및 시장조사] 75

- Q46. 무역관을 통해 현지 사업파트너 물색 및 시장조사가 가능한가요? 75
- Q47. 특정업체에 대한 정보 및 신용도를 알 수 있을까요? 76
- Q48. 특정업체와의 미팅을 주선해 주실 수 있나요? 77
- Q49. 인도네시아 시장 정보를 무료로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79
- Q50. 전문 조사를 원합니다. 컨설팅 업체가 어떤 것에 있는지요? 그리고 법률, 회계, 통관, 인증 등 한국인 전문 컨설팅 상담받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81

Part 2 투자 FAQ	85
---------------------	----

[외국인 투자 제도]	87
--------------------------	----

Q1.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개괄적 제도를 알고 싶습니다.	87
Q2. 인도네시아 외국인 직접투자 진출형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88
Q3. 외국인 직접 투자시 사전에 숙지해야 할 주요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89
Q4. 설립정관에 포함시켜야 하는 필수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90
Q5.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업종은 무엇인가요?	91

[투자절차]	95
---------------------	----

Q6. 현지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95
Q7. 대표 사무소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98
Q8. 건설업 진출을 위한 절차 및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100
Q9. 외국건설 회사의 건설면허 허가 절차,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02
Q10. 신규법인 설립시 초기 투자비용 송금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04

[투자 관련 법규]	105
-------------------------	-----

Q11. 법인 설립 후 자본금 및 최소 투자금액 납입 기한이 있는지요?	105
Q12. 현지 법인 및 대표사무소 설립시 외국인 1명당 현지인 고용 의무비율이 있는지요?	106
Q13. 대표 사무소가 주기적으로 정부에 제출해야하는 활동보고서가 있나요?	106
Q14. 법인 설립 후 부지 매입, 환경영향평가 등 공장건설까지 자세한 허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107
Q15. 법인세 감면 (Tax Holiday)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13
Q16. 제조업 투자시, 제조업과 유통업 2개 업종을 한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6
Q17. 현지법인 명의 혹은 외국인 개인 명의로 부동산 매입이 모두 가능한지요?	116
Q18. 과실을 송금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요?	118
Q19.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현지통화(루피아)로만 거래가 가능	119

한가요?	
Q20. 현지은행 계좌개설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19
Q21. 기존 법인장을 국내에 본사에 있는 직원으로 변경 후 현 지 직원에게 수임대표식으로 권한을 위임 하는 것이 가능 한가요?	120
Q22.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121
[투자 환경]	123
Q23. 특별 경제 구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23
Q24. 산업단지 포함 입지정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24
Q25. 보세공장 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125
Q26. 공업용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	127
Q27. 현지 임금 수준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127
Q28.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주요 한국기업의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129
[노무 관리]	130
Q29. 인도네시아의 기준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30
Q30. 인도네시아에 근로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130
Q31. 고용관계 종결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132
Q32. 근로자의 자진 사직(근로자에 의한 고용종결)에 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33
Q33. 법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에 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35
Q34. 사용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
Q35. 형사 피의자가 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불해야 하나요? ...	138
Q36. 송별금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139
Q37. 현지인을 일용직(아르바이트)으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139
Q38. 사규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139
Q39. 노동조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140
Q40. 노사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142
Q41. 외국인 취업시 인허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43
Q42. 아웃소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143
Q43. 인도네시아 사회보장 보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44
Q44. 현지인 인력 채용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요?	145

[조세제도]	145
Q45. 현지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율 및 신고방법에 대해	145
알려주세요.	
Q46. 법인세 납부에 대해 알려 주세요.	147
Q47.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소프트웨어 솔루션 납품 및	149
설치 용역시 세금 및 조세협약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48. 인도네시아 내의 세금 환급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대해	150
설명해 주세요.	
Q49. 부동산 매입부가세 등 관련 세금 및 납부시 유의사항에	150
대해 궁금합니다.	
Q50. 단순서비스 수출인데 인도네시아 업체가 이중과세방지	151
협정 혜택을 위해 DGT 작성을 요구하는데 타당한지요?	
작성방법은요?	
Q51. 부가세를 환급받는 방법 및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52
Q52.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연간 매출액 상한선은	153
얼마인가요?	
[현지 체류/비자]	153
Q53. 현지 체류시 필요한 비자의 종류, 발급절차, 구비서류,	153
예상비용을 알려주세요.	
Q54. 장기프로젝트로 관련 인원이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155
출장 예정인데 문제가 없는지요?	
[현지업체와의 관계]	156
Q55. 현지 업체와 거래시 업체 기본 정보에 대해 인도네시아	156
정부의 확인이 가능한지요?	
Q56. 계약을 맺은 현지 업체와의 계약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157
Q57. 현지 업체의 계약위반이 발생했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157
하나요?	
[매각 청산 절차]	157
Q58. 인도네시아의 경매, 매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57
Q59. 대표 사무소 폐쇄하는 절차, 비용 및 소요기간 등이	158
궁금합니다.	
Q60. 현지법인 청산절차 및 소요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158

발간사



이종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장

아세안(ASEAN)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거대 시장과 풍부한 자원, 젊은 노동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경기가 둔화된 지난해에도 5%를 상회하는 견조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4천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968년 우리나라의 제1호 해외투자 대상국이었으며, 우리정부의 신남방 정책 등에 힘입어 양국간 협력관계도 2017년 11월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로 격상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K-CEPA)도 신속하게 타결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의 8대 무역 파트너이며, 7대 투자국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수출에서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으며, 대형 첨단 제조업 투자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과 맞물려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KOTRA는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무역·투자 상담 게시판’을 운영하여 우리기업들의 문의사항에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는 2017.1월~2020.7월 동안 관세, 통관, 세금, 인증, 규격, 무역금융, 무역분쟁, 바이어 발굴, 인사, 노무, 투자법규, FTA 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2,625건의 온라인 상담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질의 빈도수가 높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FAQ’를 발간하였습니다.

2020년은 당초 기대와 달리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거의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역과 투자관련 법이나 제도, 절차가 까다롭고, 변경도 잦은 편이어서 이번 자료발간 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FAQ’가 초기 무역 및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뿐 아니라 기진출기업에도 현지동향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예정인 우리기업 모두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성공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축사

「2020년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FAQ」 발간을 축하합니다. 2017년 이 곳 자카르타에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발표된 이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우정은 날로 깊어지고, 양국의 협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국관계의 심화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인들의 활동을 보다 세심히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과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대사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발간한 「2020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FAQ」도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지원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문제 하나도 우리 기업의 시각에서 보고자 노력하면서, 최근 3년간 우리 기업들이 직접 제기한 인도네시아 무역통관, 세제, 투자환경, 노무관리 등 분야별 생생한 질의와 답변을 책자에 담았습니다. 이 책자가 우리 기업들의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활동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혼자 짊어지면 무겁지만 같이 나르면 가벼운 짐”이라는 인도네시아 속담처럼,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상생번영과 아세안 지역의 발전을 향한 힘찬 여정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드리며,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우리 진출기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축사



송창근
KOCHAM 회장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각 나라의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고용불안, 가계수입 감소, 외출 자제 등으로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고, 자국 산업 및 기업 보호를 위해 국가 주도의 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재구성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서의 인도네시아의 위치가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짐으로써,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투자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과거 노동 집약 산업 중심에서 90년대는 철강, 전자, 건설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근래 금융 및 M&A, 유통, 서비스 등 분야로 확산되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사이에는 인프라 투자로 인한 건설업, 제조업 진출도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며,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근간이 되는 기반 사업 분야의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에 타결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으로, 신 남방 FTA 정책이 본격화되어,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요 부품 및 제품 등의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인니 진출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안정한 국제 관계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무역과 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에,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FAQ 포켓북’ 발간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FAQ 포켓북’ 이 모든 한인 기업인들과 인도네시아 진출 및 투자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 책자 발간을 축하하며, 이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Go Global, KOCHAM Together!

축사

코로나 19 팬데믹을 지나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어 우리 일상의 관성이 무너지고 개인의 삶만이 아닌 사회 어디 서도 포스트 코로나의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한 KOTRA 자타르타 무역관의 노고에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무역, 투자 FAQ 포켓북 발간은 급증하는 무역 투자 상의 질의에 글로벌지역전문가가 현장성 담긴 답을 하는 것이니 만큼 FTA 및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원하는 교민기업 등 대 인도네시아 수출 및 투자진출 희망 사업자에게는 갈증을 해소하는 시원한 물줄기와도 같을 것입니다.

이 책이 FTA 활용 정보와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에 기여하여 양국간 경제관계 전반에서 문턱이 낮아진 이 시기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리라 기대합니다.

2200여개의 한인 기업과 3만명의 한인들이 경제적으로 이미 인도네시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는 기업인을 주축으로 형성된 만큼 외국인 커뮤니티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국의 상호 파트너십을 강화시켜 줄 신뢰성 있는 정보들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 현지의 적응과 기업경쟁력의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무역, 투자 FAQ 포켓북 발간에 힘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도 지금까지의 좋은 관계를 새롭게 확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회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

I. 인도네시아 개황

국 명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면 적	190만 km ² (세계 15위, 한반도의 9배), 약 18,000개 섬으로 구성 - 주요 5개 섬 : 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기 후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 다습 - 연평균기온 : 25~28°C(자카르타 : 32~33°C), 습도 : 73~87% - 우기(11~2월), 건기(3~10월)
주요도시	자카르타 (수도, 1,056만 명), 반둥 (251만 명), 수라바야 (290만 명)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2019년 추정치, 2020년 7월 조화)
인 구*	2억 7,063만명 (세계 4위) *IHS Markit, 2020년 5월 기준
언 어	인도네시아어 (Bahasa Indonesia)
종 족	자바족(40.1%), 순다족(15.5%), 아체족, 발리족 등 1300여 부족
종 교	이슬람교(87%), 기독교(7%), 카톨릭(3%), 힌두교(2%), 불교(1%)
건국일	1945년 8월 17일
국가원수	대통령 (조코 위도도) - 제8대 대통령, 2019년 연임 성공으로 2014~2024년 임기
입법부	국민협의회(MPR) 총 의석수 711명 = 국회(DPR) 575명 + 지역대표회의(DPD) 136명
정 당 (여 당)	투쟁민주당(PDI-P, 여당, 128석), 골카르당(Golkar, 85석), 그린드라당(Gerindra, 78석), 나스뎀당(Nasdem, 59석), 국민계몽당(PKB, 58석), 통일개발당(PPP, 19석)
정 당 (야 당)	민주당(Demokrat, 54석), 복지정의당(PKS, 50석), 국민수권당(PAN, 44석) 등
화폐단위	루피아 (Rupiah) ※표기방식 : IDR(공식), Rp(통용)
환율	USD 1 = IDR 14,550 (20.7.24,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평균 환율 기준)

II. 주요경제지표

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	4.88	5.02	5.07	5.17	5.02	2.97* *1분기
	1인당 명목 GDP	US \$	3,366	3,610	3,859	3,894	4,134	N/A
	명목 GDP	US \$억	8,611	9,321	10,109	10,422	11,191	2,705* *1분기
	물가상승률* *CPI 기준 평균 상승률	%	6.38	3.53	3.81	3.2	3.03	2.52* *상반기
	종합주가지수 *JCI 기준	연말	4,593	5,297	6,356	6,194	6,307	5,082* *2020.7.24
	실업률	%	6.18	5.61	5.5	5.34	5.28	4.99* *상반기
대외 경제	수출실적	US \$억	1,504	1,445	1,676	1,802	1,670	764.1* *상반기
	수입실적	US \$억	1,427	1,357	1,569	1,879	1,704	709.1* *상반기
	무역수지	US \$억	77	88	107	-77	-34	55* *상반기
	외국인투자금액* *투자조정청(BKPM) 기준	US \$억	293	290	322	293	283	136.1* *상반기
	경상수지	US \$억	-175	-170	-162	-310	-304	-39* *1분기
	총외채	US \$억	3,107	3,200	3,525	3,768	4,045* *2019.12	4,047* *2020.5
	외환보유고	US \$억	1,059	1,115	1,302	1,207	1,292	1,317* *2020.6
	중앙은행기준율	%	7.52	6.75	4.25	6.00	5.00	4.00* *2020.7.16
	환율(연말기준)	Rp/ US \$	13,788	13,689	13,563	14,481	13,903	14,540* *2020.7.24

※ 자료출처 : 인도네시아 중앙 통계청, Bank Indonesia, World Bank, Global Trade Atlas, BKPM

※ 참고 : 인도네시아 약사, 개황, 경제등 세부정보 열람을 희망 할 경우 news.kotra.or.kr에 접속, 인도네시아 출장자료, 인도네시아 국가정보,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회원, 비로그인 상태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Part 1.

무역 FAQ

1. 통관
2. FTA 활용 방법 및 관세율
3. 수출 금융 및 대 바이어 애로사항
4. 인증
5. 바이어 발굴 및 시장조사



Part 1. 무역 FAQ

[통관]

Q1. 기본적인 수입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세관은 수입자를 Priority, Green, Yellow, Red의 4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Priority Channel은 관세청 평가에 의한 신용도 최상위 업체에 부여되는 등급으로 수입제세 납부 전에 무검사 통관이 가능합니다만 하기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화물 검사 후 통관이 종료됩니다.

-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품목 수입 시
- 한시적 수입 화물인 수입 시
- 재수입 화물인 수입 시
- 정부 부처에서 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화물 수입 시

Green Channel은 수입제세 납부 후 선통관(일반적으로 당일 통관 완료) 후 심사합니다.

Yellow Channel은 수입제세 납부 후 통관 서류심사 완료 후 통관됩니다.

Red Channel은 수입제세 납부 후 통관서류 및 화물 검사 완료 후 통관 됩니다.

- 수입통관용 서류

- 필수와 보조 서류로 나누어지며 세부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필수서류	보조서류
필수 서류는 원본 구비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조서류는 통관 심사중 세관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가액 심사와 관세율 적용의 주요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iginal Bill of Lading (선하증권 원본) - Delivery Order(화물인도지시서) - Invoice, Packing List (송장 및 물품명세서) - Insurance Policy(적하보험) - FTA 원산지증명서(적용하여 통관 진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les Contract - Purchase Order - Remittance Slip / Bank Statement - Catalog / Specification
---	---

- 수입시 납부하는 수입제세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품목별로 해당 세금이 달라 납부 전에 HS Code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세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수입관세(Import Duty): Bea Masuk
- 부가가치세(VAT): PPN (Pajak Pertambahan Nilai)
- 선납법인소득세(Corporate Tax in advance): PPH22 (Pajak Penghasilan Pasal 22)
- 특별소비세(Sales Tax on Luxury Goods):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Mewah
- 소비세(Excise): Cukai

- 수입제세 계산방식은 하기와 같으며 적하보험은 부보하여 수입 통관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관세 = 과세가액(CIF) ×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과세가액+ 수입관세) × 10%
- 법인세 = (과세가액+ 수입관세) × 2.5% (or 7.5% / 10%)
- 특소비세 = (과세가액+ 수입관세) × 특소비세율

- 화물검사

- Physical Inspection: 내품을 100% 전수검사합니다. 선적서류에 명시되지 품목 적발시 관세추징 및 행정벌금 부과됩니다
- HI-CO SCAN X-RAY: 내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며 HI-CO SCAN X-RAY로 투과하여 검사합니다.

Q2. 중고품 수입이 가능한가요?

중고품 수입은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매 2년 단위로 공표하는 품목에 한하여 중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중고 수입이 가능한 품목은 주로 제조업체의

자본재용 기계설비류이며 연식 제한이 있으므로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중고 수입 가능품목 리스트를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고수입허가 요건이 확인되면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중고기계설비 수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역부의 승인을 받은 이후는 지정된 Surveyor측에 선적전 화물 검사 의뢰, 검사비 납부 후 선적지에서 화물 검사를 실시한 이후 선적을 하셔야 합니다.

Q3. 수출 희망 물품이 인도네시아 수입 제한 품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수입제한 혹은 수입금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인도네시아 재무부 소관 포털사이트인 <https://intr.insw.go.id>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해당 품목의 각종 인증여부 또는 수입제한 및 금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경우 바이어에게 확인을 요청하시거나 또는 KOTRA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한 확인 및 조사도 가능합니다. 문의하실 때는 정확한 HS 코드 및 품목명 그리고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도움자료(카탈로그 등)를 보내주시면 보다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Q4. 중국에서 제품 제조 후 인도네시아로 직수출 시 통관상의 문제가 있나요?

수출자는 한국에 있고 제조자가 중국에 있으며 수입자는 인도네시아 업체인 경우, 중국에서 제품 생산 후 인도네시아로 직수출하여 중 - 아세안 FTA에 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관당국에 제출하여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의 삼국간 비즈니스관련 주의 사항은 중국발 제품에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인 FORME 를 발급 받아야 하며 FORME 상에 한국 수출자와 제조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THIRD PARTY INVOICING 란에 클릭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Q5. 섬유 제품 가공 후 남은 원단을 한국으로 재수출할 경우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수입 업체에서 수입 시 수입제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을 완료한 경우는 재고 원단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수입시 수입제세가 면제 또는 보류

된 경우(보세업체에 해당)는 수출 및 임의 반출이 불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관할 세관의 승인 후 불용 자재로 소각
- 관할 세관의 승인 후 수입제세 납부하고 이후 내수 판매

Q6. 샘플은 인허가가 없이도 통관이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샘플은 정상적인 수입 통관 절차를 통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샘플을 특송화물로 발송한 경우 USD 3.- (FOB) 이하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 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샘플 무관세 통관이 불가능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허가 해당 제품은 인허가 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무관세 샘플 통관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샘플 발송시 수입자와 인허가 부분에 대해 먼저 확인 하시고 무환거래인 경우에도 샘플의 정상적인 가액을 명시하여 통관 진행하여야 세관의 수입 가액 임의 책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전시회 등의 특정기간 동안 사용하고 재반출하는 샘플의 경우는 CARNET 통관을 하시면 수입제세 납부 및 인허가 구비 진행절차 없이 간편하게 통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제세를 납부 없이 승인 받은 기간 이내 반드시 재반출하여야 합니다.

Q7. 통관 지연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보내지는 해운 화물의 경우 인도네시아 항구까지 약 10일이 소요되며 항공화물의 경우 7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제출한 선적서류상의 하자 발견 시, 또는 화물 검사를 할 시 통관이 지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수입제세 납부 후 1~3일 이내에 통관 종료가 됩니다. 통관이 지연되면 통관 진행을 의뢰한 통관 업체에 문의를 하시거나 세관에 방문하여 통관 담당관과 면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담을 통해 지연 사유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EMS 등 우편으로 보낸 제품에 대한 배송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는 EMS 등 록번호를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

Q8. 세관에서 통관 중 수입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 통관 중에 화물의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먼저 세관을 방문하여 면담하신 후 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수입 통관 중 통관이 보류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선적서류와 화물 불일치에 기인합니다. 실제 화물과 통관 서류상에 명시된 화물이 화물 검사 실시 후 서류상과 다른 화물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서류상의 화물 개수와 실제 개수가 불일치한 경우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정 화물의 수입 시 구비해야 하는 인허가 관련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통관 진행을 한 경우도 수입 통관 보류 대상이 됩니다.

화물 수량 또는 내역 불일치 상황에서는 세관당국의 관세추징 및 행정벌금 징수 후에 화물 통관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으나 수입 시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수입 통관이 불허됩니다. 이런 경우 세관에 반송 처리 승인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9. 인도네시아로 제품 수출 후 불량으로 반품 받을 시 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수출한 제품이 불량 혹은 기타 사유로 한국에서 재수입되는 경우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완전히 동일한 상태라면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서 및 기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 3국으로 수출한 제품이 반품되어 인도네시아로 재수입되는 경우는 수입관세는 면제되나 부가세와 법인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관세 면제는 세관의 승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반품 화물 수입 시 수입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수출 시의 수출면장 혹은 기타 수출증빙자료, 제 3국 수입자의 반품 사유서 등을 재수입신청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 후 승인을 받으면 수입관세 면제 후 재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Q10. 수입 통관 절차를 수입업체가 아닌 수출업체가 진행할 수 있나요?

한국의 업체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을 하고 한국의 수출자 명의로는 인도네시아 수입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수입 통관 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현지 수입허가를 득한 인도네시아 주재 업체만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수입업체가 수입통관을 위해서 수출업체에 발송 요청하는 서류는 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이며 이외 FTA 협정에 근거한 원산

지증명서도 관세 면제 등의 절차에 필요할 경우 발송 요청 합니다.

한국의 수출업체가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 통관을 직접해야 할 경우,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을 통해 한국 주재 모기업 제품을 수입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11. 선적 전 검사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수입 화물 중 선적 전 검사(Laporan Surveyor)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한 화물이 있습니다. 이의 경우, 대개 전문적인 검증이 필요한 화물들이며 선적지 검사기관에서 화물 검사를 실시한 이후 선적 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선적 전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신청 및 접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SUCOFINDO : 기계 설비류의 선적전 검사 신청 기관
- ② KSO SUCOFINDO : 기계 설비류를 제외한 품목의 선적전 검사 신청 기관

선적 전 검사 신청 기관에 화물검사 접수 완료 후 승인을 받으면 선적지의 수출자는 지정된 화물 검사기관의 검사관과 협의하여 화물 검사일을 확정하고, 화물검사 후 수출선적을 완료합니다. 선적 전 검사를 신청한 인도네시아 수입자는 화물검사보고서를 해당 기관으로 부터 접수하여 통관 시 수입신고서에 선적 전 검사 보고서 번호를 명시하고 필요시 세관에 선적 전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통관을 진행합니다.

선적 전 검사 진행의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 순서	내용	해당 기관	예상 소요일	참고 사항
1	수입자 최초 인니검사 기관 SUCOFINDO 사이트에 등록 (수입허가서 등 회사 법인서류 필요)	Sucofindo/ KSO Sucofindo	3 일	www.sucofindo.co.id www.scisi.co.id 신청 완료 되면 ID/Password 받음
2	ID/Password 접수후 Packing list, Invoice 에 근거 온라인 선적전 검사 신청(Verification Request 및 Verification Order를 발급 받아 선적지에 전달)	Sucofindo/ KSO Sucofindo	5 ~ 7일	선적전 검사 온라인 접수 후 검사기관인 SUCOF-INDO/KSO Sucofindo 에서 검사 비용 견적서가 발송되며 납부 후 SUCOFINDO/ KSO Sucofindo에서 선적지 검사 기관에 검사 요청 통지

3	선적지에서 검사 진행 및 완료	지정 검사 기관	7일 이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적지 SUCOFINDO 에서 신청서 양식 수출자 담당자의 메일로 전달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한 뒤 검사 일정 받음 (신청서 제출 후 통상 1주일 이내 검사 진행) 2. 검사는 통상 당일 완료 3. 검사관은 해당 제품의 품명 및 원산지, HS CODE 등 제원들 및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인니로 검사보고서 통지.
4	선적전 검사 보고서에 근거하여 인니 Sucofindo/ KSO Sucofindo 최종 화물 검사보고서를 발행함. (Laporan Surveyor)	Sucofindo/ KSO Sucofindo	5 ~ 7일	인니 Sucofindo/KSO Sucofindo 는 선적지 검사 보고에 근거하여 검사보고서 발급.

Q12. 인도네시아에도 수입할당제(수입쿼터제)가 있나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쿼터의 역할을 하는 제도는 사전 수입 허가제입니다. 해당 제도의 인도네시아어 명칭은 Persetujuan Impor이며 약어로는 PI로 통칭합니다. 주요 대상 품목은 철강, 섬유, 원예작물, 타이어, 에너지 관련, 임업 관련 등 총 82개 품목군이 해당 됩니다. 따라서 바이어나 현지 법인(무역상사 등) 수입 전에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사전 수입허가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이후 수입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사전 수입 허가(Persetujuan Impor) 승인 절차*



*신청 주체 : 인도네시아 수입업자

절차	세부 내용
①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수입업자는 무역부 산하 포털인 INATRADE 포털에 접근 계정 및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주소 : http://inatrade.kemendag.go.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수입 승인 신청서는 INATRADE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수입자 등록 번호(API) 정보가 포함된 사업자 등록번호(NIB, Nomor Induk Berusaha)가 포함된 서류를 갖춰야 함
②승인 또는 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국가 싱글 윈도우(INSW,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를 통해 인도네시아 산업부(또는 지정된 기관)가 발급한 기술 검토서 • 판매 계약서 또는 구매 주문서(만일 수입업자가 철강 비파생 제품을 수입하는 일반 수입자 등록번호(API-U) 성격의 NIB을 소지한 수입업자일 경우) • 밀 서티(Mill certificates, 합금강 수입에 한함)
③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가 제출된 후 근무일수 기준 3일 내로, 무역부 대외무역국이 수입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것 • 사전 수입 승인은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유효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I-P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1년 - API-U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 • 사전 수입 승인서에 포함된 어떠한 정보라도 수정사항이 있을 시, 수정 신청서가 반드시 INATRADE 포털에 제출되어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승인서 - 기술 검토서
④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수입 승인서 만료 시점으로부터 근무일수 기준 14일 전에 해당 수입업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연장 신청서와 함께 INATRADE 포털에 업로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수입승인서 - 선하증권(B/L) ※ 해당 연장이 승인되면, 최대 30일간 유효

Q13. 검역 대상 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검역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주로 동물(수산물 포함), 식물이 이에 해당하며 해당 성분을 포함하는 제품 또한 검역 대상 제품이 됩니다.

기본적인 검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요구서류 확인 및 검역대상 제품 특성 파악
2. 격리	장기간, 특수시설, 제어된 환경 조건 등을 요구하는 검역대상 제품 격리

3. 관찰	격리된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 관찰 진행
4.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대상 제품(동물, 수산물, 식품)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 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에 오염/감염 또는 의심 될 경우 - 검역 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나 의심될 경우
5. 역류	인도네시아 수입 요구조건이 완전하게 충족되지 못하였을 경우, 검역 대상 제품 역류 및 수입업자에게 규정 충족을 위한 허용 기간 명시
6.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항목의 해충, 혹은 질병에 오염 또는 감염, 부패, 훼손, 수입금지 중에 속할 경우 • 요구 서류 미제출 경우 • 역류 조치 후 지정 기간 이내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운송수단 내에서 처리되었으나 운송수단이 동물, 수산물, 식품의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
7.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역 후, 후속 검사에서 제품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에 감염, 부패, 훼손, 수입금지 중에 속할 경우 • 입국 거부 이후, 지정된 기간 내 해당 제품을 이송하지 않을 경우 • 격리 후 관찰 시 제품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의 오염/감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8.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이 오염 또는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경우 제품 인도 수입업자가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인도 증명서 발급

자료 출처 : KFRI

〈검역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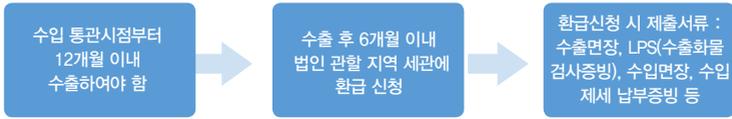
법령	시행령, 세칙
PP No 82 Tahun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과 관련한 질병 전파 매개체*가 인도네시아 영토로 유입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 동물검역소의 역할: 검사, 격리, 관찰 감독, 가공, 역류, 해체, 방출 등 • 동물 위생 증명서 포함 내용: C/O, 특정시기 동안 해당 동물이 머문 동물 전염병과 관련이 없는 지역, 원료가 되는 동물의 위생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 등 • 위생허가서 포함 내용: C/O, 특정시기 동안 해당 동물이 머문 동물 전염병과 관련이 없는 지역, 원료가 되는 동물의 위생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 동물이 질병, 전염병과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 특히 사람이 섭취하는 동물 조건은 동물 보건 및 기타 지배적인 규정의 기술적 요구 사항에 부합 하는지의 여부를 입증하는 내용 등 • C/O(원산지증명서) 포함 내용: 제품 설명, 원산지, 위생 관리 감독에 대한 내용 <p>주*: 질병전파매개체란 각종 병원 및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동식물 등을 지칭</p>

<p>PP No 14 Tahun 20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과 관련한 질병 전파 매개체*가 인도네시아 영토로 유입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 식물검역소의 역할: 검사, 격리, 관찰 감독, 가공, 역류, 해체, 방출 등 • 질병 전파 매개체의 수입 신고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와 관찰 예정인 질병 전파 매개 품목 수입 시 해당 수입 신고는 도착 5일 전에 수입업자가 시행해야 하며 운반은 하역 당일에 이뤄져야 함 - 격리와 관찰대상이 아닌 질병 전파 매개품목 수입 시 하역장에서 수입업자가 수입 신고를 해야 함 - 질병 전파 매개체의 우편 송부의 경우 세관 도착 시 식물 검역소로 보내야 하며, 수입 신고는 우편 당국의 통지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 수입 업자가 수입 신고를 해야 함 <p>*주: 질병전파매개체란 각종 병균 및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동식물 등을 지칭</p>
<p>PP No 15 Tahun 2002 (시행세칙 :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11/PERMENKP/20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과 관련한 질병 전파 매개체*가 인도네시아 영토로 유입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 구비 서류 : 위생 허가서, 원산지증명, 수산물 검역 시설 관련 증빙 서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 수입 물품은 반드시 원산지 국가에 등록된 수출업자로부터 수입 받아 진행해야 함 • 수입업자는 통관시 수산물 안전, 품질, 검역신청서 형태의 수입신고서를 UPT Badan에 제출해야 함. <p>*주: 질병전파매개체란 각종 병균 및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동식물 등을 지칭</p>

Q14. 보세업체가 아닌 인도네시아 현지 제조 법인에서 수출을 위해 원부자재 수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수입제세 및 인허가 면제가 가능할까요?

수입된 물품이 수출용으로 사용됐을 경우 수입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수입시 수입관세 면제, 부가세 유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부자재의 수입관세 환급 혹은 수입할 당시에 수입관세 면제와 부가세 유예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수입업체는 KITE 등록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보세가 아닌 수입 업체에서 KITE 등록을 하여 승인 후 수입관세를 환급받거나, 수입 통관 시점에 수입 관세 면제, 부가세 유예의 혜택을 받아도 수입 관련 인허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수입 쿼터 대상 화물은 수입 쿼터인 사전 수입승인 (P1)을 받아야 하나 선적전 검사는 면제가 됩니다.

KITE 업체가 수입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여 제품 수출을 하고 수입 관세를 환급 받고자 할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환급에 대한 상세 내용 확인 [☞](#) Q30 질의 응답 참조

Q15. 현지 법인에서 인프라 관련 설비를 수입해 참여 중인 인프라 사업에 활용하려 합니다. 추후 한국으로 반출 예정인 자본재인데 수입세와 인허가 면제가 가능할까요?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제도(Impor Sementara)를 활용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제도는 수입 화물의 사용 기간을 확정된 이후 확정된 기한 이내 재수출될 화물에 대하여 수입관세 면제 혹은 수입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최장 허가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국내 인프라 건설 관련 업체의 건설장비 수입 등 일시적 수입을 요하는 화물인 경우 수입제세를 면제 혹은 감면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한시적 수입화물 수입신청은 관할 세관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178/PMK.04/2017 (개정 106/PMK.04/2019)에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제도의 개요, 신청 절차, 승인 조건, 주요 혜택, 수입관세 면세 화물, 수입관세 감면 화물, 관련 유의사항, 한시적 수입화물통관 승인 취소 조건, 수입관세 면세 부분에 대한 담보 제출 및 담보 회수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시적 수입화물 승인대상은 비소모성 및 변형불가 화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 수입 시와 반출(재수출) 시 화물의 형태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품의 사용 목적이 확실하고 반출(재수출) 증빙을 구비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업체는 수입 시 필요한 제품에 대한 인허가 등의 수입규제가 면제되며 수입관세 면제 대상 화물은 수입관세 면제, 부가세(특소세)면세, 법인세 면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관세 감면 대상 화물에 대해서는 수입 업자가 임시수입기간 동안 매달 수입관세 금액의 2%와 부가세(특소세)를 납부해야하나, 법인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한시적 수입화물(장비) 관련 부품 수입 시 상기와 동일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면세/감면 금액은 세관에 담보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제세 면제 화물(수입관세, 부가세, 법인세)에는 전사회용 화물, 공연용 장비, 운동경기 혹은 각종 시합용품, 화물 운송 포장재 및 도구, 관광용 선박(Yacht), 동물, 재난용 구호장비(물품), 육·해·공군 및 경찰용 화물, 상선 및 어선, 항공기 및 헬리콥터, 승객 및 승무원 개인화물, 차관 혹은 기부로 수입되는 국책 사업용 화물, 국제 여객 혹은 화물 수송 수단, 컨테이너 등이 있습니다.

수입관세 감면화물(수입관세금액의 2% 매월납부, 부가세 납부, 법인세 면세)은 생산용 혹은 인프라 구축용 기계설비, 수리용 장비, 시험용 장비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한시적 수입 화물 진행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분할 수입(Partial) 진행 시 최초 수입화물 기준으로 허가 기간이 산정되며 두 번째로는 승인일로부터 3개월 내에 수입해야 하며, 해당 기간 초과 시에는 승인 효력이 상실됩니다.

아울러 관할 세관의 승인 없이 화물을 임의 이동한 경우, 화물을 최초 허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리고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한시적 수입화물로 인정받지 못해 수입시 혜택 받은 수입제세 납부 및 행정벌금 추징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수입제세 면세 화물의 수입 시 세관에 제출 담보회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승인기한 내 재수출을 완료한 경우
- 승인기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화물을 사용하고자 하여 수입 제세 및 벌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
- 불가항력적인 상황(force majeure)에 의한 재수출 불가 상황으로 인하여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 인도네시아 중앙 부처에 기부한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 시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 허가 만료 최소 30일전에 관할 세관에 재수출 허가를 신청해야하나 가급적이면 만료 기간 최소 2개월 이 전부터 재수출 수속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허가 만료 기간 이내에 재수출이 완료되지 않을 시 수입 제세 및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벌금 부과액은 납부해야 할 수입관세의 100%가 부과되는데, 이는 업체에 큰 부담이 됨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사전에 면밀히 숙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건설업체 혹은 제조업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도로 보입니다.

Q16. 전시회에서 사용할 용도로 샘플 몇 개를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운반하려고 하는데 제품의 부피가 커서 핸디캐리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기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 제도를 이용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조건은 수입된 제품의 물성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재반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판매나 시식 등 제품의 변형이 가능한 행위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기간 전시 목적이면 까르네(Carnet)가 더 유용합니다. 즉, 건설업체의 장비, 제조 업체의 기계 등 고가 제품이면서 실제로 사용돼야 하는 화물은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며, 단순 전시회 및 바이어 샘플 등은 까르네가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도네시아는 ATA 협약에 가입된 까르네 협정국으로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까르네 신청과 발급은 웹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http://cert.korcham.net>)’에 접속하고, 웹화면에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발급담당자가 검토하고 보정을 요청하거나 발급을 승인합니다. 이용자가 발급수수료를 결제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까르네 통관 시 반드시 발급기관 인장이 찍힌 원본증서가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원본을 수령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 시, 발급신청 후 증서수령까지 하루, 우편수령 시, 발급 일로부터 3일 정도 소요됩니다.

까르네로 일시 반출될 수 있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①해당 물품이 수출 된 후, 재수입 가능한 물품인지, ②제품 변형 없이 수출될 시 그대로의 형태로 재수입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까르네 대상 물품에서 제외됩니다.

까르네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국에서 소비되는 물품(식품, 씨앗, 종자, 소비재, 선물 또는 기부목적 반출 제품)
- 위험물/폭발물(무기, 탄약)
-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물품(에너지자원,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 가공 목적으로 반출되는 제품(문양, 절단 등 인공적 처리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아지거나 반제품으로 반출되는 물품, 감정용 보석)
- 판매를 목적으로 반출되는 물품(전시 현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반출되는 물품 등 적정량을 초과하는 과다한 수량의 상업샘플) 등

까르네는 관세, 부가가치세, 담보금 등을 대체하는 담보증서로 인니 세관이 부과하는 재수출 불이행에 따른 관세 등의 납부를 인니 상공회의소가 보증하기 때문에 수입국 세관은 별도의 관세 채권 확보를 위해 복잡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 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 까르네 증서에 재수출 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합니다.

Q17. 수입, 유통 관련 인허가가 필요한 제품을 해당 인허가 없이 핸디 케리하여 들고 올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해당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제품군이 생활소비재류, 휴대용 의료기기 등 일상 생활 속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생활소비재의 경우 바이어 또는 전시회 샘플용으로 다량의 제품을 들고 왔다가 인니 세관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핸디 케리가 가능하며, 규정에서 지정한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세관의 판단에 따라 인도네시아로의 반입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 물품으로서 물량이 적을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나, 만일 제품 수량이 상업용으로 보일 정도로 많을 경우 제품 반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입국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세관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세관신고서에 전부 NO로 체크했을 경우(한도 범위 내 물품 소지로 신고 사항 없음) 입국심사대를 거쳐 입국장으로 가시는 길에 Green Channel으로 통과하시면 되며, 만일 한 건이라도 YES를 체크한 건이 있을 경우 Red Channel으로 가서 세관의 검사를 받습니다. 기입 항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세관 당국의 제지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입국시 세관신고서 항목〉

1.	이름
2.	생년월일(일/월/년도)
3.	직업
4.	국적
5.	여권번호
6.	현지 숙소 주소(호텔명)
7.	항공편명
8.	도착일자(일/월/년도)
9.	동행하는 가족 수
10.	반입하는 수하물 갯수
11.	별송품 갯수 (현재 탑승한 비행기 외에 다른 운송수단으로 반입되는 물품)
12.	동, 식물, 수산물 반입 유무
13.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약물, 무기, 폭발물, 외설물을 소지유무
14.	1억 루피아 이상의 화폐 소지유무
15.	담배200개피, 시가25개피, 가루담배100g, 주류1L 이상 소지유무(현재 세관신고서 기준 - 담배 1보루 이상, 술 1리터 이상 소지유무)
16.	상업성 물품(판매목적) 유무
17.	해외에서 구매/획득하고 인도네시아에 남게 될 상품의 합이 500달러 (FOB 기준)또는 1인 1억 루피아 이상의 가치를 지닌 현금(루피아화, 외화포함)등 지불수단을 보유하고 있을경우1,000달러/1가족을 초과유무(현재 세관신고서 기준 - 면세품 1인당 250달러 이상 또는 10,000달러 이상 소지유무) (2018년 1월부터 적용)

※ 전부 영문 작성하셔야 하며, 세관신고서는 가족 중 한명만 작성하면 됩니다.

Q18. 보세구역으로 물품이 수입될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보세구역은 보세구역으로 물품이 수입될 시 수입제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해외 물품이 수입되었을 때 인도네시아의 보세구역에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기간 중에는 수입제세의 납부를 유예 받고 수입한 물품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이 되면 수입제세 납부의무가 해제됩니다.

단, 보세구역에 위치한 업체에서 인도네시아 내수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보세구역은 다음과 같으며 보세구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각종 인허가가 면제됩니다.

〈인도네시아 보세구역 관련 참고사항〉

- (1) 보세구역 : 보세구역(Kawasan Berikat/KB)은 수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혜택임
- 항공, 방위산업, 선박제조, 철도 등 특정 산업에도 부여됨
 -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시 수입제세의 납부가 유예되며 수출후 세관의 감사를 거쳐 최종 면세 처리됨
 - 보세구역에 위치한 보세법인은 전년 수출실적(해외수출/국내보세구역/ 국내자유무역지대) 대비 50%까지 내수판매 가능

(2) 인도네시아 보세구역 종류

- 보세 사업자(Bonded Company)
- 보세 산업단지(Bonded Industrial Zone)
- 보세창고 (Bonded Warehouse)*
- 보세 전시장 (Bonded Exhibition Place)
- 면세점 (Duty Free Shop)
- 보세 경매장 (Bonded Auction Place)
- 보세 재활용장 (Bonded Recycling Area)
- 보세 물류 센터 (Bonded Logistic Centre)**

* 보세 창고 : 보세 창고(Gudang Berikat)는 원부자재등의 수입화물을 보세상태로 최장 1년 보관 가능하며 분류와 패키징 등의 간단한 작업이 가능하며 VMI(VENDER MANAGEMENT INVENTORY)에 적합한 업종임.

〈보세창고 종류〉

- ▶ **GUDANG BERIKAT** : 이라는 보세 창고에는 화물을 보세 상태로 수입을 하고, 패키징 및 분류 이외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수입된 상태로 거래처에 공급을 하여야 함
- ▶ **PUSAT LOGISTIK BERIKAT**: 보세 상태로 화물을 수입하나, 내부에서 재포장, 분류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어 GUDANG BERIKAT 보

다는 좀 더 유연하게 운영됨.

- 일반 업체들의 화물(완제품)을 수입하여 PUSAT LOGISTIK BERIKAT에서 보세 상태로 보관하다가 필요시 재포장, 재분류 등을 하여 세금 납부 후 통관 및 반출이 가능

** 보세 물류 센터 : 보세 물류 센터(Pusat Logistik Berikat)는 보세 창고와 유사하나 완제품을 최장 3년 동안 보세 상태로 화물 보관 가능하며 분류, 패키징, 분할 반출 등의 작업이 가능하며 관세 지역 외부에서 수입한 재화 또는 인도네시아 과세지역 내의 다른 장소에서 수입한 재화의 보관이 가능. 수입 물품, 수출 예정인 물품의 임시 보관(최장 3년)이 가능

(3) 상기 지역에 대한 주요한 조세 혜택은 다음과 같음

-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및 사치세의 미징수
-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수입선납법인세(PPh22)의 미징수
- 특정 재화에 대한 수입 관세의 유예
-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소비세 면제
- 특정 재화의 국내 매입에 대한 부가세 및 사치세 미징수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국에 동남아시아의 물류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보세 물류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원활한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보세 창고보다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조세 감면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보세 물류센터에 관한 규정(PER-01/BC/2016)을 발표했습니다.

Q19. 인도네시아로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 절차를 알려주세요.

● 한국에서의 수출 절차

최근 전자상거래 수출입이 활성화되어 관세청에서는 수출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일반 개인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 항목이 간소화됐으며,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수출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세관에 전자상거래업체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된 전자상거래 업체가 등록을 원할 경우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서를 관할 세관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합니다. 대상물품은 전자상거래물품으로 200만원이하(FOB기준)의 물품입니다.

간이수출제도로 수출신고를 한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되고 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무역금융 등 수출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사의 인근 세관의 통관지원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관세법 제226조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3조에 따른 수출물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 조건부로 수입 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 절차(해외 직구 방식)

한국의 판매자는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인도네시아 수입유 통사 또는 직접 입점하여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배송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거래 당사자 간 거래 계약을 하고, 비용 지불 절차를 거친 후 한국의 판매자가 해당 제품을 한국에 있는 집하지점까지 배송합니다. 이후, 인도네시아의 유통사는 한국 집하지점부터 인도네시아까지 항공 배송을 통해 제품을 들여옵니다. 통관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제품은 인도네시아 물류 창고에 입고됩니다. 온라인 유통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되면 증빙서류가 물류 창고 담당자로 전달됩니다. 물류 창고 담당자가 제품을 찾아서 포장하고 JNE, J&T express, SICEPAT 과 같은 물류택배업체를 통해 최종 구매자에게 배송합니다. 유통사가 입점한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직접 협약을 맺은 지정된 물류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무부령 No 272/PMK.04/2015의 내용에 의거하여 주로 내수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자본재 수입에 집중해왔으나, 개정 법안인 재무부령(PMK) No.28/2018을 발표함으로써 보세 물류 창구 운영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2기의 보세물류 창고 분류는 대규모 산업체 PLB*, 중소기업체 PLB, e-commerce(전자상거래)PLB*, 기본상품 PLB, 항공 수화물 허브 PLB*, 부유식 저장 PLB*, 완성품 PLB* 등으로 분류됩니다. * PLB : 보세물류창고

재무부령(PMK) No.28/2018 제 4A조에는 전자상거래 보세물류창고는 오직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만 활용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보세물류창고 운영업자와 협력관계에 있어야 할 것

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인니 정부는 전자상거래용 제품에 대한 세관의 세무 감사 및 제품 수량 일치 여부, 품목과 해당 관세 일치 여부, 수출입 규정 준수 여부, 소득/지출/재고저장 등에 대한 적정 보고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수입 관세는 수입이 세관에서 신고되는 즉시 책정되며, 제품의 수입 가치 및 세법 분류는 보세 물류 창구로부터 물품이 출고되었을 때 시행되며, 해당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업체는 제품의 수입 규모와 보세물류창고 이용 혜택 등을 따져 보아 보세물류창고의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규모가 클수록 물류 비용 감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Q20. CBT 란 무엇입니까?

Cross Border Trade(줄임말로 CBT)란 국경 간 전자상거래로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해외 고객에게 B2C 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즉 해외 직구와 역직구 시장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소비자가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의 제품을 주문하는 경우를 해외 직구, 해외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형태를 역직구라고 합니다. B2C 통관 3달러 미만(FOB 기준)의 해외 직구는 세금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거래에서 오프라인 거래로 거래 플랫폼 확장을 희망하는 경우, 즉 인도네시아에 오프라인 상점을 두고 판매하고 싶다면, 식품류나 인체에 닿는 제품 그리고 장난감, 영유아 제품 등은 식약청인증서(BPOM)나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규격인증(SNI)이 필수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는 CBT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JD.ID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제품의 약 90%가 CBT로 판매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당사에 따르면, 물류 배송을 위해서 현지 물류 업체를 이용합니다. 해외 판매자와 JD.ID 협력 물류 업체를 직접 연결해주며, 물류 비용은 입점 수수료와 별개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JD.ID의 경우 물류 배송 방법은 물류 업체가 전자상거래용 물품을 해외 판매자로부터 인도받아 인도네시아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판매자가 제품을 한국에 정해진 물류창고까지 보낸 이후에 물류 업체가 해당 제품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운송이 되면, JX(J-Express) 또는 기타 물류 업체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합니다. 보통 항공 배송을 이용하는데, 해상운송

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JD.ID에서 인기 있는 한국 제품에는 패션 제품, 뷰티 제품, 스킨케어 제품 그리고 생활·취미 관련 제품이나 식품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FTA 활용 방법 및 관세율]

Q21. 인도네시아 수입 관세율을 조회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관세제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분류방식

인도네시아는 1989년부터 HS 제도를 도입, 총 품목은 종전의 약 5,000개에서 9,100개(HS 9단위를 기준)로 증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입 관세는 일반관세와 아세안국가에 적용되는 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의 복수체계로 돼 있는데, 2006년 이후 한·중·일 등과 FTA가 체결되면서 중-아세안 FTA(2006년), 한-아세안 FTA(2007년), 일-아세안 FTA(2008년) 등 3개의 FTA 관세체계가 추가됐습니다. 2017년 3월 1일부로 발효된 신규 세법으로 HS 10단위 체계에서 8단위 체계로 변경됐습니다. 2017년 기준 HS 코드 8단위로 조회되는 품목 수는 10,826개, 4단위는 1,222개, 2단위는 98개입니다.

● 관세율

- 관세율의 개략적 체계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 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1985년 이래 지속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보장, 문화/사회적인 관점에서 일부 보호산업/물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수입관세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 품목별 평균 관세율수입관세는 수입품 관세 평가액의 0~17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FTA체결로 對한국 수입제품 관세율은 대부분 면제가 되고 민감 품목군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가공도별 차등관세 적용

소비재의 평균세율은 중간재와 자본재의 2배 이상입니다.

- 관련 관세 절감 요령 및 특기사항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제조 업체는 기계설비 부분은 MASTERLIST 이후 수입되는 자재는 FORM AK, FORM E 등을 사용하여 수입관세 절감 혹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 관세율 조회 방법

<http://www.eservice.insw.go.id> 에서 HS Code 별 최신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Q22. 최근 탁송화물에 대한 관세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물품도 해당되나요?

맞습니다. 탁송화물(consignment goods)이란 고객이 회사에 운송을 신청한 화물입니다. 인도네시아 법에서 정의하는 탁송화물(barang kiriman)은 우편분야의 법적 규정에 따라 우편서비스 운영자를 통해 발송되는 물품으로, 전자상거래 물품, 우편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외의 거래방식으로 배송되는 택배, 소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탁송화물 면세한도 하향에 관련된 탁송화물에 대한 소비세 및 내국세에 대한 재무부령 개정령인 재무부령 2019년 제199호(No.199/PMK.010/2019)를 2019년 12월 31일에 공표하고, 이를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수입 사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판매세의 징수 절차와 수입 관세 면제에 관한 재무부 시행세칙(No 231/KMK.03/2001), 소비세 면제 절차에 관한 재무부령(No 34/PMK.04/2010), 배송품, 수입, 기타 영업활동과 관련한 선납법인세(PPh 22 조세)에 관한 재무부령(No 34/PMK.010/2017) 등을 개정한 법이며, 재무부령 2019년 제199호 제정을 통해 탁송화물 수입에 관한 재무부령(No 182/PMK.04/2016)이 철회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관세청에 따르면, 탁송화물 면세한도를 파격적으로 낮춘 이유는 첫째, 국내외 배송 물품에 대한 동등한 조세제도 적용, 둘째,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상품의 급격한 증가, 셋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시장을 상대로 동일한 조세제도 적용, 넷째, 현지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재무부령 2019년 제199호를 통해 기존법에서 주로 개편한 내용은 ① 탁송화물 관세면제 한도를 미화 75달러에서 미화 3달러로 하향 조정, ② 미화 1,500달러 이내 탁송화물에 대한 선납법인세 미징수(일부품목 제외), ③ 가방·의류·신발류에 대해서는 과세특혜 제외, ④ 담배에 대한 소비세 면제 한도 조정 등입니다. 탁송화물 금액 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에 대해서 적용되는 수입제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별 탁송화물 수입세율〉

조건	수입 관세	선납 법인세	부가 가치세	기타
(1) 탁송화물 금액 3달러 이하 (2) 담배 : 궐련 최대 40개비, 시가 최대 5개, 입담배 최대 40g 한도, 기타 담배 최대 40g 한도((세분화) 날개 형태 20개, 캡슐 5개, 액체 30밀리리터, 카트리지 4개, 기타 50 그램(밀리리터)) (3) 주류 : 최대 350ml의 경우	0%	0%	10%	
3달러 초과 1,500달러 이하 가치 탁송화물*	7.5%	0%	10%	
1,500달러 초과 탁송화물	MFN	세관 결정	세관 결정	PIB
가방(HS Code 4202)	15~20%	7.5~10%	10%	
섬유/의류 제품 (HS Code 61, 62, 63)	15~25%	7.5~10%	10%	
신발류(HS Code 64)	25~30%	7.5~10%	10%	
서적(HS Code 4901, 4902, 4903, 4904)	0%	0%	0%	

* 주: 3달러 초과 1,500달러 이하 가치탁송화물에 대한 선납법인세(10%, NPWP 미소자 20%) 미징수로 탁송화물에 대한 통합세율은 종전 약 27.5% 또는 37.5%에서 약 17.5%(관세율 7.5%, 부가세 10%)로 인하

자료원 : No 199/PMK.010/2019, 주 인니 대한민국 대사관(2020.1)

상기 사항 외 전자상거래 물품 등 탁송화물 관련 참고하실만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수입세율 계산 방법〉

- 1) 과세가격(Nilai Pabean) 산정 방식 →
CIF 가격(제품 가격 + 국제운송비용 + 보험비용) × 세금 환율*
 - 2) 수입가격(Nilai impor) 산정 방식 → 과세 가격 + 수입관세 (Bea Masuk)
 - 3) 수입관세(Bea Masuk): 조건별 탁송화물 수입관세 × 과세 가격
 - 4) 부가가치세(PPN): 수입가격 × 10% **
 - 5) 선납법인세(PPH 22): 수입가격 × 선납법인세율
- * 세금 환율은 매주 수요일 재무부 산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https://fiskal.kemenkeu.go.id/informasi-publik/kurs-pajak>
- ** 일반 적용 세율(정률)로 세법에 따라 예외 적용될 시 면세 등 타 세율 적용

〈탁송화물 규정 관련 기타 참고사항〉

- 탁송화물의 배송, 하적, 저장 등에 관한 내용
 - 세관 외의 지역에 위치한 물류 사업자는 화물 목록의 형태의 신고서를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화물 목록에 등재된 탁송화물의 하적(unloading)이 허용되면 신고자는 등록번호를 수령하게 됨.
 - 폐기 처분 승인이 난 탁송화물에 대해서는 임시 저장구역(TPS)에 적재 가능함.
- 세관에서 탁송화물을 인도네시아 영토로 반출하는 과정
 - 수입된 탁송화물은 임시 저장구역(TPS)에 저장되며, 세관 승인 이후에만 인도네시아 영토로 반출이 허용됨.
 - 수입 탁송화물은 개인 사용, 임시 수입, 인도네시아 내 거주 고객 대상 발송, 보세 창고 저장, 재수출 등의 목적으로 TPS에서 주로 반출됨.
 - 개인 사용 목적의 탁송화물의 경우, 서한 또는 서류의 형식을 갖춘 탁송화물 목록과 탁송화물이 배송업체에 의해 세관을 거쳐 반출이 됨.
 - 탁송화물의 금액이 1,5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화물 운송장을 세관 당국에 제출하면 탁송화물이 반출될 수 있음.
 - 만일 탁송화물의 금액이 1,500달러를 초과하고 수령자가 법인인 경우와 수입세 납부기한 연장과/또는 특혜관세를 적용 받은 탁송화물의 경우, 임시수입의 경우, PIB(상품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임시수입의 경우, 임시수입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다른 관세구역으로 배송되는 경우 최초의 임시 저장 구역(TPS), 도착 예정인 임시 저장 구역(TPS), 운송 번호, 출발/도착일, 패키징 수 및 종류, 제품 식별 번호, 화물의 총 무게(gross weight) 등의 운송 정보를 세관 당국에 신고해야 함.
 - 탁송화물이 보세 창고에 저장돼있는 경우 이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보세구역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 반출해야 하며, 재수출 과정의 경우 하역에 대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할 수 있음.
- 행정처분, 제재 조치 등
 - (소비자) 소비자가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관세법 또는 조세법에 의거해 관세 납부, 범칙금, 그 밖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
 - (배송 서비스업자) 탁송화물사업 승인 철회, 관련 정부 당국에 우편 서비스 운영 사업 철회 요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전격의 행정처분

Q23. 인도네시아에서 반출하는 제품에 수출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자원보호 및 자국 내 국내시장 가격 안정을 이유로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출세 부과대상은 가죽과 목재, 코코아두, 팜오일, 팜오일 원유 및 그 제품, 광석 또는 원료 등으로 한정되었으며 수출세는 물품에 따라 0~40%까지 부과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와 같은 제품들을 타국으로 제품의 수출을 희망하시는 경우 상기 품목의 HS Code를 확인하신 후, 인도네시아 관세편람(BTK, BUKU TARIF KEPABEANAN INDONESIA)을 통해 관세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편람에 수출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수출세가 없는 상품입니다. 품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CPO, 목재등의 경우 월별로 수출세는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 기준 단가(export standard price)가 변경됩니다. 수출세를 계산하시려면 해당 기준 단가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매월 해당 단가는 하기 관세청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한 무역부 사이트에서도 열람 가능하십니다.

- 관세청 사이트: <https://peraturan.beacukai.go.id/index.html?page=jenis/1/undang-undang/1.html>
- 무역부 사이트: <http://jdih.kemendag.go.id/peraturan>

참고로, 수출 후 면장 정정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는데, 사후 수출 면장 정정은 불가합니다. 다만 수출 후 가격 조정이 되어 추가 차액이 발생된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세무서에 추가 소득분에 대한 신고를 하고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시 면장상 수출 가격에 대한 소득세 납부와 추가 발생 차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분리하여 정리하면 추후 수출업자 입장에서 감사 시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전문가로부터 확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Q24. 한-아세안 FTA 활용 방안에 대해 문의합니다.

한-ASEAN FTA는 200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가마다 상이하게 발효되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방식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방식으로서 협정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그리고 협정에서 정한 운송원칙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에 인정되면 가장 크게 보실 수 있는 혜택은 특혜관세 혜택입니다. 양국이 정한 협정세율에 따라 일반 관세보다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아세안 FTA에 따른 인니 측 상품시장 개방 수준은 80.1% 정도가 됩니다.

Q25. FTA 특혜 세율보다 기본 세율이 낮은 경우, 원산지 증명 제출을 안 하면 될까요?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2008년 9월 10일부터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부품목에 대하여 상호대응세율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관세 유지품목의 경우는 일반 관세를 적용받기도 합니다. 간혹 석유화학제품 등 일부 품목은 한-아세안 FTA 세율보다도 일반관세율이 낮은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의 경우 원산지 증명 제출은 불요합니다. 원산지 증명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일반 관세율(MFN)이 부과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대응세율제도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가 자국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민감품목)중 당해 품목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경우 향후 국내산업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가 협정에서 아세안측에 약속한 FTA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MFN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아세안 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도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Q26. 한-인니 CEPA의 수혜 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내드리는 양측 상품 시장 개방에 대한 주요 내용과 같이,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실 경우 섬유류, 철강제품, 석유화학, 자동차 분야의 원부자재 품목이 일부 관세의 단계적 또는 즉시 철폐가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아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경우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원당, 맥주 등의 제품에 대한 관세가 일부 관세의 단계적 또는 즉시 철폐가 됩니다. 정확한 품목에 따른 정확한 관세 개방 정도는 협정문 최종본이 공개돼야 하는데, 2020년 5월 현재 기준 협정문 초안이 발표됐으나, 현재로서는 비공개된 상황입니다.

- (인니 시장개방)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 (5%), 자동차 및 부품(5%) 등 對인니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확보
 -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강판 등), 자동차 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 효시부터 즉시 무관세 적용 예정
 - 아울러, 인니는 섬유(면사(5%) 등), 기계부품(베어링(5%)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도 상당수 발효 즉시 관세철폐로 시장 개방
- (우리 시장개방) 민감성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
 - *쌀(513%),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녹차(513%), 사과(45%), 배(45%) 등 인니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우리 기 체결 FTA 개방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음
 - 벙커C유(3~5%, 즉철),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철), 맥주(15%, 5년) 등 우리 입장에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를 철폐할 예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11)

Q27. 한-인니 CEPA의 타결, 체결, 발효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니 CEPA의 최종 타결은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기간 중인 2019년 11월 25일에 이뤄졌습니다. 이후 법률 검토 등 여러 과정을 거쳐 2020년 초에 체결을 위한 서명식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잠정 연기된 상황입니다. 2020년 내에는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발효는 2021년 이후에 발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시기는 양국 정부 당국의 일정과 협의 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최초 한-인니 CEPA 논의 후 공동연구 진행, 협상 등의 단계는 하기 한-인니 CEPA 추진 경과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니 CEPA 추진 경과〉

구분		주요내용
공동 연구	11.5월~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인니 CEPA 관련 공동연구 진행 * 제1차 회의('11.7월), 제2차 회의('11.9월), 제3차 회의('11.10월)
공청회	11.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인니 CEPA 추진경과 및 필요성 설명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협상 개시	12.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간 정상회담시 한-인니 CEPA 협상개시 선언
1~7차	14.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차 협상 이후 5년간 협상 중단
※ 양국 정상간 CEPA 협상 재개 노력 합의 ('18.9월, 서울)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계기		
※ 양국 통상장관간 협상 재개 선언 ('19.2월, 자카르타)		
8차	19.4월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 서비스, 원산지, 협력 등 협상 착수
회기간	19.6월 (자카르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칙,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등 6개 분야 협상
국회 보고	19.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에 협상 추진경과 및 전략 보고
9차	19.8월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칙,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등 6개 분야에대해 상당 부분 협상 진전
10차	19.10월 (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잔여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
※ 양국 통상장관간 실질 타결 선언 ('19.10월, 자카르타)		
※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최종 타결 ('19.11월, 부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11)

Q28. 원산지 증명 발급 방법 및 제출 시기를 알려주세요.

(한-아세안, 한-인니 비교)

한-아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 시 또는 선적 직후(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소급 기간에 대해서 한-아세안 FTA의 경우, C/O “수출 시 또는 선적 직후(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 ACTIVELY”를 기재, 소급 발급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편, 한-인니 CEPA가 발효되어 적용될 시에는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달력상의 7일 내에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를 기재하여, 소급 발급이 가능

하게 됩니다. 다만, 선적일부터 소급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한-아세안 FTA에서는 “근무일” 기준, 한-인니 CEPA에서는 “달력상의 날짜” 인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는 국내법 및 규정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관련한 모든 적절한 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한-아세안 FTA vs. 한-인니 CEPA 차이점 비교 〉

구분	한-아세안 FTA	한-인니 CEPA (안)
발급방식	기관발급	기관발급, 차후 자율발급으로 전환 * 발효 2년 이내에 자율발급을 위한 규정/서식 협의, 발효 10년 이내에 자율발급 채택
C/O 방식	종이 C/O	종이 C/O와 전자 C/O를 모두 채택
소급 발급 기간	수출 시 또는 선적 직후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발급되지 않은 경우 * 선적일 포함	선적 전, 선적 시, 선적일로부터 달력상의 7일 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 선적일 포함
제3국 송장	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체크 표시	Remark 란 기재
PSR 규정 방식	별도로 규정하는 HS 코드 외에는 공통규정(CTH or RVC40)	HS 코드별로 PSR 규정
C/O PSR 약어	4단위 세번변경이 아닌 세번변경기준은 CTC로, 부가 가치기준은 RVC%로 기재	세번변경기준 CC, CTH, CTSH로 기재, 부가가치기준 중 공제법인 경우 BD, 집적법인 경우 BU로 기재
사후적용	사후적용 규정 부재	협정문에 사후적용 언급, 국내법으로 정하도록 규정
원산지 누적	他 아세안 국가의 원산지 물품을 원산지 재료로 활용 가능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독자적인 협정이므로 타 아세안 국가의 원산지 물품은 원산지 재료로 활용 불가

Q29. 제품의 원산지 표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원산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간혹 최종 완제품 조립이 완료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립되는 부품의 원산지 비율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지

에 대해 질문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최종 제품 조립은 중국에서 완료되지만, 조립되는 부품의 생산지가 대부분 한국이라면 장비에 “Made in Korea”로 표기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국에서 최종 생산한 완제품을 인도네시아로 발송 시에는 MADE IN CHINA로 표기 해주시면 됩니다. 만일 한국산임을 인정받으시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해당 제품을 재수입하신 후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한-아세안 FTA 일반원칙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아세안 FTA C/O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방법 〉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CTH 또는 RVC 40%
다.	<p>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p> <p>(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p> <p>(2)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p> <p>(3) 일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물품)</p> <p>(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p> <p>(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 (예: 재단 및 봉제과정)</p>	<p>CTC</p> <p>WO-AK</p> <p>RVC %</p> <p>(예: RVC 45%)</p> <p>CTH + RVC %</p> <p>Specific Process</p>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한-아세안 FTA는 2단위, 4단위, 6단위 세 번 변경 모두 “CTC”로 표기해야 합니다. 한편 한-인니 CEPA는 세번변경기준의 상세 분류에 따라 표기 방법이 다른데, 2단위는 CC, 4단위는 CTH, 6단위는 CTSH 등으로 표기하게 될 예정이며, 한-인니 CEPA가 발효되어 CEPA를 활용하시게 될 경우 하기 기준에 의거하여 원산지결정 기준을 기재하게 됩니다.

〈 한-인니 CEPA C/O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방법 〉

가.	수출 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물품	WO
나.	수출 당사국에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PE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	CC / CTH / CTSH
	(2) 부가가치기준	RVC/QVC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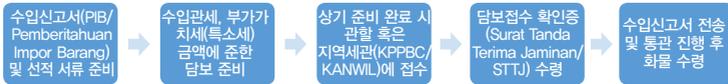
(3)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비율 (역내가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	CC / CTH / CTSH 또는 RVC/QVC 40
(4) 기타	CC ex / CTH ex / CTSH ex 또는 RVC/QVC 40

Q30. 관세 환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수출을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 면제 및 부가세 유예 (혹은 환급)를 해 주는데 이를 KITE 제도라고 합니다.

수입 통관 전 수입관세 면제, 부가세유예(Bank Guarantee 혹은 Custom Bond 예치)를 받고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수입 통관시 수입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이후 환급을 받을수도 있으나 이는 KITE 승인을 받은 법인에 해당이 되며, KITE 승인을 받지 아니한 업체는 납부한 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KITE 제도를 이용한 수입 실무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수입된 화물은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어야 합니다.

담보 회수 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KITE 제도로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화물 수입하여 해외 수출한 경우
 - PIB Copy (수입신고서 사본)
 - 수입 Invoice Packing List Copy
 - SSPCP (수입제세납부 영수증) 원본
 - 세관원의 확인서명이 명시된 SPPB (화물통관 승인증명서) 원본
 - LPBC/LHP (검사지시서 및 검사보고서)
 - PEB Copy (수출신고서 사본)
 - B/L 혹은 AWB 원본
 - 수출 Invoice, Packing List Copy
- 현지 보세법인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해외 수출한 경우
 - BC2,5 Copy

- 수입 Invoice, Packing List Copy
 - SSSPCP (수입제세납부 영수증) 원본
 - 세관원의 확인서명이 명시된 SPPB-KB Copy
 - Purchase Order
 - LPBC/LHP (검사지시서 및 검사보고서)
 - PEB Copy (수출신고서 사본)
 - B/L 혹은 AWB 원본
 - 수출 Invoice, Packing List Copy
- 해외수입 원부자재를 가공하여 현지 보세법인에 수출한 경우
 - PIB Copy (수입신고서 사본)
 - 수입 Invoice, Packing List Copy
 - SSSPCP (수입제세납부 영수증) 원본
 - 세관원의 확인서명이 명시된 SPPB (화물통관 승인증명서) 원본
 - BC2.4 원본
 - Sales Contract 원본
 - Invoice Copy
 - Purchase Order

상기에 준하여 서류 준비 후 관할/지역세관에 접수 후 접수증을 수령합니다. 이후 관할/지역 세관에서는 환급 심사하며 승인되면 세관에서는 SKP FP, SPMK 발급 및 승인 후 담보를 회수합니다. 면세 및 환급대상 제외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되지 않는 부산물, Waste, 스크랩 비용
- 윤활유, 연료 등의 소모재 및 공장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 수입규정에 위반하여 부과된 벌과금

[수출 금융 및 대 바이어 애로사항]

Q31. 위탁 판매 수출을 진행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요?

한국의 수출자가 인도네시아의 수입자(통관 및 비용 정산 대행 업체)와 거래하며, 실제로 물건은 인도네시아 최종 구매자(최종 바이어)의 창고에 보내고, 통관과 정산은 모두 대행 업체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러한 상황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최종 구매자는 대형 업체 측에 돈을 지불하며, 대형업체에서는 해당 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을 수출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이의 경우 최종 구매자가 대금 결제를 한국의 수출자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대행사를 통해 하는 경우로, 상호간 계약서 내용만 확실하게 해 둔다면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32. 인도네시아 내륙 공급시 외환 수취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 사례〉

당사는 국내소재의 업체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도네시아 공장 a와 제조위탁계약 체결 → 물품 생산 (2) 생산물품을 인도네시아 업체 b에게 납품 (3) 물품은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로 이동하지만, 대금은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이동 이 때, 인도네시아 업체 b로부터 외환 수취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당사는 인도네시아 공장 a에게 물건을 납품받아 인도네시아에 재고가 있는 상태로 인도네시아 업체 b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형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외환거래법상 한국으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문의 주신 사례는 진행이 어려운 사례로 보이는 바 위탁 계약에 의거한 공장 a와 한국소재 업체가 거래를 진행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래 전에 은행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 과정을 거치셔서 거래의 확실성을 보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도네시아에 현지 진출한 한국 은행이 있으니 물품대금 송금이 가능하신지를 연락하셔서 확인하신 후, 처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칸에 기재된 주요 한국계 은행에는 한국인 본사 파견 직원 상주 은행으로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요 한국계 은행 정보〉

- 하나은행 : PT Bank KEB Hana Indonesia
 - 전화 : +62-21) 522 0222, 50811111
 - 주소 : MANGKULUHUR CITY – TOWER ONE, JL, JEND. GATOT SUBROTO KAV. 1-3, JAKARTA 12930
 - FAX : +62-21) 5081 1123

- 신한은행 : SHINHAN BANK INDONESIA
 - 전화 : +62-21) 1500 881 (Shinhan Bank),
+62-21) 1500 336 (Shinhan Credit Card)
 - 주소 :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2 Lantai 30 dan 31 Jalan Jenderal Sudirman Kav. 22-23, Jakarta Selatan 12920
 - 사무실 직통전화 : +62-21) 2975 1500
- IBK 기업은행 : IBK Indonesia
 - 전화 : +62-21) 5790 8888
 - 주소 : Wisma GKBI Suite UG-01, Jl. Jend. Sudirman No.28, RT.14/RW.1, Bend. Hilir,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 kota Jakarta 10210

Q33. 한국 수출업체가 인도네시아 보세구역 공장으로 수출한 후, 한국 수출업체와 보세공장이 선 결제를 하고, 인도네시아 내국 바이어가 보세공장으로 대금 납부를 할 수 있나요?

보세 업체가 내수 공급 시에는 보세 업체 내수 판매 법령에 준하여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전년도 수출 실적도 감사를 받아야 하고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절차적인 복잡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거래에 대해 세무서나 세관에서 인정해 줄지 여부도 별도 확인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인니 업체에서 세관/세무서와 먼저 확인 후 성사가 가능한 거래인 것 같으니 바이어를 통해 세관/세무서를 먼저 연락하셔서 사업 애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34. 바이어의 수출 대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래 중인 바이어와 종종 수출대금 미납 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 일단은 바이어를 상대로 납부금 송금을 독촉합니다. 그래도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황별 고려 가능 조치 사항〉

1. 바이어와의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 또는 지속할 의지가 있는 경우
 - 현재처럼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나가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인들이 보기보다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면 비즈니스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레터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변호사(법률전문가)를 통해 상의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2. 바이어와의 관계를 종결하고 싶은 경우

- 법적인 증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클레임하는 방법은 첨부에 안내드리는 KOTRA 법률 자문위원을 통해 자문을 구하시면 됩니다. KOTRA 소개로 연락하셨다고 하면 초기상담 무료로 가능합니다.

- 혹시 수출보험을 사전에 가입하셨는지요. 그의 경우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미수금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수출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는 하기 담당자를 통해 보험 가입을 사전에 하지 않았으나 손실을 어떻게 커버받을 수 있는지 무역보험공사 국외보상채권부 국외채권팀(연락처 : 02-399-6592)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바이어 장기 연락 두절 등 범죄행위로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신고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 신고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계신 분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기가 어려워 주 인니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과에 민원을 의뢰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바이어와 다시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는 현지 유통업자나 수입업자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Q35. 알리바바를 통해 한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거래를 제의합니다. 무역 사기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알리바바는 기본적으로 무역 사기가 일어나기 쉬운 공간입니다. 사기 행각을 벌이는 자가 인도네시아 바이어를 사칭해 알리바바를 통해 거래를 제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무역 사기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법무인권부 사이트(ahu.go.id)를 통해 해당 기업의 실존 여부를 조회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바이어 신용도를 조회하셔서 최종 의사 결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신용도 조회 방식은 해당 책자의 47번 문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Q47 질의 응답 참조

그리고 알리바바와 같은 플랫폼에서 알게 된 업체와 연락을 취할 경우 해킹 위험이 있는 상용메일이 아닌 보안 처리가 된 회사메일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갑자기 계좌가 변경되었다며 다른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Q36. 인도네시아 업체와 처음 거래해봅니다. 무역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무역사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역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 거래처 주소

- 인보이스상에 거래처 주소가 정확히 명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기업이라도 해당 부서를 언급한 층과 건물명은 주소상에 반드시 명시돼 있습니다.



자료원 : 인도네시아 주요 온라인 마켓 tokopedia 및 가공식품 대기업 Indofood 홈페이지

● 전화번호

- 인니어를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간단한 영어는 인니 업체 담당자도 구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거래 대상 기업에 전화를 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 만일 “Maaf, nomor anda hubungi tidak ada(마아프, 노모르 안다 후붕이 띵닥 아다)” 라는 안내 메시지가 들리면 해당 홈페이지는 사기를 위해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인보이스 및 홈페이지 상 전화번호 및 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에 연락을 시도하십시오.

● 계좌번호

- 기업명이 수신자로 돼 있는지, 계좌번호 소재 도시가 법인 소재 도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불일치의 경우 사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Q37. 금형수출을 계획 하고 있는 수출업체입니다. 물품대금 수급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바이어를 상대로 신용장 개설을 요구할 계획인데 인니에서는 신용장 개설이 불가한가요?

인도네시아에서 신용장(L/C)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용장은 신용장 개설 업체의 신용도와 담보를 확인한 이후 개설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수료는 거래 은행과 협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수료의 경우는 은행별로 대동소이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설 절차는 거래 은행을 가면 거의 대부분의 시중 은행은 신용장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용장의 개념〉

- 신용장 정의 및 개념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반 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입니다. 수입상을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 또는 은행자체의 결정에 따라 발행됩니다. 신용장은 수출상 또는 그 지시인이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의 이행 혹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 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약속하는 약속증서입니다.
- 신용장을 이용한 수입국(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 절차
계약체결 → 수입승인 → 수입신용장 개설 → 운송수단 수배 및 해상보험 가입 → 선적서류 검토 및 대금결제 → 수입신고(통관) → 물품반출
- 유의사항
신용장을 개설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수익자는 다음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신용장 상 조건들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수출을 진행하였다가 선적이나 매입의 시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하거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38. 인도네시아 업체와 무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업체입니다. 대금 수령시, 인도네시아 업체에서 한국 당사료 루피아(IDR) 송금을 진행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법과 관련하여 해당 송금 사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개정본 BI No. 21/15/PBI/2019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은행은 루피아화를 직접 국외로 송금하는 것을 금지한다. 해외 송금을 위해서는 먼저 IDR을 USD로 변환한 후 송금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9. 이번에 신규 거래하는 바이어가 T/T거래 방식을 요구 했는데, 괜찮을까요?

인도네시아에서 결제방법은 국제관례상 인정되는 한 수입자와 수출자와의 계약에 의해 신용장(L/C), D/P, D/A, 선금지급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됩니다. 결제통화로는 미달러 및 유로화, 일본 엔화 등 20여 개국의 통화가 지정됩니다. 큰 거래에는 L/C를 주로 사용하지만 소액의 거래에는 T/T가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시 T/T 거래 제의를 받아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T/T 이용 시 대금의 일부는 계약할 때, 잔금은 선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거래처와의 거래 시 무역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대금 결제 용어 설명〉

- Advance Payment(선금) : 물품 주문 전에 수출업자에게 직접 대금 지불 방식
- Open Account(청산결제방식) : 수출업자가 사전에 물품을 선적, 수입업자가 물품 수령 후 대금 지불 방식
- Consignment(위탁판매) : 최종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중개업자(수입업자)에 물품을 인도하며, 물품이 최종 판매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이 수출업자에게 귀속
- T/T : Telegraphic Transfer.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인데 대금을 먼저 결제하는 것
- L/C : Letter of Credit. 신용장을 뜻하며, 원활한 대금결제를 위해 수입업체가 은행에 요청
- D/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은행의 보증 없이 수출자가 발행하는 화환어음 인수만으로 선적서류를 내주는 것

Q40. 무역 사기 업체한테 송금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무역 사기라고 인지한 순간, 인보이스에 표기된 인도네시아 거래 은행(계좌번호를 발부한 은행)에 즉시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이후 거래 은행에서는 해당 건을 사건을 사기 의심 사건으로 접수하고, 접수 번호를 발부합니다.

해당 은행은 의뢰자(대리인 포함)의 신분증 사본, 송금증, 인보이스, 한국 경찰서 신고 확인서, 인도네시아 경찰서 신고 확인서 등을 요청하게 됩니다. 서류가 완벽히 구비된 후 은행에서는 검토를 실행합니다. 은행의 송금 사기 처리 부서의 검토결과에 따라 현지은행 즉 수신 계좌에 해당 자금이 수신 계좌에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계좌 차단 후, 자금 억류 및 피해자로 재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송금 직후여야 송금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송금 이후 상당 시일이 경과할 경우 송금한 금액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거래 중이거나 공인된 거래처가 아닌 경우, 제품 또는 대금 거래 및 송부 전 및 직후에 거래처와 연락을 직접 취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담당자 명, 직위, 핸드폰과 같이 바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의심이 가나 인도될 제품에 대한 송금을 진행했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하는 것이 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송금 후 전화 연락을 하였는데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KOTRA는 형사 사건을 직접 또는 대리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이와 관련해서 대사관의 영사과 및 한인회를 접촉해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역 사기 피해 관련 유관기관 연락처〉

문의처	담당 소관 업무	접수 방법
KOTRA	(상담)피해사례 접수, 확인 및 해결 방법 안내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게시판 (www.kotra.or.kr) - 대표번호 : +62-21-574-1522 - 이메일 : KOTRA 온라인 무역 투자상담 게시판
한국무역보험공사	(상담 및 실행)거래처 신용도 조회 업무	- 대표번호 : +62-21-570-5565 - 이메일 주소 : yjc0347@ksure.or.kr

주인도네 시아 한국 대 사관	(실행)영사 업무 (경찰 영사 포함)	- 영사과 대표전화 : +62-21-2967-2580 - 당직전화 연락처 : +62-811-852-446 (16:30 이후부터) - 대표이메일 : koremb_in@mofa.go.kr
재인니 한인회	(상담)민원 상담 및 실무적인 팁 제공	- http://www.innekorean.or.id/hanin/ - 대표번호 : +62-21-521-2486 - 이메일 : innehaninhoe@gmail.com

[인증]

Q41. BPOM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정보를 알아야 하나요?

식약청 인증이 BPOM 인증으로도 통용됩니다. 대상 품목에는 기본적으로 의약품, 의약외품, 전통의약품,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식품, 화장품이 있습니다. 통상 화장품, 식품의 인증이 2개월~1년 사이로 가능한 반면, 의약품 전통의약품 및 건강보조제품의 경우 길면 2년까지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등록 허가 요건 사항을 사전 준비와 요구 조건 사항을 충족 시에는 허가에 소요 되는 기간은 평균 일반 가공 식품 경우 평균 3~4개월, 전통의약품 및 건강 기능 식품의 경우 8~12개월 내에도 완료가 되는 점을 참고하여 인도네시아 식약청 기준에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품의 식약청 등록은 <http://aero.pom.go.id>나 www.pom.go.id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식품(일반 가공 식품)

- 인허가의 절차 및 소요 기간 : ① 수입사의 등록(아이디 부여), ② 제조사의 등록, ③ 개별 제품의 접수 신청, ④ 제품의 안정성 및 제조 및 재료 심사, ⑤ 제품의 포장 디자인 심사등의 절차를 거쳐 보통 3~4개월에 서류적 보안 보충 필요에 따라 6~12개월도 소요 됩니다.
- 등록 접수 비용 : 일반 가공 식품은 300,000루피아 또는 카테고리에 따라 500,000루피아가 식약청에 심사 등록비로 납부해야 심사가 진행 가능하며, 제품의 광고 기능성 표기가 필요할 경우, 광고 대상 기능성 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3,000,000루피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주요 유의사항 : 인도네시아 식약청이 해외 제조사의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 사항을 점검 직접 점검 확인 할 수 없음에 따라, 제조사의 HACPP 또는 ISO22000의 사본이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제출 되어 심사 평가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시험검사 성적서와 관련, 제조사의 자가 시험 성적서용도 필요하지만 외부 시험 검사 기관이 인정한 기관의 시험 검사 성적서가 추가 제출 되어 합니다. 이때 식품 카테고리별 주요 의무 미생물 및 중금속 검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기준이 국가 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시험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비용 절감 및 시간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 전통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 인허가의 절차 및 소요 기간 : 일반 가공 식품의 등록 절차와 유사하나 허가 대상이 일반 식품 보다는 제조의 관리와 제조의 기술 안정성 및 제품의 기능성 검증 자료 등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이와 관련한 요구 사항도 많은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심사 기간은 제반 서류가 완전히 구비됐다는 가정하에 6개월 이내에도 가능하지만, 심사 요건과 평가 항목이 많은 관계로 식약청에 서류 내용 수정 및 추가 서류 요구로 인하여 평균적으로 1년 이상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 등록 접수 비용 :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10,000,000루피아이며, 전통의약품의 경우 15,000,000루피아 입니다.
- 주요 유의사항 : 특히 제조사 등록시 필수적으로 GMP 사본의 공증을 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등록 후 개별 제품의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 기능 식품 제조용 GMP의 경우 추가적으로 SMF(site master file)을 정부 당국에 제출 하여 WHO 기준 적합 여부를 별도로 심사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PICs GMP (제약) 보유 제조사일 경우는 바로 제조사 등록 승인을 받아 개별 제품 접수와 심사가 가능합니다. Stability Report, 즉 안정성 평가 보고서로 인도네시아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속성 조건에서 Acceleration test : $40^{\circ}\text{C} \pm 2^{\circ}\text{C} / 75 \pm 5\% \text{RH}$ 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자료가 보고서로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Long-term Test : $30 \pm 2^{\circ}\text{C} / 75 \pm 5\% \text{RH}$ 관련, 활성 재료와 보조제 또는 첨가제로 구성에 활성 재료의 대상은 재료별 Assay 사항과 검사 결과가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즉, 안정성의 유지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 화장품

- 인허가의 절차 및 소요 기간 : 일반 가공 식품과 유사하며, ① 수입사의 등록(아이디 부여), ② 제조사의 등록, ③ 개별 제품의 접수 신청, ④ 제품의 안정성 및 제조 및 재료 심사의 구성으로 포장 디자인의 심사가 사전 평가가 아닌 등록 후 사후 관리에서 점검 평가가 됩니다.

인허가 등록 기간은 제조사의 등록 업무에 1개월 이내, 제품의 심사 4주 이내로 구성 되어 있으나 식약청의 업무 일정에 따라 추가 소요도 됩니다. 현재 신규 등록의 경우 평균 3개월이내 완료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경우는 서류 기본 요건 사항으로 제품의 명칭, 재료의 화장품 사용 가능 기준 적합 부분만을 우선 기준으로 심사하여 허가를 신속하게 내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사후 관리제에 따른 화장품 관리 서류의 보관 관리는 식약청 등록 유지에 매우 중요 합니다.

- 화장품의 등록 비용 : 아시아, 유럽, 미주 등으로 지역별 구분하게 되며, 한국은 아시아에 포함됩니다. 구분 코드는 NA 로 표기되며, 등록 접수 납입금은 1,500,000루피아 입니다.
- 주요 유의사항 : 화장품의 허가 심사가 비교적 다른 품목에 비하여 간소화 되어있는 편이나 새로운 원재료 등록이 필요하거나, 제품의 명칭에 대한 평가와 또 그 기능성의 입증 자료 요구에 따라 심사 기간이 추가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제품의 시험 성적서의 화장품 유형에 따른 미생물 및 중금속 검사 항목과 그 기준이 적합하여야 하며 이에 보편적으로 인도네시아 시험 인정 기관에 의뢰 하시어 검사를 받으심이 업무의 편리성과 비용적면에서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식약청의 사후 관리차원에서 식약청으로부터 등록 허가가 완료된 제품에 대한 Data Information Product서류 관리 부분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됩니다.

(추가 안내 사항)

- 주요 주의사항 : 현재 화장품의 수입 및 유통업의 신규 등록 대상 업체는 기존 참고 점검 평가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24일부터는 BPOM No.12호 제19항 2020년의 수정 규정 시행으로 최초 화장품 등록 온라인 시스템의 최초 수입사의 등록을 위해서는 참고 점검과 참고 관리 서류 사항의 현장 심사 후 확인서인 PSB(Pemeriksaan Sarana Balai) 지방 관할 식약청(BPOM)에 신청

및 절차를 받아 서류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 제품의 개별 제품 허가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에 수입사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의무 사항은 기존 법령에는 내국 제품을 취급시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를 수입품을 등록 취급하는 유통사로 확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사전 참고 유통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참고 점검 확인서를 미 보유한 기업들에게는 단계적 점검 실사가 진행될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DIP 구성서류〉

제품 정보 서류집으로, Data information product의 약자입니다. 해당 제품별 제품에 대한 스펙, 사용 전성분 재료에 대한 스펙과 제조 공정 등의 기술서류, 허가서 사본, 포장 디자인, 라벨 표기 사항 등을 일괄 순차적 정리하여 제품별로 편철해야 합니다.

〈참고 : 식약청 인증에 관한 식약청장령 BPOM No 30/2017의 주요 내용〉

● 수입 요구 사항

- 수입 식품 및 의약품에 유통 허가 (Izin Edar)를 받아야 함.
- 유통 허가를 받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수입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수입업자는 식약청장으로부터 수입 승인(SKI, Surat Keterangan Impor)을 받아야 하고 수입 승인의 신청 횟수는 수입 시 1회이며 자유무역지대, 자유항 지대, 보세공단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적용됨.
- 의약품,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제, 화장품의 경우 유통기한의 최대 1/3가 남아있어야 하고 백신, 면역 혈청, 항원, 호르몬, 혈액 관련 제품, 건강을 목적으로 한 발효제품 등 생물학적 제품의 경우 최소 9개월 이전에 수입돼야 하며, 일반 가공 식품의 경우 유통 기한의 최대 2/3가 남아있어야 함.
- 해당 품목군 : HS Code 04, 13, 16, 17, 18, 19, 20, 21, 22, 30, 33, 34, 38

● 등록 절차 및 필수 서류

- 의약품 및 식품의 수입은 대리인의 유통 허가권을 보유하는 자만이 가능

- 유통 허가증을 보유한 제약산업체는 유통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질 승인을 득한 후에 다른 제약산업체 또는 도매업자를 수입업자로 지정할 수 있음.
 - SKI 신청 업자는 식약청 웹사이트(<https://e-bpom.pom.go.id/>)와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www.insw.go.id)를 통해 수입 승인을 신청해야 함.
 - 수입승인(SKI) 신청 구비 서류
 - 수입 승인 신청자는 수입업체 사장으로부터 위임장 원본을 득해야 함.
 - 수입업체 직인이 날인된 신청서 원본
 - 수입자 고유등록번호(API), 납세자 번호(NPWP), 사업자 록증(SIUP) 사본
 - 수입승인(SKI) 신청보조서류
 - 제품 등록 허가(인증) 공식 레터 (NIE : Nomor Izin Edar)
 - 시험분석증명서(COA : 제조사의 자가 시험 증명서), 송장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 납세 증빙(NPWP) : 온라인 시스템의 국세청 연동으로 따로 제출 필요는 없으나 세무 신고 미비시 자동으로 차단, 수입신고 신청 업무 불허(자동 거절 안내)
 - 성분분석증명서에는 제품명, 조항에 따른 제품 검사 결과 분석 방법, 제품 생산날짜 코드(batch number), 로트 번호(lot number) 생산 코드, 생산일자, 유효기간 등이 표시돼 있어야 함. 또한 시험 검사 항목은 각 제품의 카테고리 별 의무 시험 검사항목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백신 제품 수입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함. 백신이 각 진입에 대해 승인 된 원산지 기관의 기관으로부터의 배치 또는 로트 공개 증명서 및 제조자가 발행한 요약 배치 또는 로트 프로토콜
 - 서류를 구비한 후 인증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3개월 내 외임.
- 수입 승인 사항
- 서류는 제출 후 근무일 기준으로 최대 3일 이내에 평가되며, 추

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최대 3회 까지 서류를 보완 제출할 수 있음. 신청자가 기한을 초과하면 이전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돼 신청자는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수입 인증서는 신청자나 INSW(Indonesian National Single system Window)가 인정하는 다른 중개기관을 통해 발행될 수 있음.
- 특히 e-bpom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의약품 통제센터 및 식품에 대해 수입 승인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식약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이뤄짐.

● 서류 관련 사항

- 의약품 및 식품 수입에 대한 서류는 수입 승인을 신청하는 의약품 및 식품 유통 허가증 소지자가 향후 최소 3년간 제대로 구비하고 있어야 함.
- BPOM은 수입 승인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 불시에 표본 조사가 가능

● 재수입

- 인도네시아로 의약품 및 식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명시된 대로 수입을 이행해야 함.
- 해당 제품 재수입 시 의약품과 식품 원자재의 인도네시아산 여부 및 재수입 사유를 명기한 수출증명서를 동봉해야 하며, 해당 수출 증명서는 식약청 또는 관련 대행기관에서 발행돼야 함.

● 통관 후 관리 제도 (2018년 2월 1일부 신설)

- 식약청(BPOM) 인증은 BPOM No 30 Tahun 2017을 통해 SKI를 SKI Border 와 SKI Non-Border 2가지 종류로 분류하였으며, 작년에 발표된 법령에 하나로 통합한 것과는 다른 부분임 .
- 또한 BPOM No 4 Tahun 2017에는 수입 대상 품목에 대해 나열이 되었으나, BPOM No 30 Tahun 2017에는 수입 제한 리스트가 수록되어 있음. 통제 시점 (세관 통관 전 또는 후)을 기준으로 수입 품목이 나뉨.
- SKI Border : 제약, 백신, 허브의약품 등

- SKI Post Border :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의약외품(일부), 가공 식품 등
- 무엇보다도 SKI 신청자는 PNB(세외수입내역)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기존법과 변경된 내용임.

Q42. SNI 인증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SNI란 Standar Nasional Indonesia의 약자로 제품의 규격과 생산 과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규격 인증의 줄임말로, 인도네시아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내수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이 국가 규격은 국제품질보증 ISO 9000을 근간으로 설계됐습니다. 해당 인증은 ISO 등 여타 공인된 국제 표준화 인증과 유사하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SNI를 강제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ISO 인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SNI 인증을 신규로 획득해야 합니다. SNI 강제인증 대상 제품이 아니어서 인증 취득이 불요함에도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인증을 받기도 합니다.

SNI 분류는 Type 1a, Type 1b, Type 2, Type 3, Type 4, Type 5, Type 6, Type N 등이 있으며 2019년 4월 2일 BSN홈페이지 기준, SNI 인증 발급 리스트에 등재된 품목 4,540건 중 거의 대부분은 Type 1b 또는 Type 5입니다. 장난감, 영유아용품은 Type 1b에 해당하며 양면기, 시청각용 전자제품, 식용소금, 카카오가루, 라면, 생수, 타이어, 선풍기, 펌프, 파이프 등의 산업용 장비 등은 Type 5에 해당합니다. 인증 종류 별로 준수해야 하는 적합성 평가 관련 활동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종류별 수반되는 비용 및 소요 기간은 서로 상이합니다.

SNI 인증 신청은 인도네시아 소재 수입업체 또는 인도네시아 소재 제조업체가 할 수 있으며, 해외 업체가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업체 등 인도네시아 소재 사업자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SNI 인증 준비 서류, 소요기간, 발급 비용, 발급 절차는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SNI 인증 기본 정보〉

● 발급 절차

- 1) BSN 웹사이트에 등록된 SNI 인증 표준 목록을 통해 SNI 인증을 받

으려는 품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해당 목록은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sispk.bsn.go.id/SNI/DaftarList>

2) 해당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발행해줄 수 있는 시험인증기관 (LSPPro)을 확인할것.

* 해당 LSPPro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국가 인가위원회(KAN)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관이어야 함.

▶ KAN의 인가를 받은 LSPPro의 종류, 소재지, 인증 진행 가능 품목 등은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 <http://sispk.bsn.go.id/LPK/LembagaSertifikasi?jns=6>

3) 수입업자 등 인증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공증받은 기업 정관 사본, 영업허가(SIUP), 납세자 고유번호(NPWP), 사업자 고유번호(NIB), 특허청으로부터의 브랜드 등록 증명서(상표 출원서 사용 가능) 등 요구 서류를 제출해야 함.

4) LSPPro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완성도 및 기업에 대한 검토를 실시

5) 제조 공정 평가 및 제품 표본을 시험 검사하는 과정을 포함한 관련 운영시스템이 평가

6) 닷째와 다섯째 과정에서 수집한 서류와 표본 검사, 제조공정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7) SNI 인증 발급 및 사후 관리*

*사후관리의 경우 인증 발급 후에도 이뤄지는 별도 시험검사에 해당하며, type 1 은 매 선적시마다 배치 당, type 2의 경우 매 년마다, Type 3의 경우 매 6개월마다, Type 4의 경우 1년, Type 5의 경우 1년마다, N타입은 정해진 기간이 없는 것으로 조회됨.

● 준비 서류

- 초기 신청시 필요한 행정서류에는 신분증(KTP) 사본, 납세자 고유번호(NPWP), 영업 허가증(SIUP) 사본, 회사 정관 (Akta Pendirian), 사업자고유번호(NIB), 브랜드 등록 증명서 (Bukti Pendaftaran Merk), 품질 가이드(Paduan Mutu), 제조 및 유통과정 플로우(alur proses produksi dan distribusi) 등의 서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시험검사와 관련된 기술적인 서류들이 제출해야 하며 세부 서류에 대해서는 시험인증기관(LSPPro)에 문의가 가능.

● 소요 기간

- 모든 서류가 갖춰졌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되는 기간은 근무일수 기준 41일이나 이는 시험검사 기간을 제외한 행정 처리 기간이며, 모든 과정이 포함될 경우 길게는 1년 내외가 소요될 수 있음.

● 발급 비용

- SNI는 인증 취득 비용은 인도네시아 기업 뿐 아니라 외국기업들 사이에서 비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비용 관련 참고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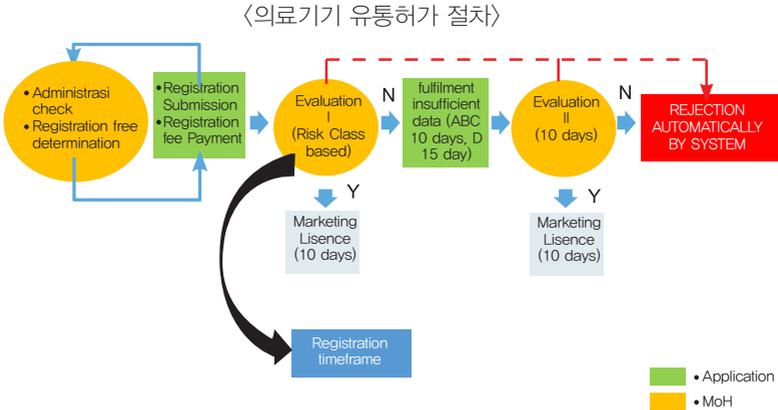
- ① 중부 자바에 소재한 TV 조립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한 인도네시아 사업가는 전자제품과 관련, SNI를 취득하는데 3가지 품목에 드는 시험검사 비용이 총 1,350만 루피아이고, 전체 비용은 총 2,820만 루피아가 들었음을 언급했습니다. 상기 사례는 해당 업체가 직접 인증과정을 진행한 경우로, 국내산 제품에 대한 인증 비용이며, 해외 소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상으로 SNI 인증을 진행하는 경우 3~4배 가량 비싼 것으로 추정됩니다.
- ② 품목별로도 적용 검사 및 모니터링 활동이 달라 SNI 인증 비용에 차이가 있고, 만일 해외 기업이 인증대행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적게는 1만 달러에서 많게는 3만 달러까지도 소요된다는 것이 최근 업계의 의견입니다. 단, 비용은 사례별로 다를 수 있어 대략적인 비용 추산용으로만 활용하며 정확한 비용은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에 따릅니다.

Q43. 의료기기 유통허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 의료기기 유통허가 개요 및 필요 서류

의약품의 유통을 위한 식약청 등록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도 유통을 위해서는 보건부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또한 사전 시장 통제 절차와 사후 시장 통제 절차가 적용됩니다. 사전 시장 통제 절차에는 제조허가, 유통허가, 등록면허가 포함됩니다. 특히 제조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업체는 반드시 ISO 13485 또는 ISO 9001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GMP, CoA(분석증명서), 안전검사, 기타 기술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사후 관리 절차에는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샘플링, 광고 등이 포함돼 있

습니다. 의료기기 유통허가에 기존에 적용되었던 No 1190/Menkes/Per/VIII/2010 의 법령은 2018년 1월 13 일자로 발효된 보건부 장관령 2017년 제 62호(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67 TAHUN 2016)로 대체됩니다.



자료 : 보건부

● 의료기기 유통허가 접수 등록 기간 및 유효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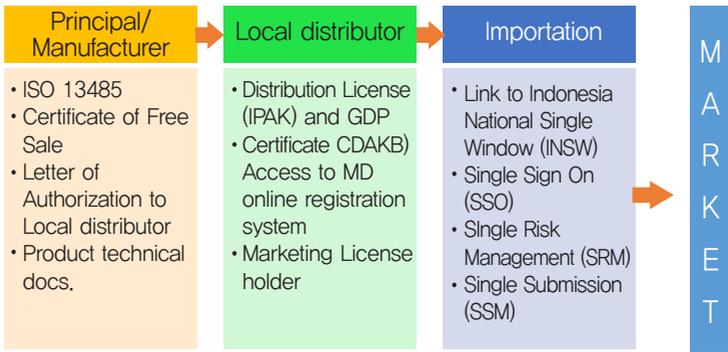
보건부 장관령 2017년 제 62호에 따르면 의료기기 유통허가(Izin Penyalur Alat Kesehatan- IPAK) 는 최대 5년이며, 보건부에 개별 제품 등록을 위하여는 의료기기 유통 허가를 보유한 현지 유통업자에 발급된 위임장(LoA)에 명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효력을 발휘하며 LoA 상 최소 기간은 2년이고 연장을 위해서는 유통허가 만료일 기준으로 9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유통허가를 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6~8개월 소요가 되며, 의료기기 유통허가의 조건에는 약학 또는 화학 전공자 또는 약사 면허 소유자가 유통 책임관리인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기 유통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현지 내국인 지분이 51%이상의 조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로 외국계 100% 투자 법인은 신청 불가 - 단 의료기의 제조 생산은 가능)

● 의료기기 유통허가와 OSS 시스템

인도네시아는 2018년 7월 초에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을 론칭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2018년 7월 12월에 보건부 장관령 2018년 제 26호(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26 TAHUN 2018) 발표하여 의료기기 유통허가 신청 절차에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 분야 규정 24개가 변경 되었으며, 이 중에는 보건부 장관령 2017년 제 62호에 제시된 의료기기 등록절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내용에는 변동은 없으나, OSS 기반의 상업/운영 면허 등록절차가 적용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의료기기가 수입되는 과정은 제조업자 요건 충족→ 현지 유통업체 요건 충족→수입 등의 과정을 거쳐 수입 유통기기가 현지 시장으로 유통되는 것입니다.

〈의료기기 인증 수입 절차 도식〉



자료 : 보건부

● **의료기기 등급별 등록 기간 및 행정수수료**

보건부 장관령 2017년 제 62호를 통해 A 레벨 제품 등록절차 기간은 45일, B, C 레벨 제품은 90일, D 레벨 제품은 120일이 소요되며 이는 근무일수 기준이 아닌 달력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의료기기 유통허가를 받기 위해 구비된 모든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을 때입니다. 보건부 측이 제시한 등록에 수반되는 행정 수수료는 신규를 기준으로 A 레벨 115 달러, B, C 레벨 230달러, D 레벨 370달러이며, 재등록 또는 갱신의 경우는 A 레벨이 40달러, 나머지 B, C, D 레벨은 75달러입니다.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유의할 점은 제품의 등록 심사에 있어 제조사의 인증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나 특히 제품의 기능성 표기 사항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부족할 경우, 서류 유효성 입증과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능성에 대한 광고 표기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의 안정성 평가 시험 보고서가 중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Q44. 신 할랄 인증 제도(기존 MUI 인증 유효 여부, 발급 절차 등)에 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신할랄인증 개요

지난 2019년 10월 17일부터 신할랄인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할랄인증 온라인 시스템은 halal.go.id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와 할랄보장청(BPJPH)의 시스템 준비와 세부 시행 규칙 시행 준비의 부족으로 할랄인증 의무화는 5년 추가 유예되었습니다. 다만 5년 후부터인 2024년 10월 17일부터는 계도기간 종료되는 품목이 발생함에 따라 신청이 지연될 수 있어 여유를 갖고 사전에 인증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할랄보장청인 BPJPH와 할랄 심사기관인 LPPOM MUI 측에 확인해 본 바로는 현재 온라인 시스템의 정비 및 준비로 접수는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접수 사항 회신에 2~3주가 소요되며, 해당 청을 접수 등록에 대한 기본적 현안 안내만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BPJPH에 할랄 인증 접수시 등록 신청 요건 규정에 맞추어 서류 준비하여 이메일을 통해 신청을 한 후 평가 검토 후(7근무일 내) 접수 확인서인 TAN DA TERIMA DOKUMEN PERMOHONAN SERTIFIKAT HALAL 를 심사기관인 LPPOM에 제출시에만 할랄 인증 심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이 없을시 인증 심사 개시가 불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제조사는 LPH(할랄 심사기관)을 리스트에서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도네시아 국내외 할랄 심사기관은 LPPOM MUI만 지정 가능하며, 추가 LPH의 지정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외 국가의 제조사들은 LPH 심사기관으로 LPPOM MUI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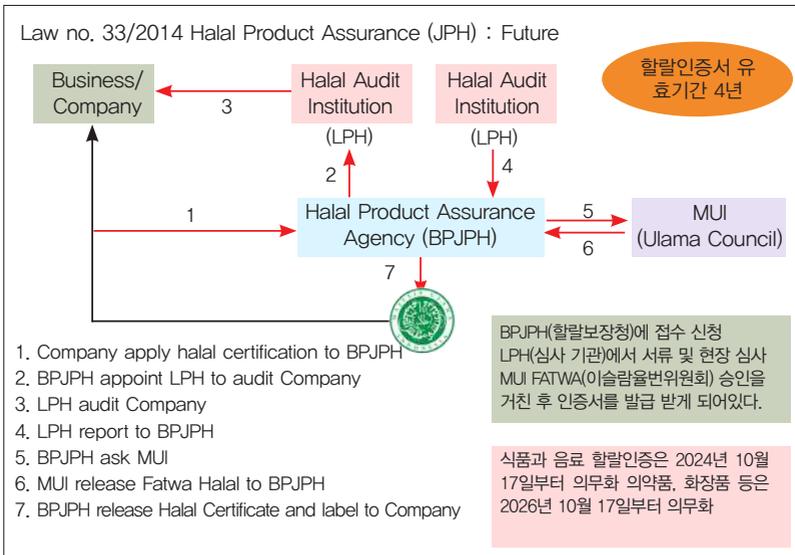
2020년 4월 20일부로 LPPOM에서는 할랄 인증의 명칭이 certification halal 에서 halal decree 로 명칭 변경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certification(인증서)의 발급업무가 BPJPH로 이관이 되면서 그간 협의를 거쳐 조정이 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할랄 인증의 신청을 위해서는 BPJPH로

의 접수를 통해 접수 승인 확인서를 발부받아 이를 LPPOM에 제출되어야 할랄 인허가 발급을 위한 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신할랄인증 유효 기간 및 진행 절차**

신할랄 인증서는 할랄 보장법에 따라 유효기간이 4년이나 기존 LPPOM의 MUI 에서는 2년의 유효기간을 계속 주장하는등 유효 기간에 대한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있어 BPJPH에서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할랄 인증서를 아직 발급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PPOM 에서 신규 halal decree로 식약청 등록시 할랄 효력은 인정됩니다.

〈 할랄 인증 인허가 프로세스〉



자료: BPJPH, 임준환 대표 보유

〈인도네시아 할랄보장법의 개정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요〉

- 할랄 보장법 시행령 2019년 31호 개정 주요 내용
 - 할랄보장청(BPJPH) 할랄인증 업무 실시
 - 2019년 10월 17일부터 할랄보장청(BPJPH)에서 할랄인증 발급 시작
 - 온라인을 통해서 할랄인증 직접 신청 가능

-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서 유효기간 4년이나,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MUI) 할랄인증서 유효기간은 2년
- 식품, 음료, 의약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공학제품, 착용 및 사용(활용)하는 물품 등 할랄 인증 의무화
 - 제품 범위: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할랄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 대상 품목은 화장품, 생활 가정 기능성 용품, 미용용품, 가공 식품,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유통, 도축, 금융 등의 분야를 넘어 생활 활동에 필요한 모든 분야가 해당됨.
 - 의무화 시기 :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는 신할랄인증서를 취득해야 함. 식품과 음료 할랄인증은 2024년 10월 17일 이후부터 의무화되고 의약품, 화장품 등은 2026년 10월 17일 이후부터 의무화*
 - * 다만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종류별로 차등 적용됨(의무 적용 시작 연도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상이)
 - * 식품, 화장품,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등급별 차등 적용, 의무 적용 시작 연도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상이), 의류·헤드기어(2026년부터), 생활용품(2026년부터) 등 또한 할랄성을 입증 받게 됨
 - * 계도 기간 전이라도 BPJPH를 통해 신 할랄 인증 프로세스 진행 가능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령 2019년 제 26호 32~33조에 세부 품목별 유효기간 상세 명시

제품 유형	계도기간
식품(식음료)	2019.10.17.~2024.10.17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	2021.10.17.~2026.10.17
의약외품(OTC)	2021.10.17.~2029.10.17
항정신성 의약품 제외 의약품	2021.10.17.~2034.10.17
화장품, 화학, 유전공학제품	2021.10.17.~2026.10.17
의류, 헤드기어, 악세서리	2021.10.17.~2026.10.17
가정용품, 이슬람 종교의식 도구, 문구류, 사무용품	2021.10.17.~2026.10.17
의료기기(A등급)	2021.10.17.~2026.10.17
의료기기(B등급)	2021.10.17.~2029.10.17
의료기기(C등급)	2021.10.17.~2034.10.17
그 밖의 비할랄 의약품, 생물제품, 의료기기 등	정의되지 않음

- 하람 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할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람 원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할랄인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함.
 - MUI 할랄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종료 3개월 전 할랄인증청(BPJPJH)을 대상으로 유효인증 신고 및 등록 의무를 준수해야 함
 - 계도기간(유예기간) 종료 이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제품 등록 시 할랄인증 대상 품목에 할랄인증이 없을 경우 제품등록이 불가능함. 즉 식약청 인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할랄인증이 필요한데 식약청 인증과 할랄인증의 발급 순서는 아직까지 정부 당국에서 결정 중임.
- 할랄, 비할랄 제품의 매대 구분
 - 슈퍼마켓 등 유통매장에 할랄매대와 비할랄매대를 구분해 판매
 - 계도기간 규정에 따라 식품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약품과 화장품 등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매대 구분할 것으로 전망
 - 매대 구분에 대한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돼 있어 할랄 미인증 제품에 많은 진출 애로가 예상됨.
- 할랄인증 등록 개념 변경
 - 할랄보장청(BPJPJH)이 상호 승인 협력하는 해외 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규 신청 필요 없이 별도의 등록과정만 거치면 된다는 시행령이 있음.
 - 한편, 아직 할랄보장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해외 할랄인증 기관이 없는바 이는 최종 기관 선정 심사에 MUI FATWA의 평가와 동의를 받아야 할 것
- 비할랄 라벨링 관리감독 강화
 - 가공식품 라벨에 관한 인도네시아 식약청장령(BPOM) 2018년 제 31호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아래와 같은 하람 성분 표기 관련 라벨링 준수가 요구됨
 - 신 할랄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해당 라벨링 관리감독이 더 철저해질 것임에 따라 이러한 라벨링 법규는 한국의 식약처 규정과도 다소 충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
 - 한국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

2016-149호))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재료를 표기하도록 돼 있음. 이를테면 돼지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돼지고기를 취급한 제조시설(원재료 창고 포함)에서 생산된 경우 알레르기 유발문제로 인해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함

-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 성분이 전혀 없더라도 한국의 법규에 따라 그러한 문구가 이미 부착돼있는 제품은 인도네시아에 들어올 때 더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치게 될 것

자료 출처 : PT GNF 임준환 대표 기고문

Q45. TKDN 개념, 적용 대상, 산정 방식, 미준수 시 패널티 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TKDN 개념

국산 부품 사용 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TKDN)) 제도는 인도네시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무역장벽 중 하나로, 2009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에 정부 프로젝트 및 정부 또는 공공기관 물품, 서비스 조달 시 지정 품목에 한해 자국산 콘텐츠 사용 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TKDN)) 인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18년 7월 13일에 조코위 대통령이 서명하고 7월 18일부터 발효된 자국산 콘텐츠 비중을 강화하는 정부 규제가 발표 됐습니다.(법령 넘버 : PP Nomor 29 Tahun 2018) 이 규정에는 제조업자는 반드시 제품 라벨에 국내산 콘텐츠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TKDN(자국산 콘텐츠 비중 확대)에 대한 주요 내용은 산업부장관령(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REPUBLIK INDONESIA NOMOR16/M-IND/PER/2/2011)에 소개돼있습니다. 기본적으로 TKDN의 자국산 콘텐츠에는 재화에 사용되는 국내산 원료 또는 부품 비중, 서비스의 국내 서비스 비중, 사업장 내 인도네시아인 종업원 비중, 생산 기계의 국내산 비중, 투자 국내 기업 자본 비율 등이 해당됩니다.

● TKDN 산정 방식

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REPUBLIK INDONESIA NOMOR 16/M-IND/PER/2/2011 TAHUN 2011에 명시돼있습니다. 산정 방식은 상품의 경우 원부자재, 투입 노동력, 간접 생산 비용 등이 산

식에 들어가며, 서비스의 경우 노동, 활용 도구 및 시설, 일반 서비스 등이 산식에 들어갑니다.

〈TKDN 산출 공식〉

분류	KDN	KLN	Total	% TKDN
원재료	(1A)	(1B)	(1C)	(1D)
노동	(2A)	(2B)	(2C)	(2D)
제조간접비용	(3A)	(3B)	(3C)	(3D)
생산비용	(4A)	(4B)	(4C)	(4D)

● **국내 부품 비용(Kandungan Dalam Negeri (KDN))**

직접 원재료 비용, 직접 노무 비용, 이외의 국내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용

● **외국산 부품 비용(Foreign Component Cost or Kandungan Luar Negeri (KLN))**

직접 원재료 비용, 직접 노무 비용, 이외의 해외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용

산출 공식에는 하기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서비스 또는 상품 중 외국산 포함된 경우

$$- \% \text{TKDN (4D)} : \frac{4C(\text{총 생산비용}) - 4B(\text{KLN 생산비용})}{4C(\text{총 생산비용})} \times 100\%$$

● 서비스와 상품이 전부 국내산으로 구성된 경우

$$- \% \text{TKDN (4D)} : \frac{4A(\text{KDN 생산비용})}{4C(\text{총 생산비용})} \times 100\%$$

● **TKDN 최종 원산지 기준**

- 원재료 : country of origin에 기반
- 사업에 사용되는 도구, 시설 등 : 소유권 및 country of origin에 기반
- 노동력의 경우 국적에 기반

● **인도네시아 업체가 외국업체와 계약하여 공급하는 경우 TKDN 적용 여부**

TKDN 비율은 분야별 관련 법규에 근거합니다. 매 프로젝트 별로 관련

법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령 No 54/M-IND/PER/3/2012 의거, 정부, 지역정부, 원조자금, 해외투자비용을 근간으로 수행되는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로컬 콘텐츠 규정이 명시되었습니다. TKDN은 다음과 같은 인프라 사업에 적용됩니다 : 증기 동력 발전소, 지열발전소, 수력발전소, 천연가스 발전소, 통합 사이클(천연가스 및 가스 증기) 전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송전망, 하위 발전소, 배전망 프로젝트 등입니다.

산업부 장관령 No 65/M-IND/PER/7/2016 에 의거, 휴대전화, 휴대용 기기, 태블릿 PC 등 정보통신기기에 적용되는 TKDN 규정이 있습니다. 이 때, TKDN 산출에 들어가는 주요 요소는 제조, 개발 및 적용입니다. 각 요소별로 산출 공식들이 있으며, 제조 70%, 개발 20%, 적용 10%의 비중으로 산출됩니다.

발전소	발전 용량	자국산 콘텐츠 비중
수력 (Hydro-non storage pump)	15MW이하	부품 : 64.20%; 서비스 : 86.06%; 합산: 70.76%
	15MW 초과 50 MW이하	부품 : 49.84%; 서비스 : 55.54%; 합산: 51.60%
	50MW 초과 150 MW이하	부품 : 48.11%; 서비스 : 51.10%; 합산: 49%
	150 MW초과	부품 : 47.82%; 서비스 : 46.98%; 합산: 47.60%
지열 (Geothermal)	5MW이하	부품 : 31.30%; 서비스 : 89.18%; 합산: 42%
	5MW 초과 10 MW 이하	부품 : 21%; 서비스 : 82.30%; 합산: 40.45%
	10MW 초과 60 MW 이하	부품 : 15.70%; 서비스 : 74.10%; 합산: 33.24%
	60MW 초과 110 MW 이하	부품 : 16.30%; 서비스 : 60.10%; 합산: 29.21%
	110 MW 초과	부품 : 16%; 서비스 : 58.40%; 합산: 48.96%
태양 홈 시스템 (Solar Home System (off grid, stand alone))	단위 당	부품 : 39.87%; 서비스 : 100%; 합산: 45.90%
공동 태양광 발전 시스템(Communal Solar Power Sys- tem (mini grid))	단위 당	부품 : 34.09%; 서비스 : 100%; 합산: 40.68%

온그리드 태양광 발전 시스템 (On-Grid Solar Power System)	단위 당	부품 : 37.47%; 서비스 : 100%; 합산: 43.72%
---	------	--

● **참고사항(정부 지정 담당 기관)**

취급하시는 품목에 대한 자국산 콘텐츠 비중 및 등록 프로세스 관련 문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TKDN 담당 기관을 통해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T. Surveyor Indonesia	PT. Sucofindo (Perse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 Unit Bisnis Industri dan Fasilitas,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Lantai 7 Jakarta Selatan ○ 전화번호: +62-21-526-5526 (ext 863) ○ 담당자 성명 : Nasrul 또는 Er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 Unit Bisnis Strategi Pemerintahan, Bagian Verifikasi Keteknikan Jl. Raya Pasar Minggu Km. 34, Lantai 13 Jakarta Selatan ○ 전화번호: +62-21-798-3666 (ext 2424) ○ 담당자 성명: Sugeng Priyanto 또는 Syamsuri

[바이어 발굴 및 시장조사]

Q46. 무역관을 통해 현지 사업파트너 물색 및 시장조사가 가능한가요?

KOTRA에서는 해외 진출을 등을 원하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유료 시장 조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 및 수수료 안내〉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수수료 (VAT 별도)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①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수입 업체 조사 ②발굴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교신 지원(2개월)	30만원 (2~3개사 발굴 및 교신 지원) * 선입금 후 사전 조사 착수
항목별 시장조사	수요동향, 수입동향/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기타 등 조사	150,000원/항목 (예:수요동향+경제동향=300,000원)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기업 존재여부, 대표 연락처 확인 (*구매담당자 연락처 제공 불가)	연간 6개사까지 무료 *초과 신청 시, 건당 1만원의 별도 수수료 부과
원부자재공급선 조사	주사 신청 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3개사)	300,000원
거래선 관심도 조사	신청 고객이 보유한 해외 바이어리 스트에서 귀사 제품 수입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	바이어 1개사당 5 만원
맞춤형 심층조사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섭외한 현지 전문가(또는 전담인력)를 활용, 고객 요구에 맞게 수행하는 맞춤형 유료 심층조사 서비스	조사 내용 및 조사 방법에 따라 개별 협의를 통해 책정
수출대금 미결제 조사	무역보험공사(KSURE) 전용 서비스	무역보험공사 서비 스로 해당공사로 직 접 연락 요망

시장조사 서비스는 저희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며 관련 서비스 문의는 해외진출상담센터(전화: 1600-7119, 이메일 : byun@kotra.or.kr)로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7. 특정업체에 대한 정보 및 신용도를 알 수 있을까요?

잠재 파트너사의 신용조사의 경우 자카르타 무역관에서는 인도네시아 공식 사업자 등록 사이트인 법무인권부(ahu.go.id)를 통해 의뢰기업이 법무인권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만을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에서는 사업자/회사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법무인권부 정보는 우리기업의 현지 사업자 조회 문의 시 무역관에서 일차로 확인하는 정보원입니다. 그러나 법무 인권부에 등록된 사업자라는 것이 곧 이 사업자를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파트너사의 신뢰 여부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전문 기관을 통해 실사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 파트너사에 무역 사기로 의심되는 피해를 입은 한국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바, 무역관에 의뢰하셔서 업체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확인 작업에 불과하니 이점 양지 하시어 파트너조회에 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에서 시행하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동 홈페이지(www.ksure.or.kr)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 K-SURE의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소재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의뢰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
- 국외기업에 대한 심층조사가 필요하거나 신용조사에 기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무득이하게 실제 조사 소요기간이 변동 될 수 있음
- 보고서 종류 : ①일반현황, 신용등급평가정보, 수출보험이용정보 등에 대한 요약보고서(수출보험부보를 위한 등급책정용)와 ②요약보고서+ 신용조사보고서원본(추가 국외기업정보 확인용)으로 구성된 Full Report가 있음
- 비용 : VAT 포함 22,000원~99,000원 선으로 신청자 및 조사 의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소요기간 : 약 3주
- 세부 내용 : <https://www.ksure.or.kr/service/importer01.do> 에서 바로 확인 가능
- 문의처 : K-SURE 고객센터(1588-3884)

Q48. 특정업체와의 미팅을 주선해 주실 수 있나요?

방문을 원하시는 기관과 방문목적을 사전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을 경우 미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바이어 미팅을 요청할 경우 최소 3~4주 이전부터 섭외를 해야 원하는 시기에 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KOTRA 본사를 통해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사업” 을 출장 시기 최소 1.5개월 전에 신청하여 주시고, 이 점을 감안하여 출장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또한 KOTRA 해외시장 조사 서비스를 통해서 거래를 희망하시는 바이어와 매치메이킹 서비스를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사업 지원사항 및 수수료〉

KOTRA 본사 연락처(해외진출상담센터) : 02-3460-7348, 7346, 7213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연락처 : +62-21-574-1522

■ 지원사항

사업 유형	사업 안내	지원사업 선택	수수료 (VAT 별도)
해외 세일즈 출장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3~4개사)	*일반지원	50~70만원
		*프리미엄지원	100~140만원
해외 투자 환경조사 출장	해외투자유관기관 상담 주선(2개사 내외) - 현지 한국 투자업체, 투자유관기관, 투자대행 서비스기관, 로펌 등 상 담 주선"	*일반지원	50~70만원
		*프리미엄 지원	100~140만원

*일반지원 : 바이어 상담주선 3~4개사

*프리미엄지원 : 바이어 상담주선 3~4개사 + 통역 및 차량지원(공항 출영송은 제
공되지 않습니다)

일반지원의 경우 상담 주선시 KOTRA무역관 직원이 동행하지 않으며 프리미엄 지
원 이용시에만 무역관 직원 동행하여 바이어 상담 주선과 통역 및 차량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0년 3월 이후(코로나 19 발생 이후)에 사
업 비자 발급 애로 및 바이어의 화상상담 추진 등으로 인해 상기 사업 이
용보다는 KOTRA에서 제공 중인 긴급 지사화, 화상상담 지원, 온라인 유통
망 입점 지원, 산업별 온라인 상품관 프로그램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 바이어와의 비대면 네트워킹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9로 사업애로를 겪는 우리 기업인을 위한 KOTRA 긴급지원 대책〉

유형	긴급 지사화사업	화상 상담 지원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산업별 온라인 상품관
지원 기간	3개월, 필요시 3개월 단위로 추가 연장가능	코로나 19 대응기간 동안(별도 시기 시까지)		

유형	긴급 지사화사업	화상 상담 지원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산업별 온라인 상품관
지원 내용	필수 거래선 관리, 샘플 시 연 상담, 전시, 상담회 참가지 원 등 필수 거 래선 관리, 샘 플 시연 상담, 전시, 상담회 참가지원 등	해외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바이어 1:1 화상상담 지원(Zoom 무 료 제공), 화상 상담 통역 무 료 지원	입점 준비기업 지원부터 플랫 폼 입점 이후 인플루언서 활 용 전문 마케팅 까지 각 기업의 해외수출 및 마 케팅 역량에 따 라 차등 지원	온라인 상품관을 통해 국내 기업 상 품을 전시(해외 바 이어 대상 홍보), 바이어가 선택한 국내기업의 경우 바이오퍼 수신 가 능, 바이어가 1:1 상담 희망시 상담 지원 (상담장 및 통역 지원 가능)
참가비	75만원 (부가세 포함)	무료	입점 교육은 무료, 판촉전 및 기타 지원업은 참가비 발가능	무료
참가 신청 사이트	www.kotra.or.kr			www.buykorea. or.kr

Q49. 인도네시아 시장 정보를 무료로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온라인 상담

단시간 내에 답변이 가능한 기초 정보에 대한 수요가 있으실 경우 KOTRA에서 온라인 무역투자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담 게시판(<http://www.kotra.or.kr/접속 후 화면 중간의 온라인상담/빠른FAQ 클릭>)은 기업의 수출, 해외진출 및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과 KOTRA사업에 관련한 문의사항을 남기는 곳입니다.

단,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술, 학습 목적의 문의, 현지 한국 기업/한국인에 대한 평판 및 신인도 등에 대한 문의는 답변이 불가능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문의가 많은 자카르타 무역관(전 129개 무역관 중 2위, 2020년 기준)의 경우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기 전 ‘빠른FAQ’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어 발굴, 맞춤형 시장 조사 등 보다 심도있는 문의에 대해서는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46번 질의 응답 참고

● 시장 보고서

http://news.kotra.or.kr 에 접속하시면 인도네시아 시장 관련 각종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체 개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인도네시아 국가정보를 참고하시면 되시며, 시장 최신 정보를 열람하시고 싶으실 경우 해외시장뉴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원하시는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산업별 심층 보고서 등 각종 시장 보고서도 업로드 되어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도 무료로 보고서 다운로드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KOTRA 해외시장뉴스 메인 페이지〉



〈KOTRA 해외시장뉴스 포털을 통한 무료 개방 정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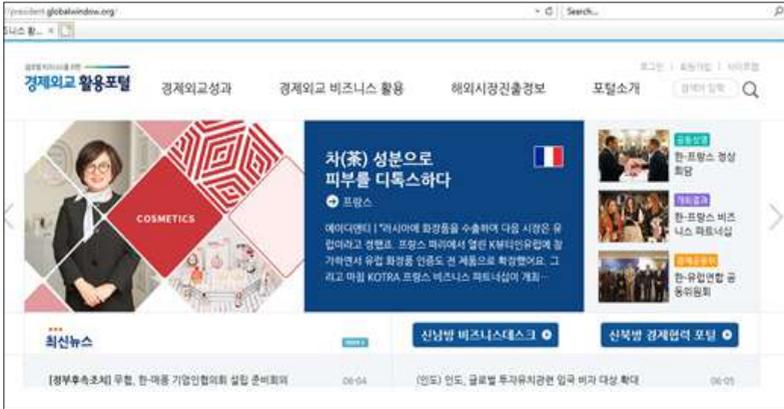
산업 · 상품 트렌드, 상품DB, 국별 주요산업, 국가 · 지역 주요 산업, 북한정보, 진출전략, 출장자료, 무역사기사례, 기업성공사례, 무역관 현장DB, 해외인증정보, 기업검색사이트, 전문조사기관, 국제무역통계(ITC), 심층보고서, 수출동향 등

● 데일리 속보

만일, 속보성 정보를 접하고 싶으실 경우 경제외교활용포털사이트 (<http://president.globalwindow.org/>)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 산업 관련 기사가 매일 업로드 됩니다. 하기 메인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파란색 “신남방비즈니스데스크” 버튼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신 후, 인도네시아 포함 신남방 국가의 각종 속보성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외교활용포탈 메인 페이지)



**Q50. 전문 조사를 원합니다. 컨설팅 업체가 어떤 것에 있는지요?
그리고 법률, 회계, 통관, 인증 등 한국인 전문 컨설팅 상담을 받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KOTRA 무역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컨설팅 사 수준의 연구 용역 및 조사의 경우 하기의 전문 조사 기관에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문 조사 기관

아울러, 법률, 세무회계, 통관, 관세, 인증 등과 관련하여서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문위원 (KOTRA 글로벌지역전문가)을 통해 초기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분야	컨설팅사	연락처
자동차, 항공, 제약	Frost&Sullivan	전화 : +62-21-3970-6737
생활소비재	nielsen	전화 : +62-21-2939-8100
헬스케어	IQVIA	전화 : +62-21-2953-7900
에너지, 광물자원, 세무·회계	PwC Indonesia	전화 : +62-21-5099-2901
세무·회계 (KOREA DESK 보유 컨설팅사)	PwC Indonesia	전화 : +62-21-5099-2901
	Deloitte	전화 : +62-21-5081-8000
	KPMG	전화 : +62-21-5799-5493
	BDO Indonesia (에일회계법인)	전화 : +62-21-5795-7300



Part 2. 투자 FAQ

1. 외국인 투자 제도
 2. 투자 절차
 3. 투자 관련 법규
 4. 투자 환경
 5. 노무 관리
 6. 조세 제도
 7. 현지 체류/비자
 8. 현지업체와의 관계
 9. 매각 청산 절차
- 

Part 2 투자 FAQ

[외국인 투자 제도]

Q1.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개괄적 제도를 알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투자를 내자투자(PMDN/Penanaman Modal Dalam Negeri)와 외자투자(PMA/Penanaman Modal Asing)로 구분하여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자투자는 100% 내국인 전용 투자이며, 외국인이 단 1% 혹은 1주라도 보유하면 외자투자가 됩니다. 내자투자는 거의 모든 업종에 투자를 허용하나 외자투자는 적지 않은 업종에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투자 금지 혹은 조건부 투자 허용에 관한 대통령령(Investment Negative List)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 아니면 내자투자 회사에서 외자투자 회사로 전환이 어렵지 않으며, 외자투자 회사에서 내자투자 회사로 변경은 모든 업종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투자법상의 투자인허가 등 인도네시아 투자업무는 투자조정청(BKPM/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Indonesia)이 전담하고 있는데 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자투자 승인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일반 업종에 대한 외자투자승인서는 투자조정청(BKPM), 은행업은 중앙은행, 일반금융은 재무부, 광업분야는 동력자원부에서 발급해 오다가 2018년 6월 21일 자로 온라인 통합 사업인허가 발급(OSS/Online Single Submission)에 관한 정부령 2018년 제24호를 공포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할 895개 인허가서를 온라인으로 OSS에 통합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광업분야와 은행분야 등 몇몇 업종의 외자투자승인서는 OSS에 포함시키지 않고 투자조정청(BKPM)을 통해 해당 부처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OSS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은 OSS에서 먼저 사업허가서(미유효)를 발급해주며, 투자를 이행하고 업종에 따라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에 미유효 사업허가서를 유효하게 하는 법정 구비요건을 제출하면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심사 후 OSS에서 발급한 사업 허가서가 유효하게 되는 방법으로 인허가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Q2. 인도네시아 외국인 직접투자 진출형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직접 투자하는 방법에는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투자하는 방법, 기존 내국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인수, 외국인이 지분 일부 혹은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 회사 설립 방법 투자는 모든 인허가서를 새로 받아야 하나, 기존 회사의 주식 인수 방법은 기존 인허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인허가서 수속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축이 되나, 지배권 이동을 야기 시키는 주주 변동 수속은 신규 회사의 인허가 수속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정밀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아울러서 신규 회사 설립 방법으로 투자는 우발채무 리스크가 전혀 없으나 기존 회사의 주식 인수 방법 투자는 우발 채무, 특히, 세무 우발 채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회사 인수 방법으로 투자자는 회사 존재의 적법, 인허가 적법, 소유권 적법, 분쟁 유무 등 조사를 현지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LDD(Legal Due Diligence, 법률실사)를 해보고, 세법상 세무 확정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해서 현지 회계전문가에게 의뢰해서 AA(Accounting Audit, 회계감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회사의 인도네시아 진출 형태는 투자 주체 및 경영 주체를 기준으로, 외국인과 현지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공동출자 공동경영 형태, 공동 출자했으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공동출자 단독경영 형태, 외국인이 현지인 참여 없이 단독으로 출자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단독출자 단독경영 형태가 있습니다.

1. 공동출자 공동경영 형태

현지 투자법상 외국인의 단독 투자를 불허하고 반드시 현지인 파트너의 참여를 강제하는 업종(예: 건설업, 농업, 원예업, 광업, 발전업, 의료기 유통업 등)이 있습니다. 현지 실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 현지인 파트너의 참여로 현지 국내 시장 진출 초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외국인과 현지인의 기준 및 경영 방식의 차이로 순탄 경영을 기대하기 힘들게 현지 실정입니다. 증자 및 업종 추가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결정과 업무처리 방식의 차이로 현지 법인 경영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은

형태입니다.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공동출자 공동 경영 형태는 극소수입니다.

2. 공동출자 단독경영 형태

현지 투자법상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는 업종에 현지인의 투자는 받으나 현지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인 파트너를 경영에는 참여시키지 않고 외국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경우로 현지인이 전체 주식을 몇 %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지인이 최소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총에서 해산, 합병 혹은 통합을 막을 수 있으며, 현지인이 최소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관 개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지인이 반대하면 상호 개정, 증자, 업종 추가, 소재지 변경 등 정관에 있는 중요 사항을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인이 최소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주주인 외국인 주주는 대주주인 현지인 주주의 동의 없이는 주총에 상정되는 어떠한 안건도 통과시킬 수 없게 됩니다.

3. 단독출자 단독경영 형태

투자법상 외국인 지분 보유를 100% 허용하는 업종에만 가능한 형태이나, 실제로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대부분은 단독출자 단독경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자법의 규제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로컬 파트너를 두고 실질적으로는 외국기업이 단독출자 해서 로컬파트너의 경영 참여 없이 외국기업이 단독경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로컬파트너의 간섭을 받지 않고 외국인이 경영에 전력투구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해외 진출의 필수 요건인 자금, 기술 및 시장을 다 갖추고 있는 회사는 단독출자 단독경영 형태 진출이 유리한 것이 현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법상 현지인과 합작을 강제하는 분야에 실질적인 단독출자 단독경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지법상 적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수적입니다.

Q3. 외국인 직접 투자시 사전에 숙지해야 할 주요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투자 허용 업종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허용하지 않은 업종(네거티브 리스트)을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자에게 투자를 허용합니다. 투자 하려는 업

종이 대통령령으로 100% 허용이 되고 있는지, 조건부로 허용이 되고 있는지, 투자 금지 업종인지 정밀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대통령령 상 불분명한 업종은 투자조정청(BKPM)에 서면으로 질의해서 확실한 답을 얻은 후 투자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많은 업종에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투자하려는 업종이 외국인에게 허용되고 있는지 사전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2. 업종 당 최소투자액

한 업종 당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최소 투자액이 100억 루피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설립인(주주)

설립인(주주)의 인원은 최소 2명이어야 합니다. 자연인이나 법인에 상관 없이 둘 이상이면 됩니다. 부부가 설립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민법과 혼인법의 제약을 받습니다. 설립인(최소 2명)이 공증인 앞에서 정관 초안에 서명하면 주식회사가 설립 됩니다. 외국어 정관을 허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인도네시아어 정관이어야 합니다.

4. 외자투자주식회사의 발행자본금

발행자본금이 최소 25억 루피아 이어야 합니다.

5. 상호 사전 승인 제도

현지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상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회사의 상호, 유사 상호, 국가 기관, 정부기관, 국제기관, 회사 설립 목적 혹은 업종과 다른 상호, 숫자의 나열, 의미 없는 글자의 나열, 주식회사, 법인 혹은 민사계약 상의 단체라는 뜻을 가진 상호의 사용을 금합니다. 상호에 숫자나 기호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최소 3단어 이어야 합니다. 외자투자회사에게는 외국어 혹은 인도네시아어 단어 상호를 허용 합니다(예: PT. Nambang Tambang Indonesia-남방광업주식회사). 공증인을 통해 법무부에 상호 승인을 신청하며 상호 사용 승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간 유효합니다.

Q4. 설립정관에 포함시켜야 하는 필수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설립 정관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하는 사항은 필수 기본 사항과 필수

기타 사항의 2 종류가 있으며, 주식회사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다른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기본 필수사항

- 상호 및 회사의 법적 소재지(시/군 표시)
- 설립 목적 및 업종
- 회사 존속 기간
- 수권 자본금, 발행 자본금 및 납입 자본금액
- 주식 수량, 주식의 종류, 주식의 종류에 따른 권리, 액면 가액
-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직명(호칭) 및 인원
- 주주총회 개최지 및 개최 절차
-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선임, 교체 및 해임 절차
- 잉여금 사용 및 이익 배당 절차

2.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기타 필수 사항

- 설립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설립인의 성명, 출생지(시/군), 출생년월일, 직업, 현주소 및 국적
- 설립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 법적 소재지(시/군), 현주소, 법무부장관의 법인 승인서 번호 및 일자
- 최초 피선된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성명, 출생지(시/군), 출생년월일, 직업, 현주소 및 국적
- 최초 주주의 성명, 주식 수량, 발행 및 불입된 주식 액면 가액

Q5.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업종은 무엇인가요?

인도네시아에는 외국인의 투자 불허 업종 및 외국인 지분 보유 한계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네거티브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4년 개정 후 2016년 5월 가장 최근 재개정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기간 산업을 제외한 투자 유치가 시급한 인프라 분야와 문화산업, 통신서비스 분야 등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직업훈련분야 등 자국민교육/육성분야의 투자 유치에도 역점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광/창조경제, 정보통신, 교통/운송, 보건/의료분야의 개방이 두드러지며 중소기업 백화점운영, 통신 콘텐츠 서비스, 인터넷 공급 서비스, 육로 승객 운송, 직업 훈련, 고압/초고압 전기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을 조정이 있었습니다.

전체 내용은 2016년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제 44호(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며 향후, 재개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의 한글 비공식 번역 자료는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홈페이지(kocham.or.id/자료실)를 통해 파악 가능합니다.

2016년 주요 분야의 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창조경제 분야 주요 변동내역

업종	외국인투자 허용비율	
	현재(2016년 발표)	이전(2014년 발표)
레스토랑	100%	51%
바	100%	49%
카페	100%	49%
체육시설	100%	49%
영화산업	100%	국내기업 한정, 49%
시설 박물관	67%	51%
시설 역사유적 및 건물	67%	51%
여행사	67%	49%
케이터링	67%	51%
2성급 호텔	67%	51%
1성급 호텔	67%	51%
무성급 호텔	67%	51%
그 외 숙박시설 (모텔)	67%	51%
스포츠 경기장	67%	49%
예술 흥행 서비스	67%	49%
노래방	67%	49%
회의 및 전시업	67%	51%
보호지역 외 자연명소 관광산업	67%	51%

2. 전자상거래 분야 주요 변동내역

업종	외국인투자 허용비율	
	현재(2016년 발표)	이전(2014년 발표)
통신 카페	100%	국내기업 한정
정보통신 장비 테스트	100%	95%
*전자상거래	100% / 49%	국내기업 한정
통신 콘텐츠 서비스	67%	49%
콜센터 및 기타 부가서비스	67%	49%
인터넷 공급 서비스	67%	49%
데이터 통신 시스템 서비스	67%	49%
공공 인터넷 전화 서비스	67%	49%
인터넷 상호 연결 서비스	67%	49%
통신망 서비스	67%	65%
통신 서비스	67%	49%
통신 서비스와 통합된 통신망 구현	67%	65%
*전자상거래 업종의 경우 투자액 1천억 루피아 이상일 경우만 100%허용, 1천억 루피아 미만일 경우 49%허용		

3. 교통/운송 분야 주요 변동내역

업종	외국인투자 허용비율	
	현재(2016년 발표)	이전(2014년 발표)
터미널 지원사업	67%	49%
공항 서비스	67%	49%
공항 관련 서비스	67%	49%
화물 하역 (해상화물 인도 서비스)	67%	49%
운송 관리 서비스	67%	49%
항공화물 운송 서비스	67%	49%
해외 항공 운송사의 일반 판매 대리점	67%	49%
육로 승객 수송	49%	국내기업 한정

페리/강/호수 항구 제공 및 운영	49%	정부지정기업과 협력
육로 승객 운송 업종의 경우 정기편은 도시/주/국가 간 교통수단을, 비정기편은 택시, 관광운송 등을 의미함		

4. 보건/의료 분야 주요 변동내역

업종	외국인투자 허용비율	
	현재(2016년 발표)	이전(2014년 발표)
제약 원료 산업	100%	85%
병원 경영 컨설팅 및 관리서비스	100%	67%
의료 지원서비스 (의료장비임대)	100%	49%
의료 지원서비스 (임상연구실)	100%	67%
의료 지원서비스 (건강검진)	100%	67%
의료장비 유지보수 및 교정검사	67%	49%

5. 무역 도소매 분야 주요 변동내역

업종	외국인투자 허용비율	
	현재(2016년 발표)	이전(2014년 발표)
네트워크(다단계) 판매	100%	95%
냉동창고	100%	33%
선물(Futures) 거래	100%	95%
유통업	67%	33%
창고업	67%	33%
400㎡~2,000㎡ 면적 백화점	67%	국내기업 한정
400㎡~2,000㎡ 면적 백화점 업종의 경우 쇼핑몰 내에 위치해야 함		

6. 건설/공공사업 분야 주요 변동내역

업종	외국인투자 허용비율	
	현재(2016년 발표)	이전(2014년 발표)
고속도로 운영	100%	95%

비독성 폐기물 관리	100%	95%
건설 컨설팅 사업	67%	55%

[투자 절차]

Q6. 현지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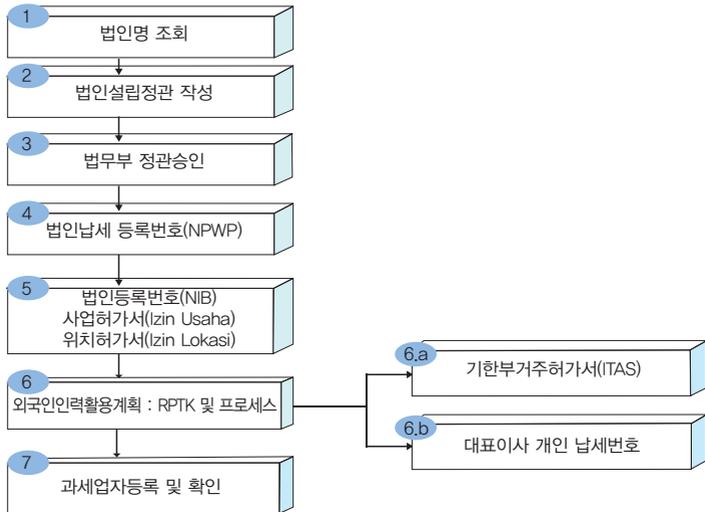
직접투자 방식 신규 외자법인(PMA: Penanaman Modal Asing) 설립기간은 1.5개월 ~ 2개월 소요되며 실제 업무를 위해서는 법인설립 이후 대표 이사의 체류 허가, 취업허가, 개인 납세등록증이 필요하므로 추가로 1~1.5개월 더 소요됩니다. 제조법인의 경우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환경영향평가까지 취득하는데 추가로 2~3개월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현지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이 설립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실 경우 기준 약 4~5천 달러 정도이나 사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상이하지만 법인설립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 인허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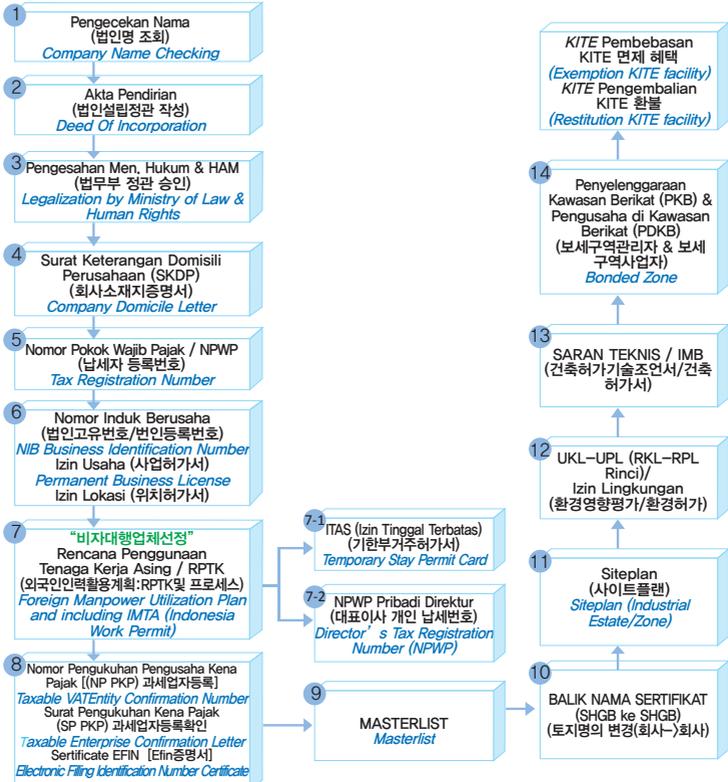
1. 현지법인 상호 사용 사전 승인(법인명 조회)
2. 현지법인 설립 정관 작성
3. 현지법인 설립 법무부 승인서
4. 납세의무자등록증(법인납세 등록번호 NPWP)
5. 출자증명서
6. 사회보장보험가입증명서
7. 사업 등록(NIB: 회사등록증, 수입업자 라이선스, 관세청등록번호)
8. 사업허가서(Izin Usaha)
9. 세무서 전자 파일링 번호
대표이사 개인 NPWP 발급 후 프로세스 가능
10. 부가가치세 과징사업자 지정서
대표이사 개인 NPWP 발급 후 프로세스 가능
11. 수입자본재 관세감면 승인서
12. 수입원부자재 관세감면 승인서
13. 노동부등록증

14. 투자 이행 보고
15. 회사 책임사항(Commitment) 완료 결과를 OSS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사업허가서 유효화
Commitment를 완료하여 OSS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사업허가서 재발급 받으면 책
임사항 완수에 대한 사항이 삭제되어 유효화된 사업허가서 발급됨
16. 외국인 임직원 고용계획승인서
17. 외국인 고용허가통보서
18. 비자 발급지시 케이블
19. 기한부거주 허가서
20. 외국인 숙박 경찰신고서
21. 외국인 임시거소증명서
22. 외국인 취업보고

무역법인 설립 절차도



제조법인 설립 절차도 (공단 설립시)



자료 : LSW 이소왕 변호사

주요 서류

1. 주주구성(인내) 주식회사 법 : 주주는 2인 이상이며 개인/법인 모두 가능함)과 지분률 구성 사항

- a. 주주가 법인일 경우 구비 서류
 1. 법인 사업자 등록증 영문 사본
 2. 법인 영문 정관 사본 (번역 공증한 것)

3. 법인 대표의 여권 사본
 4. 법인 대표의 영문 자택 주소
 5. 법인 e-mail 주소
 - b. 주주가 개인일 경우 구비 서류
 1. 여권 사본 (여권의 앞면: 사진/서명 페이지)
 2. 영문 자택 주소
 3. e-mail 주소 / 핸드폰 번호
 - c. 총 투자금액/ 납입 자본금 및 지분률 구성
(최소 투자금: 100억 루피아/최소 납입 자본금 25억 루피아)
- 2. 이사회/감사회 구성(인니 주식회사 법: 최소 구성은 이사, 감사 각각 1명임)**
- 이사/감사가 1명 이상일 때는 이 중 한 명을 대표로 선임한다.
- 구비서류
 1. 구성원의 여권 사본
 2. 구성원의 자택 영문 주소
 3. e-mail 주소 / 핸드폰 번호
- 3. 자본금 납입 확인서, 주소확인서, 정관서명 위임장**
- 4. 회사 상호명 (반드시 3자 이상으로 이루어진 3단어 이상)**
(예) PT, ABC NETWORK INDONESIA
- 5. 사업장(사무실 또는 공장) 매매/임대차 계약서, 전화 / 팩스번호**
- 6. 현지 사업 내역 (일부 업종)**
- a. 영문 공정도 (생산관련 업종)
 - b. 연간 생산량 (생산관련 업종)
 - c. 생산품 판매가격 (생산관련 업종: FOB 기준)
 - d. 수출입 상세품목 및 연간 수출입 예상 금액 (무역업)

자료 : LSW 이소왕 변호사

Q7. 대표 사무소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인도네시아의 대표사무소(KP: Kantor Perwakilan/RO: Representative Office) 또는 일반 연락사무소는 건설 대표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상업적, 영리적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시장조사, 정보수집, 홍보, 본사와의 연락 업무만 가능하며 수주, 입찰, 계약, 수출입 및 유통 등과 같은 영업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거나 영업이익이 발생한다고 의심되면 국세청에

서 조사하거나 납세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설립 허가는 업종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일반업종(금융, 항공사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회사 대표사무소 활동 허가(KPPA: Izin Kegiatan Perwakilan Perusahaan Asing), 인도네시아 수출입/유통에이전트의 경우 외국 상업회사 대표사무소 활동 허가(KP3A: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an Perdagangan Asing), 건설, 엔지니어 업종의 경우 외국 건설업 법인 대표사무소 허가(IPBUJKA: Izin Perwakilan Badan Usaha Jasa Konstruksi Asing)가 있습니다.

현지 변호사를 이용할 경우 법무법인 수수료는 약 3,000~ 3,500달러 소요되며 서류가 구비되면 약 3주 가량 소요됩니다. 일반적 절차 및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사무소 개설 허가서
2. 대표사무소 정관
3. 납세의무자 등록증
4. 지방법원 등록
5. 사회보장보험가입증명서
6. 세무서 전자 파일링 번호
7. 노동부등록증
8. 외국인 고용계획승인서
9. 외국인 고용허가서
10. 비자 발급지시 케이블
11. 기한부거주 허가서
12. 외국인 숙박 경찰신고서
13. 외국인 임시거소증명서
14. 외국인 취업보고

● 필요서류

1. 본사의 정관(영문, 공증)
2. 본사의 등기부 등본(영문, 공증)
3. 본사의 사업허가서(영문, 공증)

4. 지사장 임명장(영문, 공증)
5. 지사장 각서
6. 지사장 여권 사본
7. 지사장 이력서(영문)
8. 지사장 최종 학력 증명서(영문)
9. 수속용 위임장

Q8. 건설업 진출을 위한 절차 및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건설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방법은 외국건설회사의 대표사무소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과 합작 현지외자투자 주식회사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설 대표 사무소 및 법인 설립 절차 이전에 건설협회 가입과 건설등록증 취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1. 건설업 대표사무소

건설업 대표사무소는 사무소임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무소 형태로 진출하면 출자 없이, 인도네시아인 파트너 없이, 외국건설회사가 직접 인도네시아건설협회에 회원사로 가입하고 외국건설회사(모기업) 명의로 대형건설면허를 받고 건설사업 허가서를 받아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대형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 100%를 인도네시아인이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건설회사와 JO(Joint Operation) 조건으로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JO 조건은 프로젝트 시공 원가의 최소 50%를 현지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건설 시공의 경우는 프로젝트 계약금액의 최소 30%를 인도네시아 JO 멤버사가 수행해야 하며 건설 컨설턴트(설계, 감리, 인터리어디자인)의 경우는 프로젝트 금액의 최소 50%를 인도네시아 JO 멤버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외국건설회사(모기업)의 시공실적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어야 건설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규정상 대표사무소장이 반드시 인도네시아 국민이어야 합니다(해당 규정 아직 실효되지 않음). 대표사무소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3년 유효하며 3년 동안에 실적이 있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표사무소 허가 행정처리 비용은 단종시공대표사무소와 EPC 대표사무소는 US\$10,000이며 감리대표사무소는 US\$5,000입니다. 대표사무소는 복수 업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설립절차

1.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국토관) 추천서
2. 건설협회 가입
3. 건설면허 취득
4. 대표사무소 정관 작성
5. 법원등록
6. 사회보장보험 등록
7. 납세의무자 등록증
8. 사업등록
9. 사업허가서(미유효)
10. 사업허가서 유효화 구비요건 제출
11. 세무서 전자 파일링 번호
12. 부가가치세 과징사업자 지정서
13. 노동부등록증
14. 외국인 임직원 고용계획승인서
15. 외국인 고용허가서
16. 비자 발급지시 케이블
17. 기한부거주 허가서
- 18 외국인 숙박 경찰신고서
19. 외국인 임시거소증명서
20. 외국인 취업보고

2. 건설 법인 합작 투자

합작 현지외자투자 주식회사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은 인도네시아 건설 회사와 합작으로만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파트너의 조건은 대형 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 100%를 인도네시아인이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건설회사이어야 합니다. 합작 현지외자투자 주식회사의 지분은 외국건설회사에게 최고 67% 보유를 허용하며 인도네시아 파트너는 최소 33%를 보유해야 합니다. ASEAN 회원국의 회사가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은 최고 70%까지 허용하며 인도네시아인 파트너의 지분은 최소 30%이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파트너의 시공 실적으로 합작회사 명의의 대형 건설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형건설면허와 건설사업허가서를 취득한 합작회사는 수주와 시공을 합작회사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무소 형태 진출과 합작법인 형태 진출은 어느 형태가 더 유리한 형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형편에 따라 진출 방법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진출하는 회사는 파트너가 없는 대표사무소 형태로 진출해서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을 공부하고 확실하게 파악한 후에 자기에게 맞는 파트너를 찾아 합작회사 형태로 승격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법인 설립절차 이전에 건설협회 가입과 건설등록증 취득이 선행되어야 하며 나머지는 일반 법인설립 절차와 유사합니다.

Q9. 외국건설 회사의 건설면허 취득절차 및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인도네시아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건설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건설 면허는 대형(B, Besar), 중형(M, Menengah), 소형(K, Kecil), 개인(P)으로 구분되며 외국 외국회사는 시공사인 경우 B2 면허만, 용역(설계, 감리)사는 B급 면허만 취득 가능합니다. 외국 건설 대표사무소 및 합작 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공사는 건설시공의 경우 1천억 루피아, 건설자문의 경우 1백억 루피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업종은 소득세법 제4조2항에 따라 최종 분리 과세가 적용되며, 건설시공 3%, 설계 4%, 감리 5%입니다.

〈 B2와 B급 면허 취득 조건 〉

	B2	B
분야	시공사	용역 (설계 및 감리)
최소 자산	최소 500억 루피아	최소 25억 루피아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0년 이내에 최소 총 누적치 2,500억 루피아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 또는 - 지난 10년 이내에 최소 833.3억루피아 이상의 단일 건설 프로젝트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0년간 총 누적치 25억루피아 이상의 건축 설계 및 감독 경험
엔지니어 / 노동자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JB, PJT, PJK 각각 보유 (중복되면 안됨) - 시공: 최소 1명의 중급 또는 고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명의 고급 기술전문자격증(SKA)을 보유한 자가 PJT를 맡아야 함 /1명의 SKA 보유자가 최대

	수준의 기술전문자격증 (SKA)을 보유한 임원이 PJT를 맡아야함 - 통합: 최소 4명의 중급 수준 SKA 보유자가 PJT를 맡음 / 각각 토목, 기계, 전기, 환경 및 관리	2 개의 분류까지 맡을 수 있음
--	--	-------------------

- 1) PJBU / Penanggung Jawab Badan Usaha = 지사장
- 2) PJT / Penanggung Jawab Teknik= 기술 책임자
- 3) PJK / Penanggung Jawab Klasifikasi = 작업 책임자

건설업 허가 (SBU) 신청 절차

서류준비 → 건설협회 신청서 심사 자격/조건 부합여부 확인 → 신청서 접수 → 재심사 → 자격/조건 부합여부 재확인 → 건설 개발원(LPJK)에 서류 등록 → 자격/조건 부합여부 확인 → 건설개발원(LPJK)에서 건설면허(SBU) 발행 → 건설협회에 건설면허(SBU) 제출 → 완료

신청서류

1. Copy of Articles of Association of Head Office in English, notarized and registered at Indonesian Embassy in Korea
2. Company Register of Head Office in English, notarized and registered at Indonesian Embassy in Korea
3. Copy of Construction License of Head Office in English issued by the Construction Authority in the origin country, notarized and registered at Indonesian Embassy in Korea
4. Recommendation Letter from Embassy of Korea in Indonesia
5. Copy of valid Domicile Certificate of Representative Office issued by Head of Village(Kelurahan) In case the RO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therefore Domicile Certificate can be replaced with copy of Lease Agreement for office space where Representative Office will be located
6. Copy of Taxpayer Identity Number(NPWP)
NPWP is not required in case RO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7. Letter of appointment of Chief Representative(Indonesian nationality) in English, notarized and registered at Indonesian Embassy in Korea
8. Copy of Passport of Head Office's President Director
9. Copy of Identity Card(KTP) and Taxpayer Identity Number(NPWP)

- of Chief Representative
10. Curriculum Vitae of Chief Representative
 11. Copy of Financial Statement of Head Office for the period of the last 2 years which audited by Public Accountant in the origin country and legalized by Korean Embassy in Indonesia, Minimum total assets shall be Rp.50,000,000.000 (fifty billion Rupiah).
 12. Documents of project performance valued at \geq Rp.84,000,000,000 (eighty four billion Rupiah) per sub qualification or the total cumulative valued at least Rp.250,000,000,000 (two hundred fifty billion Rupiah) over the last 10 years, as follow :
 - (1) Copy of all Construction Contracts in the field which will be applied for SBU and bill of quantities of contract
 - (2) Copy of tax invoice of the project(Faktur Pajak) if the project conducted in Indonesia
 - (3) Copy of the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the Project
 13. Copy of Certificate of Expertise(Sertifikat Keahlian/Sertifikat Tenaga Ahli/SKA) minimum 2 (two) Middle SKA(SKA Tenaga Ahli Madya) for each sub qualification
 - (1) KTP and NPWP of SKA holder
 - (2) Curriculum Vitae of SKA holder
 - (3) Graduation Certificate of SKA holder
 14. List of Employees in Indonesia
 - (1) List of Equipments
 - (2) ISO and OHSAS certificate
 - (3) Company Profile Book

자료 : YSM PARTNERS 이승민 대표변호사

Q10. 신규법인 설립시 초기 투자비용 송금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외환관리법 상 해외직접투자의 종류에는 외화유가증권 취득, 금전의 대여, 개인사업, 공동사업 참여, 해외지사 설치 등이 있습니다. 금전의 대여는 외화유가증권의 취득을 선행하여야 하므로 해외직접 투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해외투자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외화유가증권의 취득입니다. 외화유가증권의 취득은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가

됩니다. 기존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즉 지분의 매도자가 인도네시아인 또는 인도네시아 법인인 경우는 외국환 은행에 가서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즉시 신고 접수가 되며, 바로 직접 개인 또는 인도네시아 법인에 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아직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법인으로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함과 동시에 신고 접수가 되며, 설립될 회사의 대표나 이사 또는 직원의 인도네시아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법인이 설립된 후에 그 해당자금이 회사로 입금되었다는 은행 증명이나 현지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서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후 관리 신고를 하면 됩니다.

[투자 관련 법규]

Q11. 법인 설립 후 자본금 및 최소 투자금액 납입 기한이 있는지요?

회사가 설립되고 설립정관이 나오면 설립인들 공동 명의로 공증인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법인자격을 신청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조건부로 법인자격을 줍니다. 법인자격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주주가 회사의 계좌에 출자금을 불입한 은행계좌증명서, 출자가 기재된 재무제표, 전체 주주와 이사회원과 감사회원이 서명한 출자확인 각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무부로부터 인허가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정식 투자승인을 받으면 허가받은 투자액 내에서 현지법인 계좌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발행자본금을 현지에 설립한 현지법인의 구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와 투자조정청(BKPM)에 정례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발행자본금 납입 후 차입금 75% 투자에 대한 법정시한은 없으며 처벌 조항도 없으나 투자(자본금+차입금) 미완 시 영구 사업허가서 취득이 불가능합니다(일부 업종은 100% 투자하지 않더라도 영구사업허가서 취득 가능). 차입금 75% 자본화 여부는 전적으로

주주총회에 달려 있으며 정부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발행자본금 납입증명서를 가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12. 현지 법인 및 대표사무소 설립시 외국인 1명당 현지인 고용 의무 비율이 있는지요?

현지인 고용 의무 있습니다. 1:1입니다. 하지만, 주재원 체류허가 취득시 노동부에서는 주재원 1명당 10명의 현지인 직원의 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의 경우 실제 법률과 업무 진행상의 내부 규정 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규칙 개정이 빈번하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동 건은 통상 비자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13. 대표 사무소가 주기적으로 정부에 제출해야하는 활동보고서가 있나요?

〈대표사무소 활동 보고서(Laporan Kegiatan Kantor Perwakilan)양식〉

LAMPIRAN III
PERATURAN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18
TENTANG
PEDOMAN DAN TATA CARA PENGENDALIAN
PELAKSANAAN PENANAMAN MODAL

FORMAT LAPORA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AN ASING (KPPA)

KOP KPPA				
LAPORA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AN ASING (KPPA) PERIODE PELAPORAN: SEMESTER I/II* TAHUN ...				
NOMOR PERIZINAN LUAR NEGERI YANG MENUNJUK PEKAWILAN	1	...	BERLAKU SAMPAI DENGAN:	
NAMA PERUSAHAAN LUAR NEGERI YANG MENUNJUK PEKAWILAN	1	...		
NAMA KEPALA PEKAWILAN	1	...		
KEWARGANEGARAAN	1	...		
ALAMAT KANTOR PERWAKILAN	1	...		
NPWP	1	...		
NOMOR TELEPON	1	...	FAX : ... EMAIL : ...	
BILANG KEGIATAN	1	...		
REALISASI KEGIATAN	1	...		
TENAGA KERJA	1	• Asing	: .. orang	No. IMTA
		- Laki-laki		
	2	• Indonesia	: .. orang	
		- Laki-laki		
	- Perempuan	: .. orang		

Catatan:

- Laporan ini dapat disampaikan secara luring sampai dengan tersedianya sistem daring.
- Laporan yang disampaikan secara luring harus ditandatangani oleh Kepala KPPA/Direktur di Negara Asal.

(TANDA TANGAN)

.....(Nama Lengkap)
.....(Jabatan)

대표사무소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사무소 허가서에 활동상황 보고의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표사무소와 무역대표사무소의 경우 매년 2차례 반기별로 Laporan Kegiatan Kantor Perwakilan 란 대표사무소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은 불가하여 직접제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시기는 설립일과 상관없이 1~6월 업무는 7월중, 7~12월 업무는 후년 1월중 보고하여 하며, 보고가 늦어도 현재까지는 어떤 처벌도 없으나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보고는 BKPM(투자조정청) 에 하시면 됩니다. 작성 양식을 참고 하시고, 초기 작성은 변호사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14. 법인 설립 후 부지 매입, 환경영향평가 등 공장건설까지 자세한 허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1. 법인 설립

2. 토지 매입(매매계약서 작성) 및 토지 등기(토지대장명의 변경)

- ① 인허가 관청: 지역 관할토지청(BPN)
- ② 구비서류
 - 매매공증(AJB)
 - 토지대장(Sertifikat Tanah)
 - 양도세(PPH)/취득세(BPHTB) 납부증빙
 - 토지 및 건물 재산세(PBB) 납부 증빙(Bukti Bayar PBB)

이상의 인허가 사항은 임대공장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에 적합한 토지를 물색하여 정한 후 지역 토지정관작성 전문 공증인(PPAT)을 통하여 매입 및 등기 작업을 진행합니다. 토지를 매입하기에 앞서 반드시 해당 토지가 공업지역으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확인은 해 당지역 시/군청의 통합인허가서비스부서(Badan Penanaman Modal & Pelayanan Terpadu Satu Pintu)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공장 위치허가(Izin Lokasi)

- ① 인허가 관청 : 군청 통합 인허가 서비스 부서(Badan Penanaman Modal & Pelayanan Terpadu Satu Pintu)
- ② 소요일 : 14~30일

③ 구비서류

- 회사 설립정관
- 납세자번호(NPWP)
- 토지 모양을 표시하는그림
- 해당 토지 사용에 따른 배상을 하겠다는 각서
- 해당 토지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
- 투자청 승인서
- 도시 계획과에서의 승인 서류
- 토지의 크기와 소유에 관한 진술서
- 토지 소유주의 해당 토지 판매 의향서
-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들

4. 건축허가(IMB) 및 기술 조언서(SARAN TEKNIS)

임대공장은 해당사항 없음

① 인허가관청

군청 통합 인허가 서비스 부서 (Badan Penanaman Modal & Pelayanan Terpadu Satu Pintu) & 공공사업 국민주택부(Dinas Kementrian PUPR)

② 소요일 : 21일

③ 구비서류

- 신청서
- 설립정관
- 대표이사 여권사본
- 납세자 등록번호사본
- 토지대장 또는 매매공증(AJB) 사본
- 토지세, 법인세 납부 증빙 사본(가장최근)
- 진술서:건물에 대한 기술적인 여건들을 모두 갖출 수 있다는 사항,
건축 계획과 사실에 대한 사항, 지방정부에 의한 건물 층수
지정에 대한 사항, 일치선 관련 사항(실사이후)
- 건물의 도면 관련(위치도, 전·후 도면, 단면도)
- 설계도와 건축 설계계산 (층수건물, 철골건물, 특수검사대상 건물
혹은 사무실)
- 지역 기준을 위한 지역 토지 사용 권고서 사본
- 건축허가는 공장 건물을 시공할 건설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전에 공장 설계도를 제출하여 공장부지 계획(Site Plan)에 대한 승인을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5. 공장 건축

6. 기타 공장허가(공해허가, 환경영향평가, 환경허가, 건물사용허가)

인도네시아에 제조업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조업체들이 환경부로부터 환경평가/환경검사서(UKL-UPL/ AMDAL)을 받아야 하며 이후 발급받은 환경평가서/환경검사서를 OSS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upload)하여 최종 환경허가서(Izin Lingkungan)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인도네시아 환경관련 법률입니다.

-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2 year 2009
- Government Regulation Number 27 year 2012
- Minister Environment Regulation Number 16 year 2012

인도네시아의 환경 허가에는 공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UKL/UPL) 그리고 그보다 한단계 위인 환경영향검사(AMDAL)가 있습니다. 환경 허가의 경우는 관련 전문 환경 컨설턴트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단내에 위치한 업체인 경우 공단을 통하여 허가 진행을 하며 환경영향관리 계획(RKL-RPL)을 발급받아 OSS 시스템을 통하여 최종 환경허가(Izin Lingkungan)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법인 인허가와 업체의 생산시설과 설비에 따른 환경 관련 기본 정보를 기입하는 질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공장부지에서 채취한 토양, 물, 공기 등을 검사 측정/검사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기간은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정확한 소요 기간 및 필요서류는 공장 설립지역의 전문 환경 컨설턴트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공해허가, 사업장허가(UUG/HO)

1. 인허가관청

- 군청 통합 인허가 서비스 부서 (Badan Penanaman Modal & Pelayanan Terpadu Satu Pintu)

2. 소요일: 15일

3. 구비서류

- 신청서(FC KTP Pemohon)
- 대표이사 사진2매(4×6)
- 토지대장사본(FC, Surat Tanah)
- 토지 및 건물 재산세 납부 증빙(최종연도)
(FC, Tanda lunas PBB tahun terakhir)
- 납세 등록증(NPWP) 사본
- 건물도, 공장부지 계획(Site Plan)과 현지 형세도
- 설립정관
- 위임장
- 사용 기계 리스트와 생산공정도
- 사업지 임대계약서 사본
- 토지에 대한 권한 요청서 사본 (FC, Surat permohonan hak atas tanah)
- 건축허가서(IMB)

B.환경영향평가(UKL/UPL)

1. 인허가관청

관할 시청/군 환경청(Walikota/Kabupaten Badan Lingkungan Hidup)

2. 소요일: 1~2개월

3.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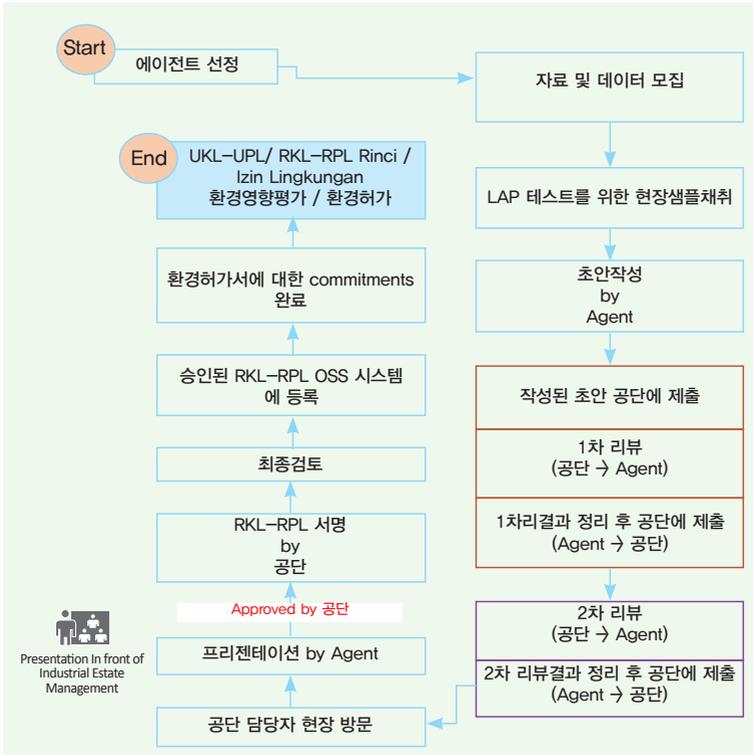
- 투자승인서
- 법인 설립 정관(Akta pendirian)
- 설립 정관 법무부 등재서(Pengesahan Akta Pendirian)
- 소재지증명서(Domisili)
- 납세등록증(NPWP)
- 상업부등록증(TDP)
- 공해 허가/사업장허가(UUG/HO)
- 공장부지 계획(Site Plan)
- 공정도
- 공단 확인서 (Surat Keterangan DariKawasan)
- 토지세 고지서(PBB)
- 건축물 배치도

- 비상탈출도(Jalur Evakuasi)
- 회사내역(Company Profile)
- 토지대장(Sertifikat Tanah)
- 건축허가서(IMB)
- 임대계약서/매매공증(AJB) / HGB (토지대장 :사용권)
(Sewa-Menyewa / AJB / HGB)

C. 환경허가(Izin Lingkungan)

1. 인허가관청
군청 통합 인허가 서비스 부서 (Badan Penanaman Modal & Pelayanan Terpadu Satu Pintu)
2. 소요일: 3~4주
3. 구비서류
 - 투자승인서 사본
 - 법인설립정관 사본(Aktapendirian)
 - 설립 정관 법무부 등재서 사본(Pengesahan Akta Pendirian)
 - 소재지 증명서 사본(Domisili)
 - 납세등록증(NPWP) 상업부등록증(TDP)
 - 환경평가서 사본
 - 토지세 고지서 사본(PBB)
 - 건축허가서(IMB) 사본
 - 토지대장 사본/임대차계약서 사본
(Sertifikat Tanah/Sewa-Menyewa)

〈공단내의 환경영향 평가 진행 절차〉
(일반적인 경우이며, 공단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자료: LSW 이소왕 변호사

D. 건물사용 허가(Izin penggunaan bangunan)

1. 인허가관청

군청 통합 인허가 서비스 부서 (Badan Penanaman Modal & Pelayanan Terpadu Satu Pintu)

2. 소요일: 10일

3. 구비서류

- 회사 서류들
- 건축허가서(IMB) 사본
- 토지 문서 사본
- 사업장 허가, 공해허가

Q15. 법인세 감면 (Tax Holiday)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선도산업 분야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할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혜택 가능 여부에 관한 공식 의견은 투자조정청(BKPM)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Tax Holiday(법인세 면제 정책)에 관한 신규정인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50 2018)을 발효하여 이전관련 규정인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35 Tahun 2018)를 대체함.
- 법인세 감면 혜택 분야는 기존의 17개에서 18개로, 153개의 사업 분야에서 169개로 확대됨. 또한 5,000억 루피아(IDR) 이하의 투자액으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됨.

2. 면세 혜택

〈면세 혜택 및 기간〉

혜택 종류	투자 규모(루피아)	혜택 기간	만기 이후
법인세 50% 감면	1,000억~5,000억	5년	2년간 25% 감면
법인세 100% 면제	5,000억~1조	5년	2년간 50% 감면
	1조~5조	7년	
	5조~15조	10년	
	15조~30조	15년	
	30조 이상	20년	

자료원 : Tax Holiday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50 Tahun 2018)

- 특별 경제 구역 (KEK: Kawasan Ekonomi Khusus)의 경우 소규모 투자액으로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① 200 ~ 1,000억 루피아(IDR) 의 투자규모 : 5년간 50% 감면
 - ② 1,000억 루피아(IDR) 이상 투자규모 : 5년에서 최대 20년간 감면
- OSS (Online Single Submission)를 통해 진행

3. 면세 대상

-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50 Tahun 2018) 3항 (1)조에 의하면 다음 5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① 선도 산업(18개의 분야)

- ② 인도네시아의 법인
- ③ 신규 투자(법인세 감면 거부 결정 또는 통고를 받지 않은)
- ④ 최소 1,000억 루피아 이상의 신규 투자 계획
- ⑤ 법인세 산출 목적상 재무부 장관령에 언급한 부채 자본 비율에 관한 규정 이행

〈선도산업 18개 분야〉

- 정의 :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50 Tahun 2018) 제1항 (1) 조에 의하면 선도 사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넓은 외부효과, 신기술 도입,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을 의미함.
 1. 금속 산업(Upstream 산업): 철강 또는 비철강
 2. 석유 및 가스의 정제/정유산업
 3. 석유, 천연가스 또는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석유 화학 산업
 4. 농업, 임업에서 파생된 유기 기초 화학 산업
 5. 무기 기초 화학 산업
 6. 의약품 원료 산업
 7. 방사선, 전자의료, 전기치료 장비 제조
 8. 전자제품 또는 텔레메틱스 제품의 주요 부품 제조업으로 반도체 웨이퍼, LCD (Liquid Crystal Display)용 백라이트, 전기 드라이버, 혹은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업
 9. 기계장비 제조업 또는 기계장비 주요 부품 제조업
 10. 산업용 기계장비 제조에 활용되는 로봇 부품 제조업
 11. 발전기 주요 부품 제조
 1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
 13. 선박의 주요 부품 제조 산업
 14. 기차 주요 부품 제조 산업
 15. 주요 항공기 부품 제조 및 항공우주산업 지원 활동
 16. 농업, 플렌테이션, 임업을 기반으로 펄프 등을 생산하는 산업
 17. 경제 기반 시설
 18. 데이터 처리, 호스팅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는 디지털 경제
- 해당 업종에 대한 169개의 표준산업코드(KBLI)는 BKPM 규정 No.1/2019의 부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허가 신청 및 절차

- 납세자는 OSS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세 감면 대상여부를 확인
- OSS 시스템은 대상여부에 대한 통지서 발급
- 납세자는 통지서 수령 후, 다음의 서류를 OSS 시스템에 제출함으로써 법인세 감면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 필요 서류
 - ① 투자계획서 상의 고정자산 목록 및 부채자본비율 관련 서류
 - ② 모든 국내 주주의 세금완납증명서
- 법인세 감면 신청은 신규 납세자를 위한 NIB(사업자 등록 번호) 등록 시 또는 신규 사업 허가서 발급 후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법인세 감면 신청서는 OSS시스템에 의해 국세청에서 재무부로 전달되며 납세자는 OSS 시스템을 통하여 재무부 접수 통지서를 수령
- 국세청은 재무부를 대신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

[참고] 소득 공제 (Tax Allowance, Government Regulation No. 78 of 2019)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득공제 혜택과 관련하여 기존 GR No.18 2015 및 GR No.9 2016을 폐지하고 GR No.78 2019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업생산 시점부터 연간 5%씩 6년간 고정자산 투자금액의 30% 소득공제.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일정기간 동안 해당 고정자산을 이전하지 않아야 함.
 - 해당 고정자산은 신규자산이어야 함(다른 나라에서 전체가 이전되는 complete relocation의 경우 제외)
 - 소득공제를 위한 신규 사업 허가에 등록된 고정자산
 - 납세자가 보유한 자산으로 리스자산 제외
- 가속 상각 인정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
-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원천세율 10%로 경감(또는 조세협약에 따라 낮은 세율 적용가능)
- 66개 사업 분야에 해당되며 동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기의 포괄적인 개념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대형 투자 또는 수출지향 투자
- 높은 수준의 고용창출
- 높은 수준의 로컬 콘텐츠 사용
- ※ 소득공제 혜택은 경제개발구역에 대한 세제혜택, Tax Holiday, 또는 노동집약적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다른 세제혜택과 중복하여 적용 불가

Q16. 제조업 투자시, 제조업과 유통업 2개 업종을 한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제조한 품목에 대한 판매/ 유통은 적법합니다. 별도로 유통업을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으면 유통업 허가 없이 자사 제품 유통은 허용합니다. 타사 제품도 유통하려면 유통업허가를 같은 법인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17. 현지법인 명의 혹은 외국인 개인 명의로 부동산 매입이 모두 가능한지요?

거주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개인 명의로 사용권 부동산 매입만 허용합니다.

외국인이 외자투자현지법인을 설립하면 업무용 토지 매입 및 보유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같은 외국인 투자법인이라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권리가 권리를 소유하는 주체 및 목적에 따라 권리의 종류가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에 공장이면 건축권을 소유하고, 농장이면 경작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현지인 명의로 차명 투자는 투자법에서 금하고 있어서 차명 투자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이며, 혹시라도 이름을 빌려준 현지인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법에 호소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지인 명의로 차명투자 시는 현지법령에 따라 실제 주인이 적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설정이 가능합니다. 안전장치 설정은 현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도네시아 토지법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Hak Milik/HM), 건축권(Hak Guna Bangunan/HGB), 경작권(Hak Guna Usaha/HGU), 사용권(Hak Pakai/HP), 개발권(Hak Eksploitasi/HE) 등으로 분류하여 토지에 대

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인 주체와 보유 목적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르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소유권(Hak Milik/HM)

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의 시한이 없는 상속되는 권리로 인도네시아 국민과 법정 특수 공법인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2. 건축권(Hak Guna Bangunan/HGB)

토지 위에 건물 혹은 구조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공장, 창고, 사무실 빌딩, 주택, 아파트 등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대부분 이 건축권입니다. 건축권은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와 인도네시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에게만 보유를 허용합니다.

건축권은 최초 최장 30년을 주며 30년이 지나면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고 20년이 지나면 다시 최장 30년 갱신이 가능합니다. 투자 목적 건축권인 경우에는 최초 30년, 연장 20년, 갱신 30년 토탈 80년을 일시에 줄 수 있습니다. 건축권은 매매, 교환, 현물출자,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권리변동은 모두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경작권(Hak Guna Usaha/HGU)

타인 소유 토지 위에 농업, 어업 및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도네시아 국민 혹은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가진 인도네시아 법인에게만 보유가 허용 됩니다. 경작권을 받으려면 토지 면적이 최소 5 ha 이상이어야 하며 25ha 이상인 경우에는 최신 기술을 이용하고 적정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작권의 유효 기간은 최초 최장 35년, 연장 최장 25년, 갱신 최장 35년이 가능하며 대규모 투자 시에는 최초 최장 35년과 연장 최장 25년 및 갱신 35년을 합쳐 최장 95년을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경작권은 매매, 교환, 현물출자,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권리변동은 모두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사용권(Hak Pakai)

사용권은 국가 혹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로부터 수확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도네시아 국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가진 인도네시아 법인, 외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 세운 대표 사무소, 외국대표나 국제단체의 대표, 정부 기관이나 지방기관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국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최초 최장 25년을 주며, 25년이 지나면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며, 다시 최장 25년 갱신이 가능합니다. 투자 목적 사용권인 경우에는 최초 25년, 연장 20년, 갱신 25년 총 70년을 일시에 줄 수 있습니다.

사용권은 매매, 교환, 현물출자,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권리변동은 모두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제도는 한국과 다르게 아주 복잡합니다. 보다 자세한 부동산 제도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한인 포스트 “2020 인도네시아 부동산법” (이 승민 변호사) / <http://haninpost.com/archives/29272>

Q18. 과실을 송금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요?

인도네시아는 해외자금의 유출입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인도네시아 투자법 제7조 3항에서 투자 과실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의 외환송금에 대하여 은행에 자금 용도, 거래상대방, 거래목적 등에 대한 송금목적을 보고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개정된 인도네시아 투자법 제8조 3항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 또는 과실 등에 대하여 다음의 형태로 외환송금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자본금
- 이익금, 이자, 배당금, 기타 소득
-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사업 계속을 위한 자본재 교체에 필요한 대금
-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초과하는 자금
- 차입금 상환
- 로열티 등 지불의무가 있는 사항
- 외국인 근로자 급여
- 회사 매각대금 또는 청산으로 인한 소득
- 손해 배상
- 인수 대금
- 기술지원료, 기술자문용역비, 경영자문용역비, 프로젝트 계약에 따른 지급, 지적재산권 관련 지급액 등
- 소유자산의 매각 대금

Q19.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현지통화(루피아)로만 거래가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of Indonesia)은 국내 거래의 루피아화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앙은행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동 규정은 2015년 3월 31일부로 이미 현금 거래에 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은행거래 등의 비현금 거래에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동 조치로 신용카드, Debit 카드, ATM 카드, 전자 머니, 자금 이체 등 거래 전 범위로 루피아 사용이 의무화되며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모두 루피아로 표시해야 하며 동 규정 위반 시 개인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루피아 이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예외 조건도 두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외화 기준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동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비현금 거래인 경우 또한, 중앙은행의 외환거래 사용 별도 승인시는 달러화 거래도 가능합니다.

Q20. 현지은행 계좌개설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인도네시아 거주자에게만 은행계좌 개설을 허용합니다. 즉 대표사무소, 현지법인 혹은 기한부거주허가서(KITAS)를 보유한 개인은 현지 은행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경우는 달러계좌 개설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예금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 개인 : 기한부 거주허가서(KITAS), 여권
- 법인
 - ① 단일 회사 번호(Nomor Induk Berusaha, NIB)
 - ② 정관(Akta Pendirian, Anggaran Dasar) : 이사회 대주주 명단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인도네시아 현지 공증업체(로터리)의 공증 필요
 - ③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Surat Keterangan Domisili Perusahaan, SKDP)
 - ④ 납세자 번호(NPWP)
 - ⑤ 위임장, 타인에게 은행 계좌 개설을 위임한 경우 : 원칙적으로 신규 계좌개설시(은행 첫거래) 위임인이 계좌개설을 할 수 없으나, 인도네시아 현지 공증업체(로터리)의 공증이 있는 위임장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IBK 기업은행 사례)
 - ⑥ 대표자 여권 및 기한부 거주허가서(KITAS)
 - ⑦ 계좌 개설 권한자(수임자)의 신분증(e-KTP: Kartu Tanda Penduduk 또는 여권 및 KITAS)

회사 계좌 개설 조건 중 이사회원 중에 한 사람이 반드시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발급한 기한부 거주허가서(KITAS)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 따라 계좌 선 개설 기한부 거주허가서 후 제출 조건으로 계좌 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법인장 체류 허가증(KITAS) 발급이 진행 중이라는 증명서를 첨부하면 일부 은행에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KITAS 발급후 KITAS 사본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인니 현지은행은 실제 원본이 없으면 진행이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소다라은행 등과 같은 한국계 은행이라면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은행에선 가능합니다. 은행계좌 개설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한국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실 거라면 한국인 담당자와 직접 확인해 보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Q21. 기존 법인장을 국내에 본사에 있는 직원으로 변경 후 현지 직원에게 수임대표직으로 권한을 위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현지법인의 법인장이 반드시 현지에 근무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외국인이 아닌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한 현지인 직원에게 위임장을 줘서 법인장의 임무를 수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

도네시아의 위임장 제도가 일반 위임장은 인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항별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인 직원에게 건건마다 위임장을 줘서 대리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현지인 직원이면 이사회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위임장없이 현지인 이사 단독으로 업무 처리해도 적법합니다.

Q22.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허권(20년, 실용신안은 10년), 상표권(10년), 저작권(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 산업디자인(10년)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호되고 있으나, 위반 시 벌칙조항이 유명무실하며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가방, 장신구 등이 복제되어 팔리고 있으며, 영화, DVD는 한국 영화들까지도 미화1달러 미만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복제품은 속칭 도깨비시장 등 암시장에서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쇼핑몰 등의 간이 매장에서도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1. 상표

인도네시아 상표법이 주지저명한 상표(Well-Known Mark)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부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지저명한상표의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상표 등록 절차

- 소정 출원양식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 후 특허청에 신청(단, 외국 소재 출원인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변리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 출원일로부터 15일 후 방식심사 결과 통보 및 출원일 부여(방식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정통지서가 발송됨.)
- 출원 공고일 부여 일자부터 15일 이내에 상표공보에 출원 공고됨. 공고기간은 2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 제기 가능
- 이의신청이 접수될 시, 특허청은 2주일 내에 출원인에게 이의신청서 사본을 전달하며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반박서를 제출해야함. 반박서 접수 후 특허청은 공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함.
- 출원공고 기간 중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을 시 출원공고 종료일

- 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심사 진행되며 심사기간은 150일임. 등록 결정 시 상표 공보에 게재되며 상표등록증 발급
- 해당 출원이 실제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절이유가 통지되며 출원일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 해야함.

2. 특허

1) 취득조건

- 반드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한가지 발명에 대해 한가지 특허권 부여
- 법무성이 정해 놓은 비용을 특허국에 납부해야 함.
- 인도네시아 영구거주자가 아닌 경우 변리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2) 특허출원절차

- 소정신청양식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여 발명에 관한 설명서와 함께 제출(단, 외국 소재 출원인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변리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 출원일로부터 14일 후 방식심사 결과 통보 및 출원일 부여(방식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정통지서가 발송됨.)
- 특허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6개월간 특허공보에 출원 공고
- 특허등록에 이의가 있는 제3자는 공고기간 동안 항변서 제출로 이의신청 가능
- 출원인은 특허출원 승인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실질심사 요청 (추가 비용 발생)
- 실질심사 요청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특허등록여부 결정 및 통지

3. 저작권

1) 저작권 등록절차

- 창작물 등록신청서와 작품의 샘플 또는 그 대체품과 함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제출
- 저작권등록을 위한 방식심사 및 실질심사
- 방식심사 요건 누락 시 3개월 내 통보 및 보완
- 방식요건 및 실질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1~3개월 내 저작권 등록증명서 발급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1일에 저작권등록증명서 발급 가능

2) 저작권 보호법

- 인도네시아인의 저작물
- 인도네시아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맨 처음 공표한 저작물
- 인도네시아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자 협약 또는 다자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시민이 창작한 저작물

4. 산업디자인권

1) 산업디자인등록 출원 절차

- 산업디자인 등록신청서와 산업디자인의 물리적 예시 등을 제출(단, 외국 소재 출원인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변리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방식심사 후 모두 충족할 시 3개월 동안 공고,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 제기 가능
- 출원인은 이의제기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견 제출 가능
- 공고 기간 후 6개월 이내에 산업디자인 등록여부 결정 및 통지

2) 산업디자인권자

- 디자이너
- 디자이너와 정부간 고용관계를 통해 산업디자인이 창작된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지 않은 이상 정부가 보유
- 디자이너와 사기업간 고용관계를 통해 산업디자인이 창작된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지 않은 이상 디자이너가 보유

[투자 환경]

Q23. 특별 경제 구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Kawasan Ekonomi Khusus/ KEK)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정부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를 위해 설립된 전략적 지역으로 2020년 2

월 기준 15개(11개 운영, 4개 개발 중) 특별 경제 지역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 육성산업과 인센티브가 상이하므로 관심 구역이 있으면 사전에 해당 특별경제구역 지역 관리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경제구별 인센티브와 담당자는 위원회 홈페이지(kek.go.id)의 Investment Project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특별 경제 구역 현황>



자료 : 특별경제구역 위원회 (세부내역은 kek.go.id에서 확인 가능)

Q24. 산업단지 포함 입지정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단지는 약 100여개로 주로 민간에 의해 개발 분양되고 있으며 자카르타 인근 지역과 외곽지역 부지 매입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기업의 경우 주로 자카르타 인근에 산업단지 또는 개별 공장형태로 진출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비슷한 위치에 소재한 지역이라도 도로 접근 능력 및 주변환경 등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실제 공장후보지 선정시에는 부동산 에이전트 확인을 거쳐 반드시 현장 실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카르타에서 60Km 동쪽 까라왕(Karawang)에 인도네시아 민간기업이 분양중이고 한국기업이 일부 입주한 Artha Industrial Hill의 경우 분양가격이 2018년 150 USD/m²(부가세 10% 제외, 최소 2,500m²)에 형성되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Karawang New Industry City의 경우도 2018년 분양가격이 140 USD/m²(부가세 10%제외, 최소10,000m²)에 형성되었으나 2020년 기준 200 USD/m² 가까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자

카르타에서 멀리 떨어진 중·서부 자바에 개발 중인 공단의 경우 약 50 USD/m²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단지 자세한 현황은 산업단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Indonesian Industrial Estates Association (Himpunan Kawasan Industri Indonesia /HKI)

홈페이지: hki-industrialestate.com/members/

주요 산업단지 임차료 정보는 KOTRA 해외시장 뉴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KOTRA 해외시장 뉴스 (news.kotra.or) > 국가 지역정보) 인도네시아>투자>투자입지여건

(자카르타 인근 산업단지 부지 비용) (단위 : US\$)

지역	부지매입비(m ²)			관리비용(m ² /월)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Bogor	213.2	337.6	275.4	0.06	0.06	0.06
Bekasi	150.0	170.0	161.7	0.05	0.10	0.06
Tangerang	142.1	240.1	183.6	0.03	0.08	0.06
Karawang	170.6	227.4	204.7	0.06	0.08	0.07
Serang	142.1	163.5	152.8	0.03	0.05	0.05

* 환율 : US\$ 1= IDR 14,700

자료 : Collier's International Indonesia (2019 4분기)

Q25. 보세공장 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보세공장이란 보세구역의 우대조치를 각 공장 단위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보세공장제도는 보세구역 제도와 통합되어, 보세 구역내 기업(Pengusaha Di Kawasan Berikat)이라고 불립니다. 보세공장은 보세공단에 위치한 보세공장과 일반산업공단, 기타 공단 외 지역에 위치한 보세공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세공단에 위치한 보세공장은 보세사업 허가인 Pengusaha Di Kawasan Berikat만 받으면 되고, 일반 산업 공단, 기타 공단 외 지역에 위치한 보세공장은 Pengusaha Di Kawasan Berikat 및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를 받아야 합니다. 즉, 일반산업공단 및 기타공단지역은 보세구역 허가 및 보세사업자(공장)허가의 두 가지를 동시에 받으며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Merangkap Pengusaha Di Kawasan Berikat이라 합니다.

보세공장은 수출을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가공하는 장소 또는 기업이라고 정의됩니다. 보세로 승인을 받으면 국외 및 국내의 타 보세 업체로부터 원부자재 수입 시 수입제세 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부자재 수입시 수입제세 보세
- 부가세 및 사치세 비과세(비과세 대상 : 추후 가공을 위해 보세공장 간의 반입/반출되는 물품, 하청업체로 반출되는 물품, 하청업체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임대 계약중인 기계 및 장비, 수입 원부자재, 기계)
- 완제품의 내수 판매는 전년도 수출 실적 대비 50%까지 가능

보세공장은 일반적으로 보세 공단 혹은 산업공단에 위치하여야 하지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산업공단 지역 외에 위치가 가능합니다.

- 현지 원부자재 또는 현지 생산공정을 사용하는 업체
- 업체가 위치한 군 또는 시에 산업공단이 없는 경우(해당 공단 및 지역 관공서의 확인서 필요)
- 보세공단 혹은 산업공단 이외 지역인 경우 공장부지 최소면적 10,000 m²이상

보세구역 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지정까지는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1. 해당지역 관세청에 보세구역 지정 신청
2. 지역 관세청의 실사
3. 공장내 관세청 직원 사무소 설치
4. 지역 관세청 승인 확보
5. 중앙관세청 보세구역 지정 신청
6. 중앙관세청 실사 및 승인 확보
7. 과거분 관세에 대한 Audit
8. 보세구역 지정 전까지의 관세 정산 및 납부(결정서 통지 후 1개월 내)

Q26. 공업용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인도네시아의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은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입지 선정이 확정되면 현지 실사를 통해 보다 세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공공서비스 요금 (2020)〉

주요 공공서비스	요금(루피아)	기준
전기(산업용)	996.74~1,115	kVa
가스(산업용)	90,000	MMBTU
수도	1,050~14,650	m ³
석유	6,450~11,700	리터(L)
LPG	16,000	3kg

자료 : 인도네시아 수도공사,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인도네시아 가스공사, aturduit.com, GAIKINDO

Q27. 현지 임금 수준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의 일반적인 임금수준은 지역, 업종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총 34개 주 중 주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시·군별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는 지방 자치 주는 서부자바주, 중부자바주, 동부자바주, 족자지구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 올해 물가상승률 + 올해 GDP 성장률

하지만 상기 인상률이 8% 이상 됨에 따라 향후에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 개정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각 자치주별 최근 3년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8-2020 지방자치 주별 월 최저 임금 현황 (단위 : 루피아)〉

연번	지방 자치 주	2018	2019	2020	2020 상승률 (전년대비)
1	Aceh	2,717,750	2,916,810	3,165,030	8.51%
2	Sumatera Utara	2,132,188	2,303,403	2,499,422	8.51%
3	Sumatera Barat	2,119,067	2,289,228	2,484,041	8.51%
4	Riau	2,464,154	2,662,025	2,888,563	8.51%

5	Kepulauan Riau	2,563,875	2,769,683	3,005,383	8,51%
6	Jambi	2,243,718	2,423,889	2,630,161	8,51%
7	Sumatera Selatan	2,595,995	2,804,453	3,043,111	8,51%
8	Bangka Belitung	2,755,443	2,976,705	3,230,022	8,51%
9	Bengkulu	1,888,741	2,040,000	2,213,604	8,51%
10	Lampung	2,074,673	2,240,646	2,431,324	8,51%
11	Banten	2,099,385	2,267,965	2,460,968	8,51%
12	Bali	2,127,157	2,297,967	2,493,523	8,51%
13	DKI Jakarta	3,648,035	3,940,973	4,267,349	8,28%
14	Nusa Tenggara Barat	1,825,000	2,012,610	2,183,883	8,51%
15	Nusa Tenggara Timur	1,660,000	1,793,293	1,945,902	8,51%
16	Kalimantan Barat	2,046,900	2,211,500	2,399,698	8,51%
17	Kalimantan Selatan	2,454,671	2,651,781	2,877,447	8,51%
18	Kalimantan Tengah	2,421,305	2,663,435	2,903,144	9,00%
19	Kalimantan Timur	2,543,331	2,747,561	2,981,378	8,51%
20	Gorontalo	2,206,813	2,384,020	2,586,900	8,51%
21	Sulawesi Utara	2,824,286	3,051,076	3,310,723	8,51%
22	Sulawesi Tenggara	2,177,052	2,351,870	2,552,014	8,51%
23	Sulawesi Tengah	1,965,232	2,123,040	2,303,710	8,51%
24	Sulawesi Selatan	2,647,767	2,860,382	3,103,800	8,51%
25	Sulawesi Barat	2,193,530	2,369,670	2,571,328	8,51%
26	Maluku	2,222,220	2,400,664	2,604,960	8,51%
27	Maluku Utara	2,320,803	2,508,092	2,721,530	8,51%
28	Papua	2,895,650	3,240,900	3,516,700	8,51%
29	Papua Barat	2,667,000	2,934,500	3,134,600	6,82%
30	Kalimantan Utara	2,559,903	2,765,463	3,000,803	8,51%
31	Jawa Barat	1,544,360	1,668,372	1,810,350	8,51%
32	Jawa Tengah	1,486,065	1,605,396	1,742,015	8,51%
33	Yogyakarta	1,454,154	1,570,922	1,704,608	8,51%
34	Jawa Timur	1,508,894	1,630,059	1,768,777	8,51%

도시 인근지역 대기업은 월급제가 대부분이며, 중소기업이나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단순 노동에는 주급을 적용합니다. 건설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주급 형태로 지급되며 한국과 같이 임률에 따른 인건비 계산이 극도로 어려우나 최저임금 보다 약간 높게 계산하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요 회사별 인도네시아 임금 수준을 알수 있는 웹사이트가 아래와 같으니 참조 바랍니다.

<https://www.qerja.com>

Q28.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주요 한국기업의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2020년 기준 현재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한국기업은 약 2,500개로 섬유·의류업 관련 업체와 무역·도소매·판매유통 관련 업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한국계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약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특히 인도네시아 내 노동 집약 산업 부문의 생산 및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 건설 등 기간산업 분야에 이어 IT, 물류, 유통 등 서비스 분야로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석유화학, 자동차 및 제약 분야 진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있는 주요 한국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투자연도	사업 분야 및 품목
코린도그룹	1969	목재, 조림, 제지, 중공업
미원	1972	조미료 생산
삼성물산	1975	팜 농장
대우 인터내셔널	1976	철강, 방위산업, 유연탄, 발전소
KODECO	1981	유전개발 사업
엘지상사	1981	석탄, 팜오일류
KIDECO	1982	석탄 및 광물
CJ 인도네시아	1988	사료/식품 첨가물, 외식, 물류, 게임 서비스 등
LG전자	1990	가전제품 생산, 판매
삼성전자	1991	디지털 제품 생산, 판매
우리은행	1992	금융
파트라 에스케이 (Patra SK)	2006	유탄기유
KEB하나은행	2007	1990년 최초 진출(외환은행), 2007년 하나로 변경
롯데마트	2008	유통, 백화점 및 면세점
중부발전	2009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포스코	2010	Krakatau Steel과 합작 철강 제품 생산 및 판매
롯데케미칼	2010	에틸렌 생산
원 텍스타일	2010	Fabric mill, 원단 염색 공장
한국타이어	2013	타이어 생산 및 판매
한화생명	2013	생명보험
우리은행	2013	1992 최초진출, 2013 우리소다라로 변경
종근당	2015	항암제 생산
지누스	2018	매트리스 생산 및 판매
현대자동차	2019	자동차 생산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노무 관리]

Q29. 인도네시아의 기준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무시간 및 휴가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근로시간 : 주 40시간

주 5일 혹은 6일 근로는 사용자(회사)의 재량입니다.

- 주 5일 근로제

월~금(5일) x 1일 8시간 근로 = 40 시간

- 주 6일 근로제

월~금(5일) x 1일 7시간 근로 = 35 시간 근로

토 x 1일 5시간 근로 = 5 시간 근로

※ 합계 35 시간 + 5 시간 = 40 시간

- 유해 위험 작업 근로시간: 1일 최장 6시간, 주 최장 35시간

- 휴식시간: 연속 4시간 근로 후 최소 30분

2. 휴가

- 년가: 12개월 근무 시 연 12 근무일의 휴가권 발생

- 경조휴가: 자녀할례(2 근무일), 자녀세례(2 근무일), 자녀출산 (2 근무일)

- 종교활동: 근무시간 중 근로자들에 대한 기도시간 허용

- 여성근로자: 수유 기회 제공 의무

Q30. 인도네시아에 근로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Low No 13, 2003)은 한국의 노동법과 차이가 많으므로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근로자의 종류는 무기한부 고용계약 근로자와 기한부고용 계약근로자, 둘 뿐입니다. 모든 근로자의 법적신분은 이 둘 중 하나에 속합니다. 통상, 무기한부고용계약 근로자는 정규직이라 호칭하고 기한부 고용계약 근로자는 비정규직이라고 호칭하고 있으나 바른 호칭은 아닙니다.

1. 무기한부 고용계약 근로자(정규직)

법정 정년퇴직 연령인 55세까지 유효한 고용계약입니다. 근로자의 사망 혹은 사직 이외는 법원의 해고 허가 판결 없이는 강제 퇴사가 불가

능합니다. 생산성이 낮거나 문제가 있는 근로자라도 사용자의 마음 대로 해고가 불가하여 근로자에게는 대단히 유리한 고용계약이나 회사의 입장은 그 반대이며, 해고 허가를 받아 해고 시에도 해고 보상금, 주택 및 의료 수당 배상, 근속 보상금 배상 등 사용자에게 적지 않는 부담을 주는 고용 계약입니다. 특히,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 상품 생산 업체의 경우 계절에 따라 직원의 인원을 조절해야 하므로 무기한부 고용 계약은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로 불리하며 고정 인건비 부담이 많은 고용 계약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중도에 도산하지 않으면 55세까지는 해고 당할 염려를 별로 하지 않고 안정된 마음으로 근무를 누릴 수 있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고용계약입니다.

2. 기한부 고용계약 근로자(비정규직)

● 기한부 고용계약의 특징

- 기한부 고용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한 고용 계약 기한이 만료되어 고용 관계가 종료되면 해고 보상금, 주택 및 의료 수당 및 근속 보상금 지불 의무가 없습니다.
- 기한부 고용계약서에서 합의한 기한 만료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고용 계약 잔존 기간에 대한 급여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반대로 근로자가 고용 계약 기한 만료 이전에 사직을 하려는 경우에도 계약 잔존 기간의 전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무기한부 고용계약에서는 최장 3개월의 견습 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한부 고용계약에는 견습 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체결된 기한부 고용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7 근무일 이내에 관할 지방 노동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 기한부 고용 계약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체결해야 합니다.

● 기한부 고용계약을 허용하는 사업장

기한부 고용 계약은 시간적으로 그 존재가 계속성이 있는 사업장, 같은 종류의 제품 생산 활동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봉제업체, 신발 제조 업체, 전자제품 제조업체, 가발 제조업체, 무역업체, 요식업체 등의 사업장에 적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 같은 시한부 사업장, 농장 혹은 양어장처럼 파종 및 추수 시기가 있는 계절성 사업장, 시장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신상품 생산

사업장, 앞으로 존속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시험 제품 생산 사업장 등 그 존재 자체가 시한이 있는 사업장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노동법 상 기한부 고용계약 적용이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에도 기한부 고용계약이 적지 않은것이 현지 실정입니다.

Q31. 고용관계 종결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고용관계 종결의 종류는 고용관계 종결의 주체에 따라, 사용자에 의한 고용 관계 종결, 근로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및 법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3가지가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결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보상금(근로기준법 제 156조 2항)〉

고용관계 종결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보상금 지불을 원칙으로 하나, 고용관계 종결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도 해고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대한 잘못이 아니나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경우에는 법정 해고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조건이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을 범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심한 부도덕한 행위를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보상금이 해당되지 않으나 이외의 경우에는 해고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해고 보상금 액수

- 1년 미만 : 1개월 급여액
- 1년 이상 2년 미만 : 2개월 급여액
- 2년 이상 3년 미만 : 3개월 급여액
- 3년 이상 4년 미만 : 4개월 급여액
- 4년 이상 5년 미만 : 5개월 급여액
- 5년 이상 6년 미만 : 6개월 급여액
- 6년 이상 7년 미만 : 7개월 급여액
- 7년 이상 8년 미만 : 8개월 급여액
- 8년 이상 : 9개월 급여액

- * 월 급여액은 본봉 및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종류의 수당을 포함한 액수입니다.
- * 고용관계 종결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 열거한 해고 보상금액의 2배를 지불해야 합니다.
- *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해고 보상금 지불 의무가 없습니다.

〈근속 보상금(근로기준법 제 156조 3항)〉

무기한부 고용계약 근로자의 고용계약 종결 시 근속보상금 지불의무가 있습니다.

- 3년 이상 6년 미만 근무 : 2개월분 급여액
- 6년 이상 9년 미만 근무 : 3개월분 급여액
- 9년 이상 12년 미만 근무 : 4개월분 급여액
- 12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 : 5개월분 급여액
- 15년 이상 18년 미만 근무 : 6개월분 급여액
- 18년 이상 21년 미만 근무 : 7개월분 급여액
- 21년 이상 24개월 미만 근무 : 8개월분 급여액
- 24년 이상 근무 : 10개월분 급여액

〈손해 보상금(근로기준법 제 156조 4항)〉

손해배상금은 아래 사항을 포함합니다.

- 미사용 연차휴가
- 근로자 채용장소까지의 근로자 및 가족 귀향경비
- 해고 보상금 및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근속보상금의 15%에 해당하는 주택 및 의료 지원비
- 기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 협약상 규정된 사항

Q32. 근로자의 자진 사직(근로자에 의한 고용종결)에 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 무기한부 고용계약상의 사직

근로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의 간단한 형태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은 무조건 사직과 조건을 달고 사직서를 제출한 조건부 사직이 있습니다. 조건부 사직은 사직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직이 발효됩니다. 이러한 경우의 사직은 노동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의 불법행위 혹은 고용계약 위반 이유 고용관계 종결허가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타하거나, 거친 방법으로 모욕 또는 위협하거나, 근로자에게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권유하거나, 급여를 3개월 이상 정해진 일자에 지불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약정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고용계약서와 다른일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고용계약서에 약정되어 있지 않은 일로 근로자의 생명, 안전, 건강 및 정조를 위협하게 하는 일을 시키면, 위에 열거된 행위 중 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근로자는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에 고용관계 종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 종결허가 사유로 신청한 상술한 사용자의 행위가 산업관계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의 해고 허가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장기 외병 사유 고용관계종결 신청

근로자가 외병 혹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며 유급 법정 시한인 12개월이 지나면, 근로자는 고용관계종결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한부 고용계약 상의 사직

기한을 정하고 고용계약을 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고용 계약 잔존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회사에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보상금〉

구분	Process	보상금	비고
자진퇴사	1. 퇴사일 기준 최소 30일전 퇴직원 제출 2. 의무 근무조항에 저촉되지 않음 3. 퇴사일까지 지속적 의무사항 수행	1. 손해보상금 (제156조(4)항) 2. 자진퇴사 보상금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 정함)	노동분쟁 해결기관없이 가능

외병		근로자가 장기투병, 산재로 인한 장애로 12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근로관계 해지 신청함	1. 해고보상금 (제156조(2)항) 2배 2. 근속보상금 (제156조(3)항)2배 3. 손해보상금 (제156조(4)항)1배	근로자 비동의 시 노동분쟁 해결기관 판결을 거침
근로자 요청	사용자 잘못 인정	1.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대우에 대해 노동분쟁 법원에 근로관계해지 요청 - 근로자 학대, 모욕, 협박 - 급여지급지연 (3개월 이상) - 의무사항 불이행 - 계약된 사항 이외의 업무지시 2. 노동분쟁 법원 심의	1. 해고보상금 (제156조(2)항) 2배 2. 근속보상금 (제156조(3)항)1배 3. 손해보상금 (제156조(4)항)1배	노동분쟁 해결기관 판결
	사용자 잘못 없음		1. 손해보상금 (제156조(4)항) 2. 자진퇴사 보상금	노동분쟁 해결기관 판결없이 가능

자료 : 인도네시아 인사.노무 바이블(저자 방치영)

Q33. 법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에 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사망 및 정년퇴직으로 인한 고용관계이 이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결과 정년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결은 고용관계 종결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지 않으나, 고용관계 종결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처럼 해고보상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결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고용관계 종결 시에는 유가족에게 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정년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결

근로자를 정년퇴직시 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보상금〉

구분	Process	보상금	비고
정년	연금제도 有	1. 손해보상금(제156조(4)항) 단 아래 금액보다 적을시는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함	* 노동분쟁 해결기관 판결없이 가능
	연금제도 無	1. 해고보상금(제156조(2)항)2배 2. 근속보상금(제156조(3)항)1배 3. 손해보상금(제156조(4)항)1배	

사망		1. 해고보상금(제156조(2)항)2배 2. 근속보상금(제156조(3)항)1배 3. 손해보상금(제156조(4)항)1배	* 노동분쟁 해결기관 판결없이 가능 * 상속자에게 지급
----	--	---	---

자료 : 인도네시아 인사,노무 바이블(저자 방치영)

Q34. 사용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에 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고절차 준수 의무

노.사.정은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노.사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며, 해고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소송법 상의 법정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법정 해고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해고 효력이 없습니다.

2. 해고금지 사유

① 근로자가 외병으로 의사진단서를 제출하고 12개월 미만 계속 결근했거나 ②법규에 정해진 국민의 의무 수행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거나 ③종교상의 의무인 예배를 드렸거나 ④근로자가 혼인했거나 ⑤근로자가 임신, 출산, 유산 혹은 수유를 했거나 ⑥근로자가 회사내 다른 근로자와 혈연 혹은 혼인연을 가진 사유로는 해고를 금합니다(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 근로 계약서에 약정된 경우에는 예외). ⑦노조 설립, 노조에 가입, 노조 간부 보직, 사용자와 합의하에 혹은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근무 시간중 혹은 근무시간 외에 노조 활동을 했거나 ⑧사용자의 형사범죄 혐의를 고발했거나 ⑨사상, 종교, 정치 성향, 부족, 피부색, 출신, 성별, 신체조건 혹은 혼인신분의 상이하거나 ⑩ 의사의 진단서에 의거 산업재해로 인한 완치시기가 불명한 불구 혹은 질병 사유로 해고는 금합니다.

3. 허가 없이 해고가 가능한 사유

①견습 기간중인 근로자 ②사용자의 압력없이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한부 고용계약 만기 종료 ③고용계약서, 사규, 단체 근로 계약서 혹은 관계법규에 의해 정년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 ④ 근로자 사망 시

4. 고용관계종결 원천무효

법정 절차를 밟지 않고 고용관계를 종결한 경우에는 원천무효로 간주되며,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의 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노사 모두 평소대로 의무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5. 임시 정직 조치 가능

해고 수속을 밟는 동안 사용자는 평소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임시 정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보상금〉

구분		Process	보상금	비고
사원 중대과실로 인한 퇴사 (제 158조 규정)		1.근로자가 중대한 실수를 범했을 경우 - 사기, 절도 횡령 등 (제 158조 규정) 2.아래 증거사항 보완 - 해당 근로자의 현장 체포 -해당 근로자의 자백 - 사건보고서(최소 2명 증인 서명)	1. 손해보상금 (제156조(4)항) 2. 자진퇴사 보상금	*해당 근로자가 본인 실수 인정 및 자진퇴사를 원치 않을 경우 노동분쟁 해결기관 판결을 거침
제 158조 규정 외 사원 과실로 인한 해고		1.근로계약 사유, 단체협약 규정 위반에 대해 1차~3차 경고장 순차적 발급 후 근로관계 해지함 2.경고장은 각각 6개월간 유효함	1. 해고보상금 (제156조(2)항)1배 2. 근속보상금 (제156조(3)항)1배 3. 손해보상금 (제156조(4)항)1배	
회사 소유 변경/이전	사원 수용	1. 변경 내용 통보 2. 사원 결정사항 서면 접수	1. 해고보상금 (제156조(2)항)1배 2. 근속보상금 (제156조(3)항)1배 3. 손해보상금 (제156조(4)항)1배	
	회사가 사원 수용	1. 변경 내용 통보 2. 사원 결정사항 서면 접수	1. 해고보상금 (제156조(2)항)2배 2. 근속보상금 (제156조(3)항)1배 3. 손해보상금 (제156조(4)항)1배	

대량 해고	폐업	1. 회사 2년간 지속 적자 또는 불가항 력적인 사유로 폐업 2. 공인회계사 작성 2년간 회계보고서 로 입증	1. 해고보상금 (제156조(2)항)1배 2. 근속보상금 (제156조(3)항)1배 3. 손해보상금 (제156조(4)항)1배	*해고사항 노 동부 신고
	합리화	2년간 지속적 적자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회사 의 경영합리화로 인 한 폐업	1. 해고보상금 (제156조(2)항)2배 2. 근속보상금 (제156조(3)항)1배 3. 손해보상금 (제156조(4)항)1배	
	파산	회사 파산 시	1. 해고보상금 (제156조(2)항)1배 2. 근속보상금 (제156조(3)항)1배 3. 손해보상금 (제156조(4)항)1배	

자료 : 인도네시아 인사.노무 바이블(저자 방치영)

Q35. 형사 피의자가 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불해야 하나요?

1.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형사 고발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직당국에 의하여 구속이 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 지불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의 부양가족에게 다음과 같이 생활비 지불의무가 있습니다.
 - 부양가족이 1명이면 급여의 25%
 - 부양가족이 2명이면 급여의 35%
 - 부양가족이 3명이면 급여의 45%
 -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이면 급여의 50%
2. 위 생활비는 근로자가 구속된 날로부터 최장 6개월간 지불하며, 사용자는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아 6개월이 지나도 근무가 불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무죄판결을 받으면 계속 근무를 허용해야하며, 6 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유죄판결을 받으면 산업(노사)관계 분쟁해결 기관의 허가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근속 보상금 및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형사고발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된 근

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사용자에게 해고보상금 지불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Q36. 송별금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송별금은 법정 의무사항이며 송별금의 액수와 실행은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규정한데로 지불해야 하며 규정이 되어있지 않으면 회사의 재량에 속합니다.

Q37. 현지인을 일용직(아르바이트)으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시간적으로나 양적으로 일정하지 않는 일이며 출근해야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일용직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고용계약 체결 조건은 해당 근로자가 월 21일 이하 출근 조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계속 3개월 동안 혹은 3개월 이상 매월 21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직 고용계약이 자동으로 무기한부 고용 계약(정규직)으로 바뀝니다. 월 21일 이하로 근무하는 일용직 고용 계약은 계약 기간, 연장 혹은 갱신 등 기한부 고용 계약에 적용되는 일반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일용직 고용 계약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명단을 최초 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 노동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일용직 임금도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일급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 주 6일 근무제 : 월 급여액 / 25 = 일급
- 주 5일 근무제 : 월 급여액 / 21 = 일급

노동부 장관령(1985년 제6호)은 일용직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 3개월을 넘지 않는 단기간에 실시되는 작업
- 회사가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되지 않으며 1개월에 20일을 넘기지 않는 작업
- 모심기, 수확, 탈곡 등 계절적 성격을 띠는 작업
- 부정기적으로 행해지는 하역작업

Q38. 사규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1. 근로자 최소 10명 취업시 사규 제정 의무가 있습니다.

2. 사규 초안을 사용자가 준비해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사규의 내용은 노동법의 내용에 위배되서는 안되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고용 조건, 근무 질서 및 상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수 록 좋습니다.
4. 사규는 최초 2년간 유효하며 매년 연장해야 합니다.

Q39. 노동조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1. 노동조합 결성권

- 모든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부, 정당 혹은 어떠한 단체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간섭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것을 금 합니다.
- 노동조합결성은 최소한 근로자 10명의 동의를 있어야 하며, 노동조합 연맹결성은 최소한 5개의 노동조합의 동의를 있어야 하며, 노동조합 총 연맹결성은 최소한 3개의 노동조합연맹의 동의를 있어야 합니다.
- 노동조합, 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총연맹은 업종, 직종, 지역 혹은 다른 형태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 총 연맹은 반드시 설립정관과 내부 업무 수행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정관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상징, 이념, 결성목적, 결성일자, 소재지, 회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 정관 및 내부규정 개정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노동조합 가입

-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가입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언제라도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근로자 자신에게 달려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어떤 결정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 한 근로자가 복수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근로자가 복수노조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는 반드시 서면 으로 한 노조만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노사 간에 이해관계상충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예:노무관리 담당자)는 근무하는 회사에 있는 노조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합니다.
- 노조에 가입 혹은 탈퇴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3. 노동조합 등록

결성된 노동조합은 소재지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은 결성인 명단, 정관, 내부규정, 조직표 및 임원 명단만 제출하면 됩니다.

4.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

-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결성하지 못하도록, 노조에 가입하도록, 가입하지 못하도록, 노조의 임원이 되도록, 되지 못하도록, 노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형태의 간여, 방해 혹은 강요를 금합니다.
- 사용자는 노조의 임원 및 혹은 노조원이, 노사간에 합의하거나 단체근로협약서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노사 간에 합의나 단체근로협약서에 다음사항을 자세하게 정해 두어야 합니다.
 - ① 근무시간 중에 허용되는 노조활동의 종료 및 범위
 - ② 근무시간 중에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용해주는 수속 절차 및 방법
 - ③ 근무시간 중에 노조활동시 임금 지급 여부

5. 노동조합 관련 형사 벌칙

다음에 열거된 사항 중 한 사항이라도 해당되는 자는 징역 최단 1년, 최장 5년의 형 및 혹은 최소 1억 루피아, 최고 5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노조를 결성하도록, 결성하지 못하도록, 노조에 가입하도록, 가입하지 않도록, 임원이 되도록, 되지 않도록, 노조활동을 하도록, 하지 않도록, 간여하거나, 방해하거나, 강요하거나, 근로관계를 종결시키거나, 감독을 하거나, 전보를 시키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봉 조치를 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감시를 하거나, 노조결성 반대 운동을 한 자

Q40. 노사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1. 노사분쟁해결 절차 준수 원칙

분쟁해결의 절차는 **대별하여** ①노사 간에 직접 협상하여 해결하는 단계 ②민간 중재인을 통하여 해결하는 단계 혹은 노동부의 조정관을 통하여 해결하는 단계 ③노동법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단계 ④대법원에 상고를 통하여 해결하는 단계 ⑤합의 또는 판결문에 따라 강제 집행하는 단계 ⑥대법원에 재심청구를 통하여 해결하는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행 단계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후행 단계에서 해결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노사 분쟁 해결 절차는 계단을 올라가듯이 노사 간에 직접해결이라는 첫 계단에서부터 강제집행이라는 마지막 계단까지 한 계단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노사 간 직접 협상 분쟁 해결

노사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노사 간에 직접 협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직접 협상으로 합의되면 합의서를 체결하고, 합의서를 노동법원에 등록하고 등록 공정증서를 받아, 합의서 내용대로 집행합니다. 협상을 시작한지 30일 내에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협상 요구에 30일 간 불응하면 노사 중 한 측이 지방 노동국에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노사분쟁 해결방법 합의 통보

지방노동국에 중재를 요청할 때에 노사 양측은 Konsiliasi(민간인 조정)을 통한 방법으로 노사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Arbitrasi(민간인 중재)를 통한 방법으로 노사분쟁을 해결한 것인지 합의하고 합의된 분쟁해결 방법을 중재 청구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지방 노동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노사가 합의된 중재방법을 7근무일 내에 지방 노동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지방 노동국은 분쟁 해결을 지방 노동국 소속 공무원인 조정관인 Mediator에게 넘겨 Mediasi(노동국 조정)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상기한 민간인 조정(Konsiliasi), 민간인 중재(Arbitrasi) 혹은 노동국 조정(Mediasi) 방법으로 노사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노사 중 어느 측이나 노동법원에 정식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노동법원

- 법정대리인

노사분쟁 당사자인 근로자 혹은 사용자가 직접 재판에 임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노조가 근로자를 대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소송 관할권

노동소송은 근로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노동법원에 있습니다. 현재 자카르타 노동법원은 잘란 엠티 하르요노가(M. T. Haryono)에 위치해 있으며 반뜰주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법원은 세랑(Serang)에 위치해있으며 서부자바주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법원은 반둥(Bandung)에 있습니다.

- 재판부의 구성

재판부 지정은 법원장이 하며 재판부는 전문 직업판사 1명, 노조를 대표하는 특별판사 1명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특별판사 1명, 이상 3명으로 구성됩니다.

- 소송청구 시효

민법에 정해져 있는 임금 채권의 시효는 2년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임금채권의 시효가 일반채권의 시효(30년)와 같습니다.

- 재판 절차

소송 등록 - 피고 및 원고 출두요청서 송달 - 공판 개시 - 재판부의 합의 권유 - 원고의 소장 낭독 - 피고의 답변/피고의 반소 제기 - 원고의 주장 - 피고의 주장 - 증거/증인 조사 - 양측의 최종 변론 - 판결 - 판결문 송달

- 판결 시한 : 등록일로부터 50일 이내

Q41. 외국인 취업시 인허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취업하는 모든 외국인인은 고용허가(Notifikasi)와 기한부 거주허가(KITAS) 취득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가족은 기한부거주(KITAS)를 보유하면 됩니다.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벌금은 최고 4억 루피아입니다.

Q42. 아웃소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아웃소싱은 사용자 입장에서 노무 관리가 용이하며 인건비 부담이 적으

며 생산성이 더 높아서 선호하나 근로자는 최저임금, 출근수당, 직책수당, 산재보험, 식대 및 교통, 연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종교상여금, 퇴직금, 노조가입,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계약, 장기근무 기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배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웃소싱의 종류는 작업도급계약(Perjanjian Pemborongan Pekerjaan/PPP), 인력공급계약(Penyediaan Jasa Pekerja/Buruh/PJPB)이 있습니다.

1. 작업도급 계약(Perjanjian Pemborongan Pekerjaan)

경영이나 실무에서 회사의 주 생산활동과 분리된 작업이나, 도급주 회사의 직접 혹은 간접 지시로 시행하는 작업이나, 도급을 주는 공정이 해당 업종의 적법한 협회에서 정한 생산공정도상 주 생산공정이 아닌 보조 공정으로 주 생산공정에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작업에 허용합니다.

2. 인력공급 계약(Perjanjian Penyediaan Jasa Pekerja/Buruh)

허용 공정/분야

회사의 보조 기능 혹은 생산공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작업은 인력공급 업체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인력공급회사에게 작업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계약을 허용하는 보조 기능으로 보는 일은 청소 작업(Cleaning Service), 음식 공급(Catering), 경비(Security), 광업 및 석유 분야 용역(Mining Service) 및 근로자 출퇴근 수송(Transportation) 등 입니다.

3. 인력공급계약은 재하청을 금합니다.

Q43. 인도네시아 사회보장 보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건강 및 기타 보험 지급 관련, 고용주 및 종업원의 보험료 납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료(고용인 및 피고용인 부담분 포함) (단위 : %))

일련번호	종류	고용주	종업원	요율
1	산재보험(JKK)*	0.24%	-	0.24%
2	노후보험	3.7%	2%	5.7%
3	생명보험	0.3%	-	0.3%

4	건강보험	4%	1%	5%
5	퇴직연금	2%	1%	3%
요율	합계	10.24%	4%	14.24%

- * 주 : 산재보험의 업종별 요율
- 제1업종(봉제업체 등) : 급여의 0.24%
 - 제2업종(악기 제조업체 등) : 급여의 0.54%
 - 제3업종(삼림업체 등) : 급여의 0.895%
 - 제4업종(차량조립업종 등) : 급여의 1.275%
 - 제5업종(건설업체 등) : 급여의 1.76%

** 자료 : YSM&PARTNERS 이승민 대표변호사

Q44. 현지인 인력 채용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많은 진출기업들의 경우 온라인 채용사이트에 잡포스팅을 올려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온라인 채용 사이트 <https://www.jobstreet.co.id/>) 또는 인도네시아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대표적 한인 커뮤니티 <http://indoweb.org/>) 같은 곳을 활용하시면 인력추선 업체들을 찾으실 수 있으며, 이런 업체를 활용하셔서 채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현지 인력채용은 [K-MOVE센터] 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원채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현지 한국인 직원채용: 한국인 현지주재 인력채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인력채용을 신청하시고, 기업소개서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후 한국의 월드잡(www.worldjob.or.kr)과 인도네시아의 네이버 취업카페에 공고를 통해 인력채용을 하게 됩니다.
- 현지 인니인 직원채용: www.contactkorea.go.kr 웹 사이트에 가입, 구인 신청을 해주시면 담당자 확인 후 현지 웹사이트 www.jobstreet.co.id에 공고를 통해 인력채용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한국에 본사가 있는 투자기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K-MOVE 센터 담당자 이메일: kotrajakarta2018@gmail.com

[조세 제도]

Q45. 현지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율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 세법상 거주자

다음의 조건을 갖춘 개인은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거주자로 간주되며, 개인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둔 개인
- 인도네시아에 12개월 내에 183일 이상 체류한 개인
- 과세기간동안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의사를 가진 개인

참고로 한국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간주하므로 경우에 따라 개인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최종 거주자의 지위를 판단하여야 하며, 한국-인도네시아 조세협약에 따르면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주지 ④ 상호합의의 순으로 최종 거주자의 지위를 판단합니다.

〈연간 소득공제금액(PTKP) - 2019년 기준〉

항목	금액
납세자 본인 기초공제	Rp 54,000,000
배우자 공제	Rp 4,500,000
부양자 공제 (최대 3인)	Rp 4,500,000
의무비용 공제 (총소득의 5%, 최대 Rp 500,000/월)	Rp 6,000,000
사회보장제도(BPJS Ketenagakerjaan) 노후연금저축 본인부담분 (총소득의 2%)	전액
연금납부액 (총소득의 5%, 최대 Rp 200,000/월)	Rp 2,400,000

〈 개인 소득세율〉

연간소득	세율
Rp 50,000,000 이하	5%
Rp 50,000,000 초과 ~ Rp 250,000,000 이하	15%
Rp 250,000,000 초과 ~ Rp 500,000,000 이하	25%
Rp 500,000,000 초과	30%

2. 납부

개인소득세는 지급하는 자가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경우, 과세대상 총 급여에서 연간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동 과세표준에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PPh21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업원이 아닌 개인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경우, 총 지급

액의 50%가 과세표준으로 동 과세표준에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PPh21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경우, 총 지급액의 20%를 PPh26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조세협약에 따라 세율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pph 21 : 연간 개인 근로소득세

* pph 26 : 비거주자가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3. 연말정산 및 확정신고

한국의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사용자는 12월 급여지급시 연간 급여를 바탕으로 PPh21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급여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3월말까지 개인소득세 확정신고(Form 1770)를 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급여소득, 투자소득, 자본소득, 해외소득 및 기타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자산 및 부채 상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기혼여성 및 미성년 직계존속의 소득은 남편의 개인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어야 하나, 기혼여성의 소득이 남편 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과 관련이 없으며 지급하는 자에 의하여 이미 PPh21을 원천징수납부하였고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Q46. 법인세 납부에 대해 알려 주세요.

Corporate Income Tax(법인소득세)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세율 (Tax Rates)

인도네시아의 법인세율은 기본적으로 단일세율로 2019년까지 25%였으나 2020년 및 2021년의 경우 22%, 2022년 이후에는 20%로 인하 예정입니다.

한편, 상장회사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감된 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상장법인

총 발행주식의 40% 이상을 공개하고 특정요건을 충족한 상장회사의 경우, 상기 세율에서 3%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 이하인 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2단계

세율이 적용됩니다.

i) 과세표준 \times (48억 루피아/총 매출액) \times 일반 법인세율 \times 50%

ii) 과세표준 \times [(총 매출액 - 48억 루피아)/총 매출액] \times 일반 법인세율
한편, 연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5%를 최종분리과세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ce)

소득세법 제2조 3항에서는 거주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었거나 주소를 둔 모든 법인을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정부기관의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2조 1항의 납세의무자에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PE)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거주자가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과 유사한 세무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3. 납세방법 (Tax Payments)

법인과 고정사업장은 원천징수세(PPh22, PPh23, PPh4.(2)), 월 선납 법인세(PPh25), 연간 법인세 신고 시 PPh29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세는 제3자의 원천징수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PPh22는 특정 물품의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며, PPh23은 특정 국내 거래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 PPh4.(2)는 특정 거래에 대하여 최종 분리과세의 형태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월 선납법인세(PPh25)와 PPh29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PPh25는 직전 연도의 법인세신고서를 바탕으로 산출하며 매월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입니다. PPh29는 법인 등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 종료 후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법인세를 산출하고 PPh25, PPh22, PPh23 등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차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에 귀속되는 인도네시아 원천의 소득은 인도네시아 내의 거래상대방의 원천징수(PPh26)의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Q47.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소프트웨어 솔루션 납품 및 설치 용역시 세금 및 조세협약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소프트웨어 판매대가 또는 사용대가의 경우, 경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로열티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인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세액(PPh26)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한국-인니 조세조약에 따라 동 소득이 한국기업의 사업소득인 경우, 인도네시아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해당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만 과세권이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정된 경영장소 : 사무실, 공장, 작업장 등
- 6개월 초과 건축, 건설, 조립, 설비 공사
- 3개월 초과 용역 서비스 제공
- 특정 대리인 (기업을 대신해 계약 체결권을 가지거나 기업의 재화나 상품을 정기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소프트웨어 설치/구축용역이 사업소득이며, 인니에 법인이나 지점 설립 없이 용역 수행이 가능한 등 고정사업장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과세권은 한국에만 있습니다. 가령, 3개월 이하로 소프트웨어 설치/구축용역이 수행된다면 고정사업장을 형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인니 고객사에서 한국 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때 DGT Form을 제출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세액 20%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3개월 초과하여 설치/구축용역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인니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대금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지 업체를 통한 하도 판매의 경우, 소프트웨어 판매대가가 사업소득이나 로열티냐에 따라 마찬가지로 과세여부와 과세율이 달라집니다. 로열티의 경우 고정사업장 유무에 상관없이 대금지급액의 20%를 인도네시아에 원천징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한-인니 조세조약에 따라 로열티의 경우 15%로 세율 경감이 가능하며, 세율 경감을 받기 위하여는 DGT Form 제출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로열티 소득인지는 거래내용 및 계약서 등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Q48. 인도네시아 내의 세금 환급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인도네시아에 세금 환급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납부세액 또는 선납세액이 산출세액보다 큰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환급은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환급액을 확정된 후 지급이 되며, 세무조사결과는 환급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세무조사가 강도가 높아 회사는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조사는 부족납부세액으로 결과가 나와서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기 세금의 환급은 인도네시아 거주자(납세자)만 가능하며, 고정사업장이나 인도네시아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의 경우, 원천징수세의 형태로 인도네시아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세金的 환급이라는 개념이나 절차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비거주자인 한국기업이라면 한국에서 법인세 신고 시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에 따라 100%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49. 부동산 매입부가세 등 관련 세금 및 납부시 유의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은 부동산 양도세 2.5% (매도자 부담), 부동산 취득세 5% (매입자 부담), 부가가치세 10%입니다.

부가세는 매입자의 부가세 과세사업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i) 매도인이 부가세 과세사업자인지와 ii) 거래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에 따라 부과됩니다. 토지/건물의 경우, 인도네시아 부가세법 상 과세대상 재화가 맞으므로, 매도인이 부가세 과세사업자라면 토지/건물의 매각에 대하여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는 매도인이 매각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고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입자가 인도네시아 법인을 설립 완료하였는지 또는 부가세 과세사업자(PKP) 등록이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부가세 10%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매입자가 부가세 과세사업자라면 상기 토지/건물 매입부가세는 향후 매입자의 매출부가세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가 법인설립 및 PKP 취득 이전에 부담한 매입부가세는 향후 매출부가세에서 공제할 방법이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매입자는 부가세 10%를 부담하며, 거래대금과 함께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2.5%의 원천세 징수의무가 있으며, 통상 원천세가 납부되어야 Notari로부터 소유권 이전서류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부가세 및 원천세 관련 이슈가 없으려면 법인 설립 및 NPWP(납세자 등록번호), PKP(부가세 과세사업자) 취득을 완료한 후 부동산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Q50. 단순서비스 수출인데 인도네시아 업체가 이중과세방지협정 혜택을 위해 DGT 작성을 요구하는데 타당하지요?

단순 서비스를 수출하는 건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현지회사에서 DGT문서를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타당합니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거주자가 해외(인도네시아 비거주자)로 용역 대금을 송금할 때, 기본적으로 용역대금의 20%를 원천징수(PPh26)하여야 합니다. 한국-인도네시아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른 세율 면제 또는 경감을 받으려면 반드시 DGT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업체의 요청은 타당해보입니다.

DGT Form의 Part 2는 해당 내용을 기재한 후 거주지국 관할 세무서로부터 확인(담당자 서명 및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조세협약이 체결된 나라 간에는 조세협약 혜택을 위하여 필요한 상대방 국가 서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주어야 하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 민원서비스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하여 영문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Domicile/Residence)를 발급받으면 Part 2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령 PER 25/PJ/2018에 따르면 조세협약의 남용을 막기 위한 요건과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는 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DGT Form의 Part IV, V, VI을 작성함으로써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Part IV의 2번부터 4번까지 답변 중 “Yes”가 있는 경우, Part V의 5번부터 10번까지 답변 중 “No”가 있거나, 11번에 대한 답변이 “Yes”인 경우, Part VI의 2번부터 4번까지 답변 중 “No”가 있거나, 1번 또는 5번의 답변이 “Yes”인 경우에는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52.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연간 매출액 상한선은 얼마인가요?

일반 과세자는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수출포함)하는 자로 연간 매출액이 48억루피아 이상인 자를 의미합니다. 매출액이 48억루피아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Pengusaha Kecil)는 일반 과세자로서의 의무가 없으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 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의 지위를 선택한 소규모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동일한 의무를 갖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억루피아 이상이 되어 일반 과세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는 충족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일반 과세자 변경을 위한 사업 내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내역 신고가 없는 경우 과세당국은 직권으로 해당 사업자를 일반 과세자로 지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현지 체류/비자]

Q53. 현지 체류시 필요한 비자의 종류, 발급절차, 구비서류, 예상비용을 알려주세요.

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비자: 30일 이내 관광, 친지방문, 공무, 강연/세미나 참석 목적 무비자 입국 가능
- 도착비자: 30일 이상 상기 목적 방문시 입국장에서 구입(US\$ 35)
- 사회문화 비자(교육 등): 체류기간은 60일, 1개월씩 최대3회 연장가능 (US\$ 50)
- 단수상용 비자(비즈니스): 최초60일, 1개월씩 최대4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 체류 가능, US\$50)
- 복수상용 비자(비즈니스): 1년 동안 자유롭게 출입국 가능, 매 60일후 출국 및 재입국필요(US\$110)
- 단기체류 비자(KITAS): 외국인투자자, 인도네시아 정부/민간기관 고용자에게 발급, 체류가능기간 1년, 1년씩 5회 연장 가능

기한부 거주 허가서(KITAS) 발급,체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근로자 채용계획 의무 보고(UU No.7)
- ② 외국인 고용 계획(RPTKA) 제출
- ③ 취업 비자 추천서(TA.01) 제출

- ④ 비자 발급 지시 케이블 발신 확인서
- ⑤ 비자 교부
- ⑥ 입국 신고, 기한부 거주 허가서(KITAS) 발급 신청
- ⑦ 외국인 고용 허가서(IMTA) 발급 신청
- ⑧ 거주 지역경찰서 신고(STM)
- ⑨ 거주 확인서 또는 외부인 신분증(KIP), 임시거주자 가족관계 증명서 (SKSKPS) 제출
- ⑩ 외국인 근무신고(Laporan Keberadaan)

〈KITAS-312 취업비자〉

- 비자특징
 - 전문가(Expert), 투자자(Investor), WTO직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업무를 하기위해 고용되어 입국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
- 신청조건
 - 인도네시아 현지 이민청에 취업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허가된 자
- 체류기간
 - 최초발급 1~2년, 최대 5회 연장 가능 및 매회 연장 시 1년이내로 체류연장, 5년 경과 후 출국 후 인도네시아 재외공간에서 비자 재신청 가능
- 신청절차
 1.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를 통해 CABLE(이민청승인) 진행, 최소 2~3주 최대 2~3개월
 2. 승인된 외국인 근로허가서(IMTA)를 이민청이 직접 대사관으로 송부
 3.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해 VITAS(단기체류1년) 신청 후 발급받은 뒤 출국
 4. 현지 입국 7일 이내, 서류지참하여 이민국 방문하여 수수료 및 KITAS(단기체류 취업비자) 신청 및 발급, 최소 4~6주 최대 2~3개월
- 신청자 구비서류
 - 비자기재 신청서
 - 자필서명이 되어있는 여권 원본 (체류기간 1년의 경우 유효기간

18개월 이상, 체류기간 2년의 경우 유효기간 30개월 이상) 및 사본(스캔 pdf파일 혹은 jpeg파일)

- 여권용 사이즈 사진 1장 / 사본
- 인도네시아 이민국 비자승인서 (대사관으로 인도네시아 이민청이 직접 송부), 신청자 신분증 앞뒷면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영문 주민등록등본 원본 필요)
- 왕복 항공권 혹은 예약증 사본 혹은 편도 항공 여정표 사본
- 현지 연락가능 연락처
- 고용주 CABLE 구비서류, 인도네시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회사가 신청자의 신분을 보증한다는 SPONSOR LETTER
- 스폰하는 스폰서 회사가 국가에 세금을 냈다는 서류(NPWP)
- 스폰하는 인도네시아인의 ID카드(스폰서 KTP카드)

● 비자 수수료

- 6개월 이하 : USD \$55, 1년 : USD \$100, 2년 : USD \$180 (KITAS 발급 수수료는 별도 발생)

● 주의사항

- 해당 취업비자는 VITAS(단기체류허가)를 발급받아 인도네시아 입국 후, 입국 7일 이내 KITAS(거류증) 신청을 하여 취득해야 함.
- 승인된 인도네시아 이민국 CABLE 기간에 맞춰 비자가 발급 됨.
- 25세 미만은 신입으로 취업비자 발급이 쉽지 않음. 6개월짜리 단기체류 허가증으로 출국 후, 6개월에 한번 씩 비자 발급을 재 진행하여야 함. 연장 불가능, 따라서 취업비자 신청 발급율이 매우 낮음.
- 모든 심사에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자료 : WorldJob

Q54. 장기프로젝트로 관련 인원이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출장 예정인데 문제가 없는지요?

장기적으로 현지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업무를 하시게 될 경우 반드시 IMTA라고 하는 노동허가증을 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으셔야합니다. 노동허가증이 있어야 이에 상응하는 비자(도착 비자가 아닌 제한적 체류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워킹비자는 1년이며 매년 1년 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비자 컨설팅 업체 이용시 인력훈련비 년 US\$1,200/1인, 대행비 약 US\$1,000/1인 소요됩니다.

[현지업체와의 관계]

Q55. 현지 업체와 거래시 업체 기본 정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확인이 가능한지요?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중앙부서인 법무 인권부를 통하여 회사의 정관서류를 열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회사법상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회사의 명칭 및 주소, 설립목적 및 의의, 존속기간, 자본금, 총주식 등 주식에 관한사항, 이사 및 감사의 수 및 인적사항 등입니다. 동 정보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증인을 통해 진행할수 있는데, 기본 300불 내외의 행정 및 대리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비상장 회사의 재무정보는 회사에서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 입수가 불가능 합니다.

업체의 신용도를 파악하여야 할 경우는 이러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무역보험공사자카르타 지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기는 무역보험공사 자카르타지사 연락처입니다.

○ 무역보험공사 자카르타 지사

- 주소 : Wisma GKBI 21st. Fl., Suite2104, Jl. Jendral Sudirman
Kav.28, Jakarta 10210 Indonesia

- Tel : +62-21-570-5565

- Fax : +62-21-574-1470

참고로, 인도네시아 기업과의 계약서 작성 시 중재관할권을 인도네시아 중재원으로 정해야 강제로라도 재산 처분이 가능하니 이점도 계약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56. 계약을 맺은 현지 업체와의 계약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상에 ① 계약 전체 당사자들의 해약 동의 ② 법원의 판결 확정문 ③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혹은 법원의 확정판결문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가 계약내용을 위반했을지라도 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서에 해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면 해지 조항대로 처리해도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해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있어야 해지가 적법합니다(민법 제126조). 현지업체가 계약을 위반했을지라도 현지업체의 동의 혹은 법원의 확정판결문 없이 한국의 업체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면, 한국업체는 민법 제126조 위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혹시 현지업체가 한국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상대가 불응시에는 계약서에 합의된 법원 혹은 중재원의 판결이 불가피합니다.

Q57. 현지 업체의 계약위반이 발생했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다음의 세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 민사처리

민사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현지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여야 하며, 양자간 계약서상의 거래내역 및 계약서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시키는지(준거법),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 법원을 가는지(관할권)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계약서상에 준거법과 관할권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피고지를 관할하는 인도네시아 법원, 피고의 사업장 소재지인 지방법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형사처리

형사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봐야 하는 사안으로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3. 파산처리

인도네시아 상업법원에서 채무자를 파산선고 처리 시키는 방법으로 파산선고 조건은 채권자가 2명 이상 있어야하며 두 채권 중 최소 한 채권이 만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각 청산 절차]

Q58. 인도네시아의 경매, 매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현지 경매에 문제

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담보권 보유자가 재무부산하 경매원에 신청 후 경매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는 감정평가 → 경매 신청 → 신문공고 → 경매물 공개 → 보증금 불입 → 경매 → 낙찰자발표 → 잔금지불 → 경매증서 → 담보권 보유자 계좌로 송금 → 채권정산 → 채무자에게 정산결과 통지입니다.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9. 대표 사무소 폐쇄하는 절차, 비용 및 소요기간 등이 궁금합니다.

대표사무소의 경우 승인기관인 BKPM(투자청)에서 폐쇄에 대한 승인을 받고 세무서에 납세등록 해지 절차를 밟으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단, 납세등록증 해지의 경우 세무서의 감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해지 절차를 마치는데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문가 이용시 비용은 납세등록 절차를 제외하고 미화 1,000달러 정도 소요됩니다

Q60. 현지법인 청산절차 및 소요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총 - 신문공고 - 해산 등기 - 인허가 말소 - 폐업보고 - 세무실사 - 납세의무자등록증 말소 - 창산 공고 - 주총 - 신문공고 - 법인말소 등기 - 관보공시

최단 약 1년 6개월 소요되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이 상이합니다. 전문가 이용 시 비용은 회사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영업한 적이 없는 회사는 대략 US\$5,000~US\$10,000정도이며, 영업한 적이 있는 회사는 대략 US\$30,000~US\$50,000정도입니다.

청산시 과세 문제에 대한 걱정으로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현지 실정은 청산 신고하면 실사팀이 구성되어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실사를 하며, 외자투자회사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과세하는 일은 없습니다. 실사 결과로 부당하게 추정당한 회사는 많지 않으며 세무보고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아서 벌금을 문 회사는 있습니다. 휴업은 제도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의 법정 처리 시한은 1년이며 청산 처리 전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년 ~2년 반 정도입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은 해산, 회사 존립 기간 소멸, 흡수합병, 신설합병, 파산선고를 받는 방법 및 사업허가서 취소로 인한 정리 방법이 있습니다.

해산

1. 해산 사유

- 1)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 2) 정관에 규정된 회사 존속 연한 종료
- 3) 법원의 해산 명령서
 - 회사가 공익을 위배했거나 불법행위를 한 이유로 검찰이 회사 해산을 신청한 경우
 - 회사 설립 정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해산 신청에 의거
 - 주주,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이 회사를 계속할 수 없는 이유로 해산을 신청한 경우
- 4) 파산재산 부족으로 파산경비 지불이 불가하여 상법법원의 파산선고가 취소된 경우
- 5)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재산이 지불 불능 상태에 돌입한 경우
- 6) 회사의 사업허가서가 취소되고 관계법규에 의하여 해산 해야 하는 경우

2. 해산 결정에 따른 업무

해산이 결정되면 청산인 혹은 관재인에 의해 반드시 청산을 해야 하며, 청산에 관련된 업무 이외의 모든 업무 수행을 금합니다.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청산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원, 감사회원 및 회사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산 결의 후 청산이 완료되고 청산인의 청산 보고서를 주주총회 혹은 법원에서 승인해줄 때까지 회사의 법인 신분은 존속됩니다. 해산 결정 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회사 해산을 신문 및 관보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문 및 관보에 공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해산 및 해산 결정 근거
- 2)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 3) 채권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
 - 채권 신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60일

3. 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의 판단에 부채가 재산보다 더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청산인

은 회사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 선고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
규상으로 별도로 규정되고 있고 주소와 신분이 파악된 모든 채권자가 파
산선고 없이 청산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해산 방법

1) 주주 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

이사회, 감사회 및 1인 혹은 다수인 주주로서 합쳐서 주식의 10%이
상을 대표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와 회사 해산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투표권이 있는 총 발행 주식의 3/4이상 참석으로 성원되
며 참석 주주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1차 주주총회가 성원
미달일 경우에는 2차 주주총회 소집이 가능하며 2차 주주총회의 성
원 요건은 총 발행주식 2/3 이상 참석에 참석 주주 3/4이상 찬성
으로 의결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임명하며 청산인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청산 직무를 수행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 이후는 영
업활동을 금하며 청산 절차만 밟아야 합니다.

청산인은 청산 후 청산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주주총회에서 청
산인의 청산 보고서를 승인하는 순간 회사는 법인자격을 상실하며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일간지에 공시하고 법무부 장관에
게 통보합니다. 청산인은 청산 결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일간
지 및 관보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해산을 통보하고 채
권 등록을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해산을 통보해야 합니다. 청산
인이 신문 및 관보에 공시하지 않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지 않
으면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청산인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채권등록 노력을 했으나 청산인이 채권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록을 거부당한 채권자는 60일 이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존립 기간 소멸로 인한 해산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상술한 1)항과 유사합니다.

3) 법원의 해산 명령으로 인한 해산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청원에 의거 지방법원은 회사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검찰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회사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설립 정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 당사자는 지방법원에 회사 해산 명령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 제출한 휴업보고서에 근거 3년간 휴업을 했거나, 대부분 주주의 소재가 불명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 양 대주주 간에 보유 비율이 50:50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회사 자산의 감소로 더 이상 정상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주주 이사회 혹은 감사회는 지방법원에 회사 해산 명령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해산 명령에 청산인을 임명하며, 청산인은 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후는 상술한 1)항과 유사합니다.

4) 파산 선고로 인한 해산

- 파산 선고 청구 자격이 있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채권자

나)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횡령한 경우, 채무자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모금한 돈 관련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만기된 채무 해결에 비협조적 혹은 성실한 자세로 임하지 않는 경우, 검찰의 판단에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검찰이 파산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채무자가 은행인 경우에는 중앙은행

라) 채무자가 증권시장회사, 증권회사, 추심 및 보증기관인 경우에는 증권시장 감독원

마) 채무자가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연금관리기관, 공익사업 업종의 국영기업체인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

● 파산선고 조건 및 소요 기간

가) 파산 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둘 이상의 채권자가 있으며 그 중 한 채무가 만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불 임금, 체납 세금, 연체 차입금, 연체 임차료, 미불 외상 매입금, 미불 용역비, 미불 공사비 등 채권 채무 관계가 이미 발생했으며 만기가 된 채무는 모두 해당됩니다.

나) 파산 재판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업법원: 최장 60일 이내

- 대법원: 최장 60일 이내

● 파산선고에 따른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파산 선고 즉시 회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재산권이 파산 관재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나) 소송권도 파산 관재인에게 넘어가며 진행 중인 소송의 당사자도 파산관재인으로 바뀝니다.

다)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동결됩니다.

라) 이미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은 파산 선고일로부터 최장 90일간 담보권 집행이 중지됩니다. 집행 중지 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담보권 보유자는 담보권을 집행해야 합니다. 2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집행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파산 재산이 파산비용을 지불하는데도 충분하지 않아 파산선고를 취소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 내리거나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산이 지불불능 상황에 이른 경우에는 회사를 해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재인이 청산 직무를 수행합니다.

5) 사업허가서 취소로 인한 해산

은행 혹은 보험회사처럼 사업허가서가 취소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회사는 사업허가서가 취소되면 해산을 해야 합니다.

흡수합병 혹은 통합 합병

흡수 합병에서 합병을 당하는 회사는 해산의 절차 없이 합병을 하는 회사에

흡수되어 소멸합니다. 합병하는 회사는 존속합니다. 합병을 당하는 회사의 모든 자산을 자동으로 합병을 하는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반면 통합 합병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쳐서 새로운 한 개의 회사를 탄생시키는 것으로, 두 개 이상 회사의 자산이 새로 설립된 한개 회사의 자산이 됩니다. 흡수 합병 혹은 통합 합병을 하려는 회사의 이사회는 합병 계획을 작성하여 먼저 감사 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각회사의 이사회는 합병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합병 계획서를 요약하여 일간지에 공시하고 서면으로 직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합병 계획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합병 계획이 일간지에 공시된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합병 계획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채권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를 이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사회는 채권자의 이의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채권자의 이의를 해결할 때까지 합병을 금합니다.

기획 편집

자카르타무역관 권세영, 허유진

원고 감수

YSM&Partners 이승민 변호사
두왕컨설팅 이소왕 변호사
SPL Logistics 김하현 대표
FCL Logistics 이성권 대표
PT GNF 임준환 대표
Lee&Oh 컨설팅 오동규 회계사

ISBN : 971-11-6490-452-5(93320)
971-11-6490-453-2(95320) (PDF)

KOTRA 자료 20-188

인도네시아 무역 · 투자 FAQ

인도네시아 진출시 참고할만한 무역 · 투자 가이드

발행인 | 권평오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20년 8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의처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62-21-574-1522)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